



2019 -
2020
산업
통상
자원
백서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통상편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 백서

2019-2020

제1장 통상정책 방향

제1절	그간 통상정책 추진성과	1
1.	글로벌 무역 강국 도약	1
2.	광범위한 경제영토 확보	2
3.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개척	3
4.	연이은 WTO 분쟁 승소와 수입규제 피해 최소화	4
제2절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5
1.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다자체제 위기	5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5
3.	디지털, 환경 등 新 통상이슈 부상	6
제3절	新 통상정책 추진	7
1.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전략』 수립	7
2.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	10
3.	『통상지원센터』 신설·운영	13

제2장 전략적 FTA 추진

제1절	FTA 정책 추진방향	16
1.	배경 및 경과	16
2.	FTA 정책 추진 방향	17
3.	맺음말	18
제2절	신흥시장과의 FTA 네트워크 확대	19
1.	RCEP 타결 등 아태 지역 메가 FTA 참여	19
2.	신남방 FTA를 통한 시장 다변화	21
3.	신북방 FTA	24
4.	전략시장과의 FTA	27

CONTENTS

제3절	체계적·안정적인 FTA 이행	30
1.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FTA 이행	30
2.	한-미 FTA의 안정적 관리	30
3.	한-EU FTA : EU, 한국의 건실한 교역·투자 파트너	32
4.	한-중 FTA : 한-중 교역·투자·협력 확대의 주춧돌	34
5.	여타 FTA 이행	37

제3장 경제·통상 협력 강화

제1절	美, 中, EU 등 주요국 통상현안 선제대응 및 전략적 협력 추진	40
1.	미 국	40
2.	중 국	45
3.	EU	47
제2절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국 협력 고도화	50
1.	신남방	50
2.	신북방	54
3.	중 동	63
4.	중남미	67
제3절	디지털 통상강국 기반 구축	69
1.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	69
2.	디지털통상 기반 강화	71
제4절	코로나19로 인한 통상이슈 대응 및 기업애로 해소	72
1.	기업인 출입국 원활화	72
2.	주요 국가·지역별 대응	74

산업통상자원 백서

2019-2020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지원

제1절	다자간 통상협력 강화	76
1.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기여	76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여	80
3.	G20 무역·투자 논의 참여	82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역위원회 참여	83
제2절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86
1.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개요 및 동향	86
2.	수입규제 대응	88
3.	비관세장벽 대응	91
제3절	WTO 통상분쟁 대응	93
1.	WTO 통상분쟁 개요 및 동향	93
2.	우리나라 통상분쟁 대응 현황	93

제5장 수출회복 총력 경주

제1절	수출입 동향 및 성과	99
1.	주요 특징 및 성과	99
2.	품목·지역별 동향	100
제2절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103
1.	범정부 총력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03
2.	무역금융 지원 강화	105
3.	수출입 물류 종합지원	106
4.	전시산업 위기 대응	107
제3절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111
1.	무역 디지털 전환	111
2.	무역금융 구조 혁신	114

CONTENTS

3.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115
4. 유망 소비재 수출 활성화	116

제6장 외국인 투자 및 유턴 활성화

제1절 외국인직접투자동향	118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18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19
제2절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123
1. 개요	123
2. 2019년-2020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123
3. 적극적 규제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추진	125
제3절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 고도화	127
1. 질적 성과 고도화(투자 사례 중심)	127
2. 성과 중심의 투자유치활동 전개	128
제4절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및 국내복귀 지원	131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131
2.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해외투자기업 지원 현황	133
제5절 미래를 위한 남북경제협력 준비	136
1. 남북교역 동향	136
2. 남북경협 활성화 대비	137

제7장 무역안보 정책 추진

제1절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관리	138
1. 무역안보 환경변화	138

산업통상자원 백서

2019-2020

2. 무역안보정책관 신설	139
3. 대외무역법 등 개정	140
제2절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141
1.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필요성	141
2. 전략물자 수출허가	142
3.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역량 제고	149
제3절 기술보호정책 및 수출통제체제 대응	153
1. 기술보호정책	153
2. 수출통제체제 대응	155

제8장 FTA 활용 지원 및 국내 보완 대책

제1절 FTA 수출 활용 현황	160
제2절 FTA 활용촉진 지원 및 정부-민간 소통협업	162
1. FTA 활용촉진 지원	162
2. 정부-민간 소통협업	167
제3절 FTA 국내보완대책 및 이행상황평가	170
1. FTA 국내 보완대책 추진	170
2. FTA 이행상황평가	174
제4절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및 통상피해 지원	176
1.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176
2. 통상피해 지원	178

CONTENTS

제9장 공정·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용

제1절 무역구제제도 개요 및 현황	180
1. 개요	180
2. 제도 현황	181
3. 한국 무역위원회	181
제2절 반덤핑,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183
1. 덤핑방지관세 제도	183
2. 상계관세 제도	186
3. 세이프가드 제도	188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190
제3절 무역구제분야 국제협력	192
1. 무역위원회 양자협력	192
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194

제10장 일본 수출규제 대응

1.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표	196
2. 국내 대응체계 강화 및 국제공조(관계부처 합동 포함)	197

산업통상자원 백서

2019-2020

표차례

〈표 1-1〉 연도별 세계 교역 순위	2
〈표 1-2〉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2
〈표 1-3〉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 및 GDP 규모 현황('20년 기준)	3
〈표 1-4〉 4대 전략시장별 특성 및 진출전략	10
〈표 1-5〉 양자간 그린 파트너십 구축 주요 내용	13
〈표 1-6〉 기업 실무자 등을 위한 통상 이터닝 개요(총 6차시, 3시간)	15
〈표 2-1〉 한·인니 연도별 교역현황	22
〈표 2-2〉 한·캄보디아 연도별 교역현황	23
〈표 2-3〉 한·필리핀 연도별 교역현황	24
〈표 2-4〉 한·우즈베키스탄 연도별 교역현황	27
〈표 2-5〉 FTA 발효 후 對美 교역 동향	32
〈표 2-6〉 FTA 발효 후 對美 서비스 교역 동향	32
〈표 2-7〉 한-EU 교역 동향	33
〈표 2-8〉 한·중 연도별 교역규모	35
〈표 2-9〉 한·중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35
〈표 3-1〉 한미 교역 동향	43
〈표 3-2〉 한미 투자 동향	43
〈표 3-3〉 한·인도/ASEAN 연도별 교역 현황(백만불)	52
〈표 3-4〉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현황(천톤, 비중)	57
〈표 3-5〉 한·중앙아시아 교역 추이('20년)	59
〈표 3-6〉 중동지역 국가별 원유 도입 현황	64
〈표 3-7〉 중동지역 국가별 천연가스 도입 현황	64
〈표 3-8〉 대 중동 교역현황	65
〈표 3-9〉 한·중동 투자현황	65
〈표 3-10〉 디지털 교역액 추이	69
〈표 4-1〉 최근 5년 對韓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현황	86
〈표 4-2〉 對韓 수입규제 현황(2021년 4월 기준)	87
〈표 4-3〉 규제형태별·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2021년 4월 기준)	89
〈표 4-4〉 품목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2021년 4월 기준)	90
〈표 5-1〉 15대 주요 품목 수출 동향	101
〈표 5-2〉 9대 주요 지역 수출 동향	102
〈표 5-3〉 2019년 주요 수출대책 수립 현황	103
〈표 5-4〉 2020년 주요 수출대책 수립 현황	104
〈표 5-5〉 무역보험 지원실적	105

CONTENTS

〈표 5-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단계 기준 및 적용사항('20.11.1)	109
〈표 5-7〉 전자무역포털 서비스 내용	113
〈표 5-8〉 전자무역포털 전자문서 처리 건수	113
〈표 5-9〉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액 및 비중(단위: 억 달러, %)	117
〈표 6-1〉 2019년 대비 2020년 투자유형별, 지역별 비교	119
〈표 6-2〉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120
〈표 6-3〉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	121
〈표 6-4〉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121
〈표 6-5〉 유형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122
〈표 6-6〉 외국인투자 인정범위 변경	130
〈표 6-7〉 업종별 해외직접투자현황	133
〈표 6-8〉 국가별 해외직접투자현황	134
〈표 6-9〉 남북교역 및 북한산 반입 현황	136
〈표 6-10〉 거래 유형별 현황	136
〈표 6-11〉 '한반도 신경제구상' 개요	137
〈표 7-1〉 전략물자 지정현황(2020년 기준)	143
〈표 7-2〉 전략물자 품목별 수출허가 기관	143
〈표 7-3〉 전략물자 판정신청 추이(2016~2020)	144
〈표 7-4〉 항목별 제출서류 및 주요 검토·확인 내용	147
〈표 7-5〉 전략물자 수출허가 건수 추이(2016~2020)	148
〈표 7-6〉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등급별 특례	150
〈표 7-7〉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규모별·등급별 현황	151
〈표 7-8〉 일본의 수출허가 종류별 상세내용	151
〈표 7-9〉 4대 수출통제체제 개요	155
〈표 7-10〉 기술분야별 전략물자 해당품목	156
〈표 8-1〉 '20년도 협정별 수출 활용률(%)	160
〈표 8-2〉 '20년도 협정별/기업규모별 수출활용률(%)	161
〈표 8-3〉 '20년도 산업별 수출활용률(%)	161
〈표 8-4〉 '19~'20년 취업연계형 FTA 실무과정 수료생 취업률 현황	166
〈표 8-5〉 최근 5년간 대학 FTA 강좌지원 사업 현황	166
〈표 8-6〉 최근 5년간 FTA 컨설팅 교육사업 현황	167
〈표 8-7〉 2019년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및 집행현황	171
〈표 8-8〉 FTA별 경제적 효과*	175
〈표 9-1〉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181

산업통상자원 백서

2019-2020

표차례

〈표 9-2〉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조정요소	184
〈표 9-3〉 연도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185
〈표 9-4〉 국가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186
〈표 9-5〉 품목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186
〈표 9-6〉 보조금의 종류 및 의무사항	188
〈표 9-7〉 연도별 세이프가드 현황	190
〈표 9-8〉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신청현황	191
〈표 9-9〉 지재권 유형별 신청현황	191
〈표 9-10〉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결과	191
〈표 9-11〉 역대 포럼주제	195
〈표 10-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응 계획 주요 내용	197
〈표 10-2〉 일본 수출규제 업종별 설명회 주요 설명 내용	198
〈표 10-3〉 단계별 신규 수입처 발굴 지원	199

CONTENTS

그림차례

[그림 1-1] 연도별 GDP, 1인당 GDP(명목)	1
[그림 1-2] 연도별 우리나라 교역액	1
[그림 1-3] 신남방·신북방 수출 비중	4
[그림 1-4] 디지털 교역 확대	6
[그림 1-5] 통상뉴스레터 등 정보제공 기능	14
[그림 1-6] 컨퍼런스 개최 등 주요 활동 내역	14
[그림 3-1] 동북아 수퍼그리드 연계도	56
[그림 3-2] 2019년 러시아 천연가스 현황	57
[그림 4-1] WTO 회원국들의 TBT 통보 건수	87
[그림 4-2] 수입규제 대응 종합 체계도	88
[그림 4-3]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91
[그림 5-1] 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	100
[그림 5-2] 전시업계 협업 생태계	107
[그림 5-3] 하이브리드 전시회 추진체계	110
[그림 6-1] 전체 및 그룹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007년~2020년	118
[그림 6-2] 2019년 대비 2020년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119
[그림 6-3] 2020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	124
[그림 6-4]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상의 간담회 활동	125
[그림 7-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143
[그림 8-1]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 집행실적(2008~2019년 합계, 억원)	171
[그림 9-1]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190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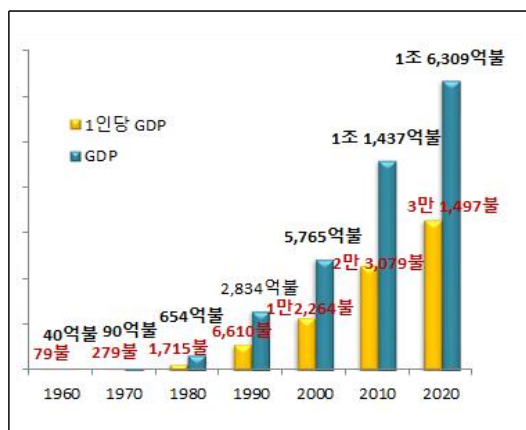
통상정책 방향

제1절 그간 통상정책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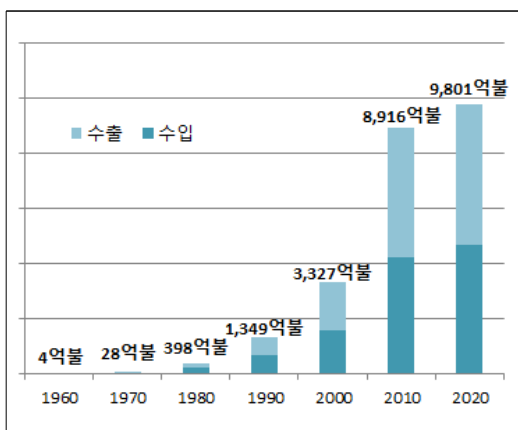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엄길용
주무관 신세미

1. 글로벌 무역 강국 도약

우리나라는 그간 적극적인 통상입국(通商立國)의 노력을 통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철광석, 텅스텐 등의 지하자원과 가발 등 경공업 상품에 의존하던 6~70년대부터 중화학 공업 육성 이후 자동차·선박 등을 수출하기 시작한 8~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핸드폰·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출에 힘입어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40억불('60년)에서 1조 6,309억불('20년)로 408배 성장하는 동안, 우리의 교역규모는 4억불('60년)에서 9,801억불('20년)로 2,604배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글로벌 교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7~'20년 4년 연속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림 1-1〉 연도별 GDP, 1인당 GDP(명목)



〈그림 1-2〉 연도별 우리나라 교역액

〈표 1-1〉 연도별 세계 교역 순위

순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중국
2	영국	독일	독일	독일	독일	중국	미국
3	독일	영국	일본	일본	일본	독일	독일
4	프랑스	일본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일본	일본
5	캐나다	프랑스	영국	영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6	(구)소련	캐나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홍콩
7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8	일본	이탈리아	소련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	영국
9	이탈리아	(구)소련	사우디	벨기에-룩셈	네덜란드	한국	한국
10	한국(68위)	한국(41위)	한국(24위)	한국(13위)	한국(13위)	-	-

* WTO

〈표 1-2〉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순위	1961년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2020년
1	철광석	의류	의류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2	중석	선박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3	생사	가구	가구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4	무연탄	목재류	영상기기	금은및백금	선박	선박
5	오징어	어류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합성수지
6	활선어	음향기기	음향기기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7	흑연	반도체	인조장섬유직물	인조장섬유직물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8	합판	철강판	철강판	영상기기	합성수지	철강판
9	미곡	레일, 철구조물	컴퓨터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컴퓨터
10	돈모	기타섬유제품	선박	철강판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2. 광범위한 경제영토 확보

우리는 '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 FTA 체결'을 추진하여 일약 'FTA 지각생'에서 '우등생'으로 도약하였다. '20년 기준 전세계 57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세계 GDP의 79%에 해당하는 시장과 연결된 '통상 고속도로'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세계 9번째의 무역 1조불 국가('11년), 세계 수출 7강('20년)에 빛나는 통상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표 1-3〉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 및 GDP 규모 현황('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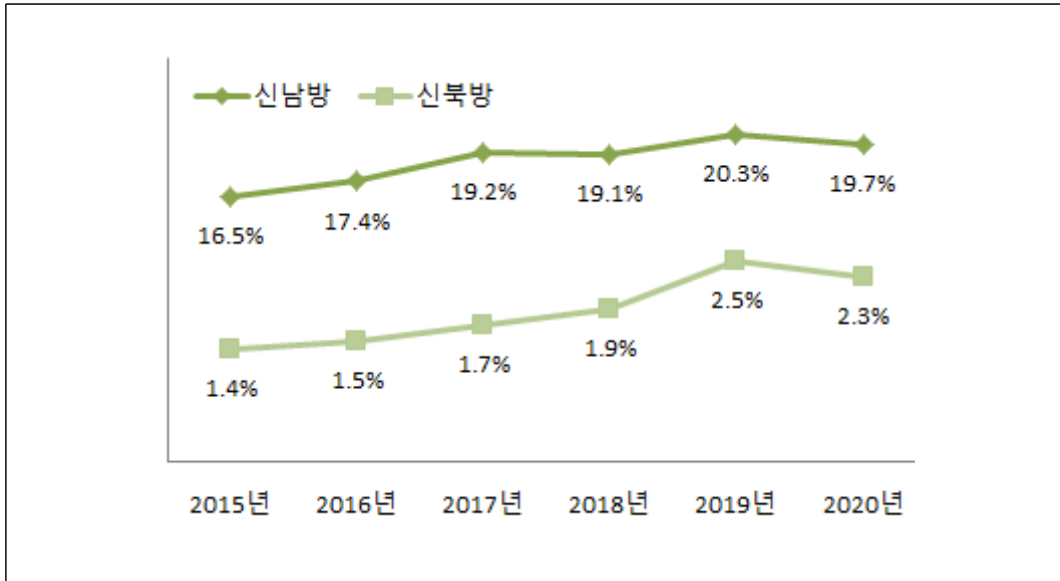
FTA 상대국	발효일자	GDP규모 (단위:십억불, '20)	전세계 GDP대비 FTA체결국 GDP 비중
칠레	2004.04.01	245	0.3%
싱가포르	2006.03.02	(337)	(중북(ASEAN))
EFTA(4)	2006.09.01	1,095	1.3%
ASEAN(10)	2007.06.01	3,106	3.7%
인도	2010.01.01	2,593	3.1%
EU(27)	2011.07.01	14,927	17.8%
페루	2011.08.01	196	0.2%
미국	2012.03.15	20,807	24.8%
터키	2013.05.01	650	0.8%
호주	2014.12.12	1,335	1.6%
캐나다	2015.01.01	1,600	1.9%
중국	2015.12.20	14,861	17.7%
뉴질랜드	2015.12.20	194	0.2%
베트남	2015.12.20	(340)	(중북(ASEAN))
콜롬비아	2016.07.15	265	0.3%
중미(5)	2020.01.01	180	0.2%
영국	2021.01.01	2,638	3.2%
57개국		64,691	77.1% (한국 GDP 비중 1.9% 포함 79%)

* IMF

특히, '20.11월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서명함으로써 인구 20억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향후 RCEP 발효시 미국('12.3월), 중국('15.12월), 독일(EU, '11.7월), 인도('10.1월), 일본 등 5대 경제대국과의 FTA를 완성함으로써 전세계 시장의 85%(GDP 기준)에 해당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3.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개척

한편,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연간 신남방 수출액이 '16년 861억불에서 '20년 1,010억불로, 신북방 수출액이 '16년 71억불에서 '20년 117억불로 증가하고 전체 수출에서 신남방·신북방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6년 18.9%에서 '20년 22%로 증가하는 등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하였다.



〈그림 1-3〉 신남방·신북방 수출 비중

* 한국무역협회

4. 연이은 WTO 분쟁 승소와 수입규제 피해 최소화

위생검역조치 관련 WTO 분쟁 사상 최초로 피소국이 승리한 분쟁이자 1심을 뒤집고 승소한 일본 수산물 분쟁('19.4월)을 포함하여 미국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17.11월), 미국 세탁기 분쟁 양허정지 중재판정('19.2월), 일본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19.9월), 미국 AFA 분쟁('21.1월) 등 現정부 출범 이후 총 5건의 WTO 분쟁에서 승소하였다. 1건의 분쟁에서 승소한 前정부에 비해 WTO 분쟁 승소건수가 대폭 증가한 놀라운 성과이다. 또한, 민관 유기적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하여, 터키·인도·베트남·캐나다 등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철회되거나 우리나라가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인도의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및 미국의 한국산 담배·알루미늄 시트 등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종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자국우선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인해 가속화되며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1.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다자체제 위기

의료품, 식품 등에 대한 수출통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확대 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각국이 보여준 각자도생식 자국우선주의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도 지속되며 보호무역 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다자주의 위기론이 확산되었다. 특히, '19.12월 상소위원 2명의 임기 종료 이후 WTO 상소기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데 이어 '20.5월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이 중도 사퇴하는 등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가 크게 약화되었다.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로나19로 인해 효율성이 강조되던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의 취약성이 노출됨에 따라 공급망의 안정성 측면이 중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로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각국은 비용경쟁력 있는 자체 생산시설 운영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리쇼어링(re-shoring)이 강화되고 거대 시장 내에 또는 인근에 생산기지가 집중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 확대되며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자국화와 지역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특정국가에 집중된 생산 시설의 이전·분산 등을 통해 신뢰 가능한 대체 공급망 확보로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중국간 새로운 긴장이 형성되며 양국간 디커플링(decoupling)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디지털, 환경 등 新 통상이슈 부상

(1)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여파로 쇼핑, 유통, 헬스케어, 교육 등 소비 전반뿐만 아니라 생산, 마케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비대면화·온라인화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글로벌 디지털 교역도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 디지털 통상 분야의 글로벌 다자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미국·일본(자유화), 중국(사이버보안), EU(개인정보보호) 등 3대 권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블록 형성과 디지털 통상 규범제정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 유로모니터

(2)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코로나19를 계기로 환경위기의 파급력 및 대응 시급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친환경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선언이 이루어졌다. 향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환경 분야의 통상규범이 강화되고 환경규제가 확대되는 한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기술 R&D 추진, 전기차, 배터리 등 고부가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新 통상정책 추진

1.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전략』 수립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엄길용

코로나19 이후 자국우선주의 강화,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하여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가고자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수립·발표(‘20.7.21일 산업부 장관 주재 통상산업포럼 계기)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① 필수 기업인 국경간 이동 확대

필수 기업인 입국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현재 중국 등에서 여타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무역협회내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신설(‘20.8월)하여 애로접수, 건강상태확인서 및 격리면제서 발급 지원, 전세기 운항 협조 등 필수 기업인의 해외 출국 및 국내 입국 관련 애로를 일괄 지원한다.

② 포스트 코로나 新 이슈 다자논의 선도

팬데믹 발생시 ASEAN+3, APEC 등 다자 차원에서 국가간 필수 기업인 이동, 물류·통관 원활화, 무역·투자제한조치 최소화 등을 보장하는 무역·투자 가이드라인 논의 및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 개선, 정부 비축 정보 상호공유 및 스왑 등을 통해 팬데믹 발생시 교역 원활화를 도모한다.

③ 對개도국 『K-FTA』 추진

상품양허 중심의 FTA에서 나아가,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분야 시장개방을 연계한 『K-FTA』 모델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산업발전 경험전수, △산업인프라 구축, △상대국 수요에 따른 부처별 협력사업 패키지를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시장접근 개선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2) 전방위 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① 디지털 통상협력 파트너십 확대

양자간 통상규범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파트너십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본격화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효과를 제고한다. 미국·일본, EU, 중국 등 디지털 경제권 형성을 고려하여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싱가포르('20.6.22일 협상개시) 등 아태지역 중견국들과 협정 체결을 확대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디지털 협력사업을 메뉴화하여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발전수준에 맞춰 선택적으로 사업구성 및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도 등 디지털 ODA 협력을 강화한다.

| 디지털파트너십협정(통상규범+협력사업) 장점 |

- 협력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규범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규범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관련시장 진출이 가능
- * (통상규범) 종이없는 무역 구현, (협력사업)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구축 ** 핀테크 협력, AI 협력 등

② 디지털 관련 국내제도 개선

국경간 데이터 이전 활성화 보장,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적용 등 디지털 통상규범의 핵심사안과 연계된 국내규제를 선별하고 해외사례 조사 및 국내영향 분석 등을 통해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통상 대응반』을 신설('20.7월)·운영하여 과제별 개선 로드맵 수립 및 선진화를 추진한다.

③ 비대면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선점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물류(창고, 포장, 배송, 보관 등)·의료(비대면 의료, 헬스케어)·교육(강의 자료관리 등)·생활(화상회의, 무인사업장 등) 등 4대 서비스 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한다. 이에 국제표준화를 위한 『비대면 경제표준화 협의체』를 가동하고 비대면 기술 검증·확산을 위한 실증·인증체계를 구축한다.

(3)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적 통상협력

① FTA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지원

필리핀 및 캄보디아('21.2.3일 타결) FTA 협상 진전, 우즈베크 무역협정 협상개시('21.1.28일) 등 신남방·신북방 FTA를 확대한다. 아울러, FTA 협상의 △누적원산지규정,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별도 부속서,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규제관행 챗터 도입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의료·위생용품 등 K-방역 품목, 건강식품, 홈뷰티, 청정가전 등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국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집중한다.

② 핵심권역별 공급망 중심의 차별화된 통상협력 추진

China+2 국가이자 신흥전략국가인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 △산업혁신기구, 표준화연구센터,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 등 對아세안 3대 협력플랫폼 구축,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중소부품업체 진출 지원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을 촉진한다. 기술강국이자 글로벌 공급망 거점국인 미국·중국·EU와 향후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의료·바이오, 디지털, 소재·부품·장비, 수소경제·미래차 등 4대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공동R&D, △주정부 협력채널 개설, △투자유치, △표준협력 등 공급망 고도화 협력을 강화한다.

(4) 新 보호무역 파고 선제 대응

①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 설치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232조·301조 등 보호무역 전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가동한다. 동 대응반은 산업부, 무역협회, KOTRA, 업종단체, 로펌·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되어 △각국 정책 및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등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보조금 등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민관합동 아웃리치 등을 수행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통상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한다.

②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률·회계 컨설팅 지원을 '20년 45건에서 '21년 60건으로 확대하고 개별 기업의 덤핑조사 외에 다수기업과 연관된 산업피해 조사도 병행하여 지원한다. 또한, 지역 FTA활용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수입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도 개최한다.

③ 안보 및 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국가안보와 핵심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세계적 무역·투자 제한조치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관련 국내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수출허가 절차·요건 정비 등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개선, 안보 위해여부 등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국가핵심기술 범위 확대 등 기술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다.

2.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엄길용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해외 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21.1.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하였다. 그린뉴딜 분야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그린뉴딜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뉴딜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총괄 수립).

(1)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총력 지원체계 구축

① 선진성숙, ② 신흥성장, ③ 분산전원, ④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하여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KOTRA, 기업, 금융기관, 업종별 협단체, ODA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그린뉴딜 TF를 설치하여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미국·베트남·칠레 등에 KOTRA 무역관내 그린뉴딜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지 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한다.

〈표 1-4〉 4대 전략시장별 특성 및 진출전략

4대 전략시장	주요 내용
선진 성숙시장 (미국, EU 등)	• (전망)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투자 확대 • (진출전략) 공동R&D·투자 등 협력 확대, 민자발전 활용 수주 확대
신흥 성장시장 (동남아, 중남미 등)	• (전망) 전력수요 증가, 풍부한 자원 등으로 시장성장 가능성 높음 • (진출전략) 그린뉴딜 ODA 연계, 다자개발은행(MDB) 활용 등
분산전원 유망시장 (인니, 필리핀 등)	• (전망) ESS 연계 소규모 도서지역의 독립계통형 시장 형성 • (진출전략) 신재생+계통설비 패키지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추진
에너지 다각화시장 (사우디, UAE 등)	• (전망) 풍부한 태양광 등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 (진출전략) 태양광 연계 담수화 관련 설비진출, R&D협력 등

(2) 그린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① 수출금융 공급

그린·디지털뉴딜 분야 국내기업의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을 위해 '21~'25년간 30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추가 금리혜택(중견기업 0.3%p, 중소기업 0.5%p) 등 우대를 제공한다.

②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 신설

수주 전에는 해외 우량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한다.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 확충(기존 해외시설 한정 → 국내 설비투자도 지원), △운전자금 조달(한도 최대 1.5배 확대, 보험료 최대 30% 할인), △수출채권 현금화(기존 2년 이내 → 2년 이상 채권도 현금화 보증)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③ 중소·중견기업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 활성화

그린뉴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시 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보증기관의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그린뉴딜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확대한다.

④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예비타당성 신청 전 예비협의 절차 신설, △간이예비타당성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금융 대주단의 사업성 검토자료 활용, △신북방·신남방 지역 그린뉴딜 등 정책적 해외사업 추진시 공공성 항목 평가지표 비중을 기존 35%에서 40%로 상향조정 등 예비타당성 방식을 개선한다.

(3)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① 그린뉴딜 ODA의 중소·중견기업 중심 확대·개편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2.7%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ODA 후속사업 추진시 F/S(Feasibility Study)를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ODA 지원과 후속사업 수주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원국 요청 프로젝트별 단발성 지원에서 탈피하여 국가별 소득여건, 개발수요 등에 따른 전략적 그린뉴딜 ODA를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팜과 태양광·ESS시스템 결합과 같이 개도국 수요가 많은 농·어업, 의료 등 분야와 그린 에너지를 연계한 융복합 ODA 사업을 신설하여 그린뉴딜 ODA 사업기회를 확대한다.

② 연대와 협력 기반 해외진출 확산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 평가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 협업체계 구축 또는 컨소시엄 구성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수출을 확대한다.

③ 해외진출 기반 및 역량 강화

KIND, 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별로 산재한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해외경제정보드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제공한다. 또한, ODA를 통해 개도국 그린뉴딜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그린뉴딜 해외진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한다.

④ 그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미국, EU 등 탄소중립 선도국가내 그린 K-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하여 유망 그린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연결 허브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수출바우처 사업 개편을 통해 그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수출컨설팅, 물류비, 해외인증획득 등을 우대 지원한다.

(4)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① G2G 수출계약제도를 활용한 수출·수주 지원

현재 주로 방산 분야에서 KOTRA가 국내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정부와 수출 계약을 체결(삼자계약)하는 G2G 수출계약제도를 그린 분야에 확대 적용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제고한다. 또한, 다수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요구하고 있으나 KOTRA에 대한 수출보증 불가로 체결에 한계가 있는 G2G 양자 수출계약(KOTRA-외국 정부)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 연계를 통해 활성화한다.

② 다자간 민간 수소협력 네트워크 구축

우리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중국 등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를 신설하여 정보·데이터 공유, 공동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한다. 나아가, 『글로벌 H2 얼라이언스』의 정부정책 제언을 기존 정부간 협의체에서 의제화하여 공동프로젝트 추진, 정책공조 등 G2G 협력으로 연계·확대한다.

③ 양자간 그린 파트너십 구축

미국, EU, 신남방·신북방, 중남미 등 핵심 권역·국가별 양자협의체 신설·확대를 통해 정부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유망기술 공동연구, 기업 투자진출 애로 해소 등 그린뉴딜 협력을 강화한다.

〈표 1-5〉 양자간 그린 파트너십 구축 주요 내용

권역·국가	주요 내용
미 국	• (채널) 『한-미 에너지대화』 등 정부간 협력채널 활용 및 필요시 확대 개편 • (협력) 유망기술 공동연구 실증,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그린 프로젝트 공동투자, 그린에너지 기업 클러스터 구축 등 협력 추진
E U	• (채널) 『한-EU 산업정책대화』 (차관급)내 「그린 분과」 신설, 동유럽과는 『한-V4* Plus 경제 통상 포럼』 (차관보급) 정례 개최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 (협력) 그린에너지 정책공조, 공동R&D 등 추진, 특히 동유럽내 투자어로 해소 등을 통해 EU 친환경차 시장 확대 대비 전기차 배터리 해외전략거점 구축 지원
신남방·신북방	• (채널) 기존 정부간 협력채널내 『그린 분과』 설치 • (협력) 수소협력 모델* 발굴·시행, 그린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ODA 연계, 기술·경험 전수 등 협력 * (예시) 한-러시아 수소차 보급 모델
중남미	• (채널) 한-중남미 『그린 뉴딜 협력주간』 설치 및 『그린 뉴딜 협력대화』 개최 • (협력) 칠레 등 그린 뉴딜 협력수요가 많은 국가들을 초청, 협력주간내 협력위원회, 포럼, 라운드 테이블 등 집중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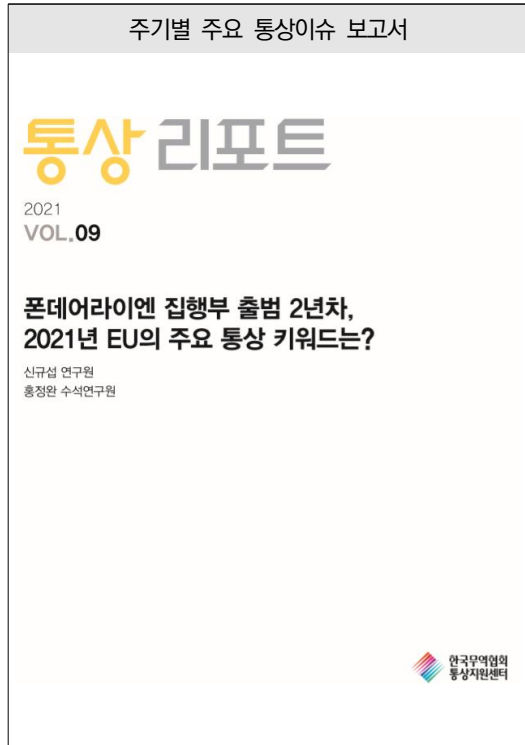
3. 『통상지원센터』 신설·운영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강호건

자국우선주의와 일방주의 확산, 국가 간 무역 분쟁 확산 등으로 인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기업·국민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글로벌 통상 이슈를 실시간으로 분석·제공하고,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초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통상지원센터를 개소(‘20.1월)하여, 정부 예산 반영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통상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통상 정보의 실시간 전달 체계 마련

최근 글로벌 통상 이슈는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적시에 파악·대응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줄 만큼 그 파급력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이 미흡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통상지원센터는 동 역할에 중점을 맞추어 기능을 강화해 왔다. 일별 통상뉴스레터(‘20년 총 218건의 뉴스레터 작성), 주기별 주요 통상 이슈 보고서 제공 등 가장 기본적인지만 그간 없었던 실시간 정보 전달 기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일반 기업·국민이 글로벌 통상 이슈를 더 잘 이해하고, 실제 활용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1-5〉 통상뉴스레터 등 정보제공 기능

(2)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

한편 통상지원센터는 단순히 글로벌 통상 이슈 정보 제공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민간분야 통상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강화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통상질서,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브렉시트 이후 변화 등을 주제로 주요국 싱크탱크, 학계, 정부의 통상전문가와 석학을 연사로 초빙하여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20년 총6회 개최). 통상지원센터는 이러한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강화에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통상위상 강화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6〉 컨퍼런스 개최 등 주요 활동 내역

(3) 알기 쉬운 통상교육 제공

통상지원센터는 통상 지식은 일반 기업·국민이 다가가기 어려운 주제라는 통념을 깨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통상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제공('20년 총 20편의 콘텐츠 제작)함으로써 통상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기업 실무자가 필요로 하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기초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통상 분야 주요 전문가를 섭외하여 WTO, 무역 규제, 원산지 등 분야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통상 기초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표 1-6〉 기업 실무자 등을 위한 통상 이러닝 개요(총 6차시, 3시간)

이러닝 과정	교육 내용	강사
WTO의 이해(1,2)	• 다자통상체제 연혁(GATT/WTO) • WTO 구성 및 조직 • WTO 기본규칙과 원칙 • 분쟁해결제도 •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등 비차별 원칙	이재민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무역규제의 이해(1,2)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규범 이해	이재형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산지의 이해	• 원산지 협정 이해 • 원산지 제도/규정, FTA와 원산지	최권수 관세사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미국의 통상정책	• 세계 통상체제 발전과 미국의 역할 • 최근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의 특징	안덕근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전략적 FTA 추진

제 1 절 FTA 정책 추진방향

FTA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정윤
FTA정책기획과 사무관 박수정

1.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 16년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등 57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그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여 수출경쟁력 확보, 교역·투자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재권 보호 강화, 국내 제도 투명성 증진 등을 통해 국내 경제 선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가치 사슬(GVC) 재편 논의 등 세계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경제구조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FTA의 긍정적 효과 제고를 위해 새로운 FTA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부는 FTA가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면서 그 혜택을 모든 경제주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FTA 추진방향을 2019년 4월 통상국내정책 포럼을 통해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9년 11월 통상조약 국내정책위원회를 통해 “FTA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2. FTA 정책 추진 방향

(1) 혁신의 FTA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분야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FTA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글로벌 통상규범에 발맞추어 국내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 분야의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기반을 조성하고, 한-싱가포르 디지털협정(DPA) 협상을 진행하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협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기업의 수출 지원 및 기술협력 강화를 위하여 이스라엘 등 기술 강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 국가와의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영기업,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등의 무역규범에 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국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확장의 FTA

둘째, 우리나라의 교역구조를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이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권역별로 전략적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20.11월), 한-인니 CEPA 서명('20.12월) 등을 통해 차기 주력 시장인 신남방 국가들을 포함한 아·태 지역 경제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GDP 2.8조원의 거대 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 한-중미 FTA 서명('18.2월) 및 발효¹⁾ 등으로 범미주 FTA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FTA 미개척지인 아프리카, 중동 신시장에 대해서도 FTA 추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임을 감안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형 FTA”를 추진하고 있다. 최빈개도국에서 G20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산업육성, R&D, 인력양성,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FTA 협력 챗터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개도국과의 산업협력 사업을 FTA와 연계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동시에 시장개방을 통한 우리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한-중미 FTA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5개국과의 FTA로 발효 시기는 국별 비준 상황에 따라 다르며, '19~'20년 파나마를 제외한 여타 회원국이 부분 발효하였음
(니카라과/온두라스는 '19.10월, 코스타리카 '19.11월, 엘살바도르 '20.1월, 파나마 '21.3월)

(3) 활용의 FTA

마지막으로, FTA의 혜택을 모든 경제주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전주기 FTA 플랫폼”을 구축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FTA의 이행과 협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전주기 FTA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애로 해결과 수출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정부는 현장 애로의 제기부터 해소까지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및 이행·개선 협상 등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맺음말

2019년 FTA 추진방향 발표에 이어, 산업부는 2020년 7월 발표한 “포스트코로나 新통상전략”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FT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 협상 과정에서 누적원산지규정,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별도 부속서 마련,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규제 관행 챗터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필요성이 증가한 의료, 위생용품 등 K-방역 품목, 건강식품, 홈뷰티, 청정가전 등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국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해소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산업부는 새롭게 제시된 FTA의 방향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혁신 성장과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FTA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제 2 절 신흥시장과의 FTA 네트워크 확대

제 1 장

전략적 FTA 추진
제 2 장

1. RCEP 타결 등 아태 지역 메가 FTA 참여

(1) RCEP 타결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사무관 이지현

① 추진 배경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인도 16개국이 국가간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아태지역 거대 경제블록 형성과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11년부터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그간 제31차의 공식회의 외에도 수십 차례의 회기간 회의에 참석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과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의 통일된 규범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10차 및 20차 공식협상을 국내에서 개최하고 실질적인 협상성과 도출을 비롯하여 최종 협상타결 모멘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② 추진 경과

'12.11월 아세안 정상회의시 16개국 협상 개시 선언, '13.5월 제1차 협상이 개시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등이 개최되었다. '19.11월 제3차 RCEP 정상회의(태국 개최)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20년 RCEP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하기로 15개국(인도 불참)이 합의하였다.

'20년 코로나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함에도, 최종 서명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국들은 10차례 이상 화상으로 공식 협상 및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시장개방 협상과 잔여 이슈를 포함한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고,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시 최종 서명을 진행하였다. 서명 이후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를 진행(11.26)하였으며, 현재는 RCEP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준비중이다.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③ 의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 위기, 보호무역주의 부상 등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세계 최대의 FTA인 RCEP에 서명함으로써, 전 세계에 자유 무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역내 통상환경을 개선하는 모멘텀이 되었다. 또한 신남방 핵심지역인 아세안과 새로운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가속화와 교역 구조 다변화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단일 원산지 기준 마련, 전자상거래 챗터 도입,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투자자유화 수준 상향 등 통상 규범 수준 제고를 통해 역내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역내 최초로, 선진국-개도국-최빈개도국이 모두 참여한 경제협력체가 출범하게 되면서 역내 경제통합과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상호 투자 확대, 인적교류 확산 등을 토대로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대폭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중일 FTA 협상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사무관 차은지

① 추진배경

한중일 FTA는 1999년 마닐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 브루나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경제장관회의의 신설 등에 합의함으로써 3국간 본격적인 경제협력 추진의 기틀을 다졌다. 1년 후 2002년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한중일 FTA 검토를 공식 제안함에 따라 제도적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후 3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3국간 민간 공동연구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에서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7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다. 공동연구 종료 후, 2012년 북경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위한 준비를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년 11월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가 본격 선언되었다.

② 의의

한중일 FTA는 3국간의 경제협력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FTA 타결시 전세계 GDP의 약 25%, 전세계 인구 및 무역규모의 약 20%를 차지하게 되어 새로운 역내 거대 내수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내 내수시장의 창출은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외생변수에 취약한 동북아 교역구조의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역내 FTA 체결로 국가간 관세 철폐·감소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해 우리의 대 중국, 대 일본 수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중일 FTA를 통한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의 강화는 정치·안보 분야로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③ 협상 추진상황

2013년 3월 서울에서 1차 공식협상이 개최된 이래, 2019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16차 공식협상까지 총 16차례의 공식협상이 개최되었다. 2019년도에는 4월 15차 공식협상, 11월 16차 공식협상, 12월 회기간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특히 2019년 12월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RCEP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호혜적인 한중일 FTA 실현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20년 코로나 상황으로 협상이 개최되지 못했으나, 3국이 RCEP 플러스 수준의 자유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바, 이를 목표로 협상 추진 중이다.

2. 신남방 FTA를 통한 시장 다변화

(1)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FTA협상총괄과 주무관 최진경

정부는 한-아세안 FTA 대비 추가자유화 및 교역다변화를 위해 신남방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인니 CEPA)을 추진하였다.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인니 CEPA 협상이 2019년 2월 재개(2012년 개시, 2014년 7차 협상 이후 중단)되어, 총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한 끝에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협상의 최종 타결을 선언하였다. 그 후 법률검독과 국내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정식서명이 이루어졌다.

한-인니 CEPA는 2017년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최초의 양자 FTA협상 결실로,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하여 경쟁국 대비 다소 어려웠던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7억명으로 세계 4위이며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로 최근 연 5% 이상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신흥 경제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한-인니 CEPA로 인해 인니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아세안내 거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협력 챕터 상 자동차·신재생에너지·인프라·문화콘텐츠·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 양국 정부 및 기업들간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기술·인력 및 기업들이 인니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표 2-1〉 한·인니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는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 출	11,361 (△1.8)	7,872 (△30.7)	6,609 (△16.1)	8,404 (27.2)	8,833 (5.1)	7,650 (△13.4)	6,317 (△17.4)
수 입	12,266 (△7.0)	8,850 (△27.8)	8,285 (△6.4)	9,571 (15.5)	11,161 (16.6)	8,816 (△21.0)	7,594 (△13.9)
무역수지	△905	△978	△1,676	△1,167	△2,328	△1,166	△1,277
총교역액	23,627	16,722	14,894	17,975	19,994	16,466	13,911

* 한국무역협회

(2) 한-캄보디아 FTA 협상

FTA협상총괄과 사무관 조부임

정부가 신남방정책 발표(2017년 11월) 이후 신남방 지역의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3월 프놈펜에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시 캄보디아 측의 교역자유화 논의 제안을 시작으로, 양국은 2019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캄보디아 FTA 공동 연구 개시를 선언하였다.

양국은 2020년 5월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對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협상개시를 선언하면서 2020년 내 성과도출을 목표로 신속하게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2020년 7월 1차 협상 개최 이후 4차례 공식협상, 회기간 회의 등을 화상으로 개최하여 상품 시장개방과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협력 등 협정문 협의를 추진해오고 있다.

캄보디아는 지난 10년간 연 7%대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중이며(단, 2020년은 코로나19로 -2% 성장),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지역의 허브 국가로, 캄보디아와 FTA를 체결 시 우리 기업이 한-아세안 FTA,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더하여 아세안 내 시장접근을 공고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서 상품시장 추가개방으로 화물자동차, 승용차, 건설 중장비뿐만 아니라, 딸기, 김 등 농수임산물에 대한 캄보디아의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양국은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농업 등 분야에서 기술·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캄보디아 FTA 내 협력 협정문을 논의해오고 있다.

〈표 2-2〉 한-캄보디아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는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 출	654 (6.5)	653 (△0.3)	573 (△12.2)	604 (5.4)	660 (9.4)	697 (5.5)	567 (△18.6)
수 입	194 (42.3)	217 (11.6)	240 (10.7)	261 (9.0)	314 (20.3)	336 (6.8)	318 (△5.4)
무역수지	460	436	333	343	346	361	249
총교역액	848	870	813	865	974	1,033	885

* 한국무역협회

(3) 한-필리핀 FTA 협상

FTA협상총괄과 사무관 조부임

한국과 필리핀은 2019년 4월 한-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양국은 2019년 5월 경제적 타당성 평가 완료, 對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 협상개시를 선언하면서, 한-필리핀 FTA를 통해 상품 분야 시장개방을 포함하여 원산지, 협력 등 양국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2019년 6월 1차 협상 개최 이후 5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며,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후 회기간 회의 등을 화상으로 개최하여 상품 시장개방과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등 협정문 협의를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

ASEAN 국가 중 5대 교역국인 필리핀('18년 교역액 156억불)과의 양자 FTA는 신남방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동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틀로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양국은 2019년 11월 한-필리핀 정상회담계기에 한-필리핀 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하고 협정문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룬 점을 평가한 바 있다. 동 조기성과 패키지를

통해 양국은 상호 관심 품목 중 일부에 대해 개방대상에 포함하기로 우선 합의한 바, 필리핀은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클러치 등),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제품(합성고무) 등을 개방하고, 우리는 바나나, 의류, 자동차부품(에어백 등) 등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3〉 한-필리핀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는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 출	10,032 (14.2)	8,318 (△17.1)	7,278 (△12.5)	10,594 (45.5)	12,037 (13.6)	8,363 (△30.5)	7,127 (△14.8)
수 입	3,331 (△10.1)	3,252 (△2.4)	3,229 (△0.7)	3,702 (14.7)	3,569 (△3.6)	3,656 (2.4)	3,086 (△15.6)
무역수지	6,701	5,066	4,049	6,892	8,468	4,707	4,041
총교역액	13,363	11,570	10,507	14,296	15,606	12,019	10,212

* 한국무역협회

3. 신북방 FTA

(1)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사무관 김정호
FTA서비스투자과 사무관 홍기웅

2015년 12월에 발효한 한-중 FTA는 부속서 22-가에서 협정 발효 2년 내에 서비스·투자·금융 3개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에 기초한 후속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7년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계기,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후속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에 앞서,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다. 후속협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2016년 4~10월간 진행하고, 1차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를 2018년 1월 5일에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2월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8년 3월을 시작으로 총 9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²⁾ 하였으며, 이 외에도 양측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수석대표 회의 및 회기간 협상 등을 개최하고 있다.

2) 공식 협상: 2018년 3월, 7월, 2019년 1월, 3월, 7월, 11월, 2020년 5월, 7월, 10월

또한, 후속협상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018년 8월~2019년 11월간 진행하여, 관련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중국이 서비스·투자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³⁾하는 최초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중 FTA 원협상 결과를 기초로 양국간 서비스·투자 시장진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현지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FTA협상총괄과 주무관 김영재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 완화 및 시장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의 핵심국인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를 추진하였다. 한국과 러시아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은 2018년 6월 한-러시아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2019년 6월 협상이 개시된 이래로 현재까지 5번의 공식협상 및 회기간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러시아는 인구 1.4억(세계 9위), GDP 1.7조 달러(세계 11위)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로,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가 체결될 경우 러시아 서비스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료·물류·유통·관광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이 높고 러시아 측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투자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FTA 체결을 통해 러시아 측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양국 간에는 1991년 발효된 한-러 투자보장협정(BIT)이 적용 중이지만,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 동안의 변화된 통상 환경을 반영한 FTA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는 우리가 신북방지역과 최초로 추진하는 FTA로 러시아와 핵심 경제협력 전략인 9개 다리(9-Bridge) 전략⁴⁾은 서비스 및 투자 부분과 연계된 점이 많다. 이를 고려할 때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타결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를 교두보로 EAEU 국가(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및 기타 신북방국가와의 FTA로 확대하는 등 신북방지역과의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3) 중-홍콩 CEPA는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非서비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였으며, 그 외 중-EU 투자협정은 네거티브 개방의 범위가 투자로 한정되어 있다.

4) 가스, 전력, 조선, 북극항로, 철도, 항만, 일자리, 농업, 수산 등

(3) 한-우즈벡 무역협정(STEP5) 추진

FTA정책기획과 사무관 박수정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시장이자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신북방지역 주요 협력국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오랜 교류를 토대로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양측은 향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협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의를 추진하였다.

2019년 4월 타슈켄트에서 양국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약 10개월간 양측의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2020년 7월 완료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GDP 및 소비자후생 증가 등 거시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호호혜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유망한 협력분야는 섬유, 농업, 자동차,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한-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20년 7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 특히 자동차업계와 섬유업계는 FTA를 통한 관세·비관세장벽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학계·연구계에서는 우즈베크에 대한 교역구조를 고려하여 협력을 강화한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제언하였다.

공동연구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고위급 면담 및 실무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제10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 계기, 양측 장관은 협상개시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조속한 계기에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표 2-4〉 한-우즈베키스탄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는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 출	2,033 (3.3)	1,284 (△36.8)	928 (△27.8)	1,180 (27.2)	2,117 (79.4)	2,338 (10.4)	1,704 (△27.1)
수 입	27 (△48.5)	16 (△41.0)	21 (28.7)	18 (12.8)	22 (21.0)	20 (10.1)	18 (△7.9)
무역수지	2,005	1,268	907	1,162	2,096	2,319	1,686
총교역액	2,060	1,300	948	1,199	2,139	2,358	1,722

* 한국무역협회

4. 전략시장과의 FTA

(1) 한-영 FTA 타결·발효 : 브렉시트에도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FTA이행과 사무관 원미경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16.12월)하여 한-영간 새로운 통상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왔다. 한-영 FTA를 체결하지 않고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평균 4.73%의 수출관세가 부과되는 등 피해가 우려된 바,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양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영 FTA 협상에 본격 착수하였다.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단기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2019년 6월 한-영 FTA를 타결하였으며, 같은 해 8월 정식 서명, 10월 국회 비준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 타결 여부와 무관하게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한-영 FTA가 발효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영 FTA는 한-EU FTA와 같이 한국과 영국 상호 간 모든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여 자동차, 차 부품 등 주력 수출품목의 對영국 수출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였다.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관세율할당(TRQ)을 제공기로 하였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양국 수출품이 EU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영 FTA는 2021년 완전한 브렉시트 시행에 맞춰 2021년 1월 1일(금) 우리시간 오전 8시 발효되었다.



(2) 한-이스라엘 FTA 타결 : 기술강국과의 첨단기술 협력 중심의 FTA

FTA이행과 사무관 박정원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사막 속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첨단기술 및 지식 기반 산업에 특화된 나라로서,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기술이 결합할 경우 첨단제품 개발·출시,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 상호보완적인 시너지가 크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어 한-이스라엘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2016년 5월 협상개시 선언 후 총 6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되었다. 이후 협정문 공개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외교부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2020년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정식 서명을 준비 중이다.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Ⅰ

- (상품) 양국은 전체 품목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 약속
 - 우리측 관심품목인 자동차(7%) 및 부품(6~12%), 냉장고(12%), 섬유(6%), 화장품(12%) 등 관세 즉시철폐
 -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
- (서비스/투자)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도입으로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상호 약속
- (규범) 한류콘텐츠 등 지재산 전반 보호 확보, 침해시 구제장치 강화(지재산권), 비관세장벽(TBT 등) 완화를 위한 협의체계 마련
- (협력)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IT·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포함

한-이스라엘 FTA가 체결될 경우 기술강국 이스라엘과 맺은 최초의 첨단기술 협력 중심의 FTA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중동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시장선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한-중미 FTA 발효 : 중남미 신흥시장 진출 확대

FTA이행과 사무관 박정원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이 체결한 협정으로, 2016년 11월 타결선언 후, 2017년 3월 가서명, 2018년 2월 정식 서명하였다. 이후 국회비준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국가 순으로 우리나라와 니카라과·온두라스는 2019년 10월 1일에, 코스타리카는 2019년 11월 1일에, 엘살바도르는 2020년 1월 1일에 각각 발효하였다. 파나마는 2020년 10월 국회비준이 통과되어 국내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바, 2021년 초 발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중미 FTA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중미 FTA 주요내용 |

- (상품) 당사국은 전체 품목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 약속

기준	우리측	중미측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품목수	95.5%~95.9%	95.2%	95.1%	95.6%	95.9%	95.3%
수입액	98.7%~100%	98.0%	98.1%	93.2%	99.1%	99.3%

- 우리측은 커피, 설탕, 바나나, 파인애플 등 중미측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개방하고, 중미측은 자동차(부품), 철강, 의약품, 화장품 등 개방

- (서비스/투자) WTO 플러스 수준의 규범, 유통·건설·엔터테인먼트 등 시장개방
- (기타규범) 한류 콘텐츠 보호,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

한편, 한-중미 FTA는 당초 과테말라를 포함하여 중미 6개국이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과테말라의 경우 상품과 원산지 분야 일부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추후 FTA 발효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 가입을 다시 논의기로 하였다.

중미 5개국은 최근 역내 중산층 증가로 소비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등 우리 주력 상품의 수출 가능성도 높다.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건강음료 등 중소 제품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으로 도로·항만 등 인프라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절 체계적·안정적인 FTA 이행

1.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FTA 이행

FTA이행과 사무관 윤이경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의 GDP 규모가 전세계 GDP의 78%에 달하는 현재, 우리 정부는 네트워크의 양적 확대는 물론, 기체결된 FTA 네트워크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FTA가 발효된 이후 FTA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또는 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FTA 운영을 감독하고, 이행상황을 총괄하여 점검하게 된다. 분야별 FTA 이행 애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관세, 금융서비스,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등의 분야별 소위원회도 설치된다. FTA 당사국은 분야별 이행위원회와 작업반을 통하여 각국이 접수한 자국 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협의하며, FTA 효과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FTA 개정 수요도 제기되며, 그 결과 현재 한-칠레 FTA, 한-인도 CEP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2. 한-미 FTA의 안정적 관리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사무관 강정현

(1) 한-미 FTA 개정협상

한-미 FTA는 2018년 1월~3월간 집중적인 개정협상을 진행하여 2018년 3월말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였다. 개정협상 결과, 한미 양측은 우리의 관심사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절차 등을 개선하고, 섬유 원산지기준 개정을 추진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미국의 관심사인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환경 및 안전기준 관련 사항 등도 반영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를 계기로 '철강 232조 국가 면제'를 확보하였다.

동 개정협상의 결과를 담은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2018년 9월 24일 양국간 정식 서명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양국간 경제, 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이행기구 운영

개정 의정서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은 FTA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이행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교역과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의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상세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간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무역, 투자 확대 등 상호호혜적 경제관계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였다.

2020년 4월에는 양국이 한-미 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 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교역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간 한-미 FTA 합의 결과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섬유, 무역구제, 전문직서비스, 자동차, 경쟁법 집행, 의약품 등 양국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간 교역, 투자가 상호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이행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한-미 교역동향

① 상품교역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양국간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교역 증감률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대세계 교역 증감률을 지속 상회하였다.

한-미 FTA 발효 8년차인 2019년 양국간 교역은 1,352억불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전세계 교역이 크게 위축(10.3% 하락)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미 FTA는 양국 교역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2020년에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은 6.2% 감소한데 반해, 한미 교역 감소율은 2.6%를 기록하였다.

〈표 2-5〉 FTA 발효 후 對美 교역 동향

(단위 : 억불, ()는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對美 교역	1,018 (1.0)	1,036 (1.8)	1,156 (11.6)	1,138 (△1.6)	1,097 (△3.6)	1,193 (8.8)	1,316 (10.3)	1,352 (2.7)	1,316 (△2.6)
對세계 교역	10,675 (△1.1)	10,752 (0.7)	10,982 (2.1)	9,633 (△12.3)	9,016 (△6.4)	10,522 (16.7)	11,401 (8.4)	10,455 (△8.3)	9,801 (△6.3)

* 한국무역협회

② 서비스교역

한-미 FTA는 서비스 부문에서도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양국간 서비스 교역은 493억불로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우리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2,345억불)의 21.0%를 차지하였다. 양국간 교류가 활발히 지속됨에 따라 서비스 교역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전인 2011년과 비교시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교역이 급증(245.9%)하였다.

〈표 2-6〉 FTA 발효 후 對美 서비스 교역 동향

(단위 : 억불, ()는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 출	166	185	181	178	148	146	149	163	180
수 입	284	310	291	287	288	285	313	306	313
무역수지	△118	△125	△110	△109	△140	△140	△163	△143	△133
총교역액	450	496	472	465	436	431	462	469	493

* 한국은행

3. 한-EU FTA : EU, 한국의 견실한 교역·투자 파트너

구주통상과 사무관 이기현

역내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2019년 기준 세계 제2위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이자 우리의 제1위 투자국이자, 제3위의 교역파트너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 및 서비스 시장 개방, 지재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등 모든 주요 무역규범을 망라하고,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현대화된 FTA를 EU와 체결함으로써, 중국 등 여타 경쟁국 대비 우리제품의 EU시장 접근성과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 FTA 효과

한-EU FTA의 관세 철폐 및 시장개방 효과에 따라, 한국과 EU는 2018년 역대 최대치인 1,200억불의 교역규모를 달성했다. 이듬해인 2019년의 교역규모는 다소 감소한 1,086억불을 기록했으나,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매년 1천억불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 2019년 기준 주요 품목별로는 배터리, 전기차 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EU産 의약품, 가방 등의 수입이 확대되었다.

투자 분야에서도 양측간 협력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신고기준으로 EU의 우리나라 투자 누계액은 1,119억불로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2019년 EU 투자는 전년대비 30.4% 증가한 142.2억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 2-7〉 한-EU 교역 동향

(단위 : 억불, ()는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 출	557	493	488	517	481	466	540	577	528
수 입	474	503	562	624	572	519	573	623	558
교역액	1,031	997	1,050	1,141	1,053	985	1,113	1,200	1,086

* 한국무역협회

(2) FTA 이행현황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국과 EU는 고위급 채널인 무역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16개의 전문위원회 및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의 이행채널들은 지난 9년간의 운영을 통해 FTA의 체계적인 이행 및 양자 통상현안의 효율적인 협의 채널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한국과 EU는 한-EU FTA 이행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무역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FTA의 효율적인 이행 및 양자 통상현안 해소방안을 지속 협의해왔다.

제8차 한-EU 무역위원회는 2019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를 통해 양측 수석 대표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집행위원은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상품 시장접근 등 다양한 주제의 FTA 이행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의약품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해 EU측에 우리나라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출 서면확인서 면제국(White list) 등재 절차가 차질 없이 완료될 것을 요청했으며, 오랜 시간 지연되고 있는 한국산 삼계탕의 EU 수출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 위생검역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원료의약품 서면확인서 면제국 등재 절차는 무역위원회 한달 후인 5월 14일 완료되었다.

한편, 이듬해인 2020년 6월, 한국과 EU간 화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양측 정상(문재인 대통령-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한-EU FTA의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상들은 농산품의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비관세 무역 장벽을 완화해 나감과 동시에,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다.

앞으로도 한-EU는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교역과 투자촉진 등 더욱 격상된 파트너십으로 발전토록 노력할 계획이며, 자유무역의 모범사례로서 양측이 상호 이익을 도모 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4. 한-중 FTA : 한-중 교역·투자·협력 확대의 주춧돌

동북아통상과 사무관 최은희

(1) 한-중 교역관계

2015년 12월에 발효되어 2020년 발효 6년차를 맞이한 한-중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협력의 주춧돌이 되고 있으며 양측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규모, 지리적 근접성,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중요한 투자 대상국이니만큼 FTA 체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규범적 기초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한-중 FTA는 그동안 이러한 기대에 잘 부응해왔다. 중국 입장에서 한-중 FTA는 여러 나라와 체결한 양자 FTA중에서 교역량이 매우 큰 나라중 하나와 체결한 FTA이자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FTA중 하나라는데 의의가 있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발효 전 5년간 평균 교역액이 2,255억불이었던데 비해 발효 후 5년간의 평균 교역액은 2,410억불로 증가하였다. 2019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1,362억불, 수입은 1,072억불로, 교역액 2,434억불을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액에서 23.3%를 차지하였다. 코로나19가 전세계 경제와 교역을 강타한 2020년에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1,326억불로 전년대비 2.7% 감소에 그쳐 대세계 수출 감소율 5.5% 보다 크게 밀돌았으며, 수입은 오히려 1.5%가 증가한 1,089억불을 달성하였다. 대세계 교역에서의 비중은 24.6%로 2019년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표 2-8〉 한-중 연도별 교역규모

(단위 : 억불, ()는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금액	1,342	1,343	1,459	1,453	1,371	1,244	1,421	1,621	1,362
	증감률	14.8	0.1	8.6	-0.4	-5.6	-9.3	14.2	14.1	-16.0
수입	금액	864	808	831	901	903	870	979	1,065	1,072
	증감률	20.8	-6.5	2.8	8.5	0.2	-3.6	12.5	8.8	0.7
무역수지		478	535	628	552	469	375	443	556	290
교역규모		2,206	2,151	2,289	2,354	2,274	2,114	2,400	2,686	2,434

* 자료: 한국무역협회

양국간 투자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FTA 발효 전 5년 평균이 10.1억불이었으나 발효 후 5년 평균은 17.1억불로 거의 70%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의 대중 투자는 같은 기간 동안 49.6억불에서 48.2억불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중국의 대한 투자는 2018년 대비 크게 위축되어 9.7억불이었으나 2020년에는 회복세를 보여 19.9억불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19년 59.4억불로 전년대비 2.4억불이 증가했다가 2020년에 46.9억불로 감소하였다.

〈표 2-9〉 한-중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억불, ()는 건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中→韓	6.5 (405건)	7.3 (512건)	4.8 (402건)	11.9 (524건)	19.8 (685건)	20.5 (770건)	8.1 (564건)	27.4 (508건)	9.7 (548건)	19.9 (397건)
韓→中	48.1 (2,341건)	70.3 (1,973건)	47.6 (1,979건)	38.1 (1,728건)	44.0 (1,760건)	40.4 (1,721건)	37.2 (1,517건)	57.0 (1,427건)	59.4 (1,346건)	46.9 (908건)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2) 제3차 공동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2020년 8월 양국은 제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각각 서울과 베이징에서 개최하였고, 이에 앞서 무역구제위원회,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관세위원회, 지식재산권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도 개최하였다. 이들 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각 분야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FTA 이행과 관련한 양국의 관심사항들을 논의하였다. 무엇보다도 제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비대면 경제, 한-중 양국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추세 등에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양국은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제도를 기업협력의 모범사례로 꼽았고, 한-중 FTA로 강화된 지방경제협력 사업도 인천-웨이하이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등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외에 우리측은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등 공동위원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한편, 주요 의제로서 우리측은 중국측에 지식재산권 보호의무 이행을 요청하였다. 특히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고, 중국의 악의적 상표 선점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을 당부하였다.



5. 여타 FTA 이행

FTA이행과 사무관 윤지수
FTA이행과 사무관 윤이경

제1장

전략적 FTA 추진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1) 한-베트남 FTA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 회원국과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 FTA로, 2015년 376억불 수준이던 양국 교역규모가 2020년 691억불로 83.8% 증가하는 등 교역 확대에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더불어 약 9.8천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간 양국 정부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EODES)" 도입에 합의하고 EODES 구축을 위한 작업반을 설치('20.4월)하는 등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향후 EODES가 도입되면 원산지 정보가 실시간 전자적으로 처리되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통관절차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등 기업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2020년 12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산업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4차 FTA 공동 위원회에서는 발효 5주년을 맞이하여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무역구제 등 분야에서 양국 관심 사안을 논의하였으며, 섬유류 원산지 기준(PSR) 개정에 양국이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한국 또는 베트남에서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치지 않은 섬유류 한-베트남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섬유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재단·봉제 공정을 거치지 않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섬유기업들의 FTA 활용을 확대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작업반 설치 서명식('20.4월, 화상)



제4차 FTA 공동위원회('20.12월, 하노이)



(2)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2007년 6월 발효 이후 15년간 FTA 공동위(17차례 개최) 및 산하위원회(6개)를 통해 이행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접근성 확대 및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추가자유화 협상을 개시('16.8월) 하였으며, 제17차 한-아세안 FTA공동위('19.2월) 및 수석대표회의('20.4월/7월) 등에서 추가 자유화 협상 추진방안을 협의하였다.

(3) 한-콜롬비아 FTA

한-콜롬비아 FTA는 중남미 신흥 핵심 소비시장과의 FTA로 2016년 발효 이래 1차('17.6월, 보고타) 및 2차('19.10월, 서울)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2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체결 및 활용을 통해 한층 강화된 경제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수출입 기업들의 수출편의 증진을 위해 최신 HS코드(HS 2017)를 적용한 품목별원산지기준(PSR)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합의하였다.

(4) 한-캐나다 FTA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2015년 1월 발효하였으며 그간 4차례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이행현안을 점검해 오고 있다. 2019년 9월 제4차 한-캐나다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FTA 발효로 인한 관세철폐가 양국 교역 증대에 기여('15년 86억불 → '18년 115억불)해 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고, 양국의 상이한 안전/노동 규제 등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의하였다.

(5) 한-호주 FTA

한-호주 FTA는 오세아니아 주요시장과의 FTA로 2014년 12월에 발효하였다. 자원부국이자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 호주와 지난 7년간 4차례 공동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양국은 통상 및 경제 협력의 견고한 플랫폼을 구축해 오고 있다. 2020년 12월 개최된 제4차 공동위원회에서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 제도 시행 등 FTA 활용 촉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제29차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위원회('19.11월)를 통해 에너지 협력분야가 차세대 핵심에너지인 수소 분야 등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 자원협력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6) 한-뉴질랜드 FTA

한-뉴질랜드 FTA는 2015년 12월 발효하였으며, 양국은 5차례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현안을 점검, 협의해오고 있다. 최근 제5차 공동위원회에서는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가 증가추세임을 확인하고, FTA 수출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농림수산업 전문가 교류 및 훈련에 관한 ‘농림수산업협력약정’ 개정(‘20.12월) 성과를 공유하고 제3차 서비스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전문직 일시고용 비자 발급 여건 개선 등 인력교류 활성화 논의를 지속기로 하였다.

경제·통상 협력 강화

제1절 美, 中, EU 등 주요국 통상현안 선제대응 및 전략적 협력 추진

1. 미 국

미주통상과 사무관 우석중

(1)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및 우리의 대응방향

바이든 대통령은 '20.1.20일 취임했으며, 현재 주요 내각의 인준절차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에서부터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를 방역·경제 차원에서 극복하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같은 미국이 선도하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러한 목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주에 시리즈별로 발한 45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국무부, 재무부 장관 등 주요 내각 지명자들의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확인되었다.

한편, 글로벌한 관점에서는 코로나19가 국제질서의 최대 변수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글로벌화·자동화로 인한 양극화나 양극화로 인한 국내정치 변화가 여러 국가에서 관측되었다. 또한, 경제규모, 무역규모, 기술수준 등 다양한 지표에서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또한 주목되었다. 글로벌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 제조업 노동자·지역들의 정치적 의사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은 분명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한 정책 환경이었다. 코로나 19 이후에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경제구조가 국가, 기업, 소비자, 노동자 모든 차원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백신접종에 맞물린 글로벌 경제회복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를 규범 기반 국제질서 내에서 체계화시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에 의한 지난 4년의 통상정책이 국제경제질서와 통상규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세계화에 의해 소외된 미국의 동북부 러스트벨트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노동자들의 불만은 NAFTA 전면 재협상, 철강232조 조치,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및 미중 1단계 무역협정 타결, 미국의 정책재량을 제한하는 WTO DSB 상소기구 위원 임명거부 등의 국가정책으로 드러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내 혁신과 제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목표하는 점에서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하나,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한 제로섬 논리에서 벗어나 미국내 투자확대, 다른 나라와 통상규범 논의 등 전통적인 경제·통상수단에 기반한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들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직면한 미국이 취한 응급조치였다면,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미국의 국제 체제·질서 조정이 시도될 것이다. 다만,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중시하고 아메리칸 리더십을 공언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기본 통상규범에 전면 위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 정부 당시 우리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조기타결과 철강 232조 조치의 면제 및 쿼터 합의로 대미 통상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미국의 철강 232조 관련 관세부과,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의 지속,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및 중국의 보복조치 시행 등으로 인해 미중간 통상갈등이 격화되고, 그 결과 국제 교역환경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교역 및 투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이행 이슈의 안정적 관리, 철강 232조 등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의 일방적 모호무역 조치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등 각종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 미-중간 통상분쟁 및 우리 대응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미국은 수출통제, 투자심사, 자본 이전 제한 등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해 왔다. 바이든 신정부에서도 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하여 주요 내각 인사들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상분야에서의 미중관계에서 최우선적으로 주목되는 분야는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이행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또한 상원 재무위 인사청문회에서 협정 이행확보를 중국에 대한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둘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은 화웨이 제재 등으로 경직되었던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도 미중간 소통 창구로 기능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이행이 변수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관세·비관세 조치, 강제노동 프로그램, 다수 산업분야에서의 과잉공급, 불공정 보조금 및 수입대체를 활용한 산업정책, 수출보조금, 기술이전 강제, 미국 지재권에 대한 불법 수용,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에서의 검열 및 규제,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을 문제제기 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통상정책 수단을 활용할지는 아직 구체화 단계에 있다.

최근에는 미중경쟁의 핵심 분야로서 첨단기술 관련 기술안보나 공급망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관리하는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하여 5G 관련 반도체가 화웨이에 공급되지 않도록 한 화웨이 제재가 대표적인 예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인 중국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공조를 통한 중국 견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취임 초기 미국의 공급망에 대한 재검토 및 정책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기술동맹, D-10, 쿼드 등 우방국 간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협의체가 각종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통상갈등의 전개 동향, 그리고 EU,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의 대응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중의 일련의 조치가 수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와 정보공유를 통한 상시 소통 체계도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다자 채널에서의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미-중에 집중된 우리 수출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다변화하여 대외 리스크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근본적으로는 대외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한편, 통상질서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3) 對美 경제협력 강화

① 한미간 교역현황

한미 양국은 산업,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걸쳐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한미 FTA 체결이후 한미 양국은 상품 서비스 교역에서 관세 및 규제장벽을 낮추고 공통의 규범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글로벌 교역 감소 및 저유가로 '20년 양국간 교역은 전년대비 △2.7% 감소하였으나, 한미 FTA 발효 후 한미간 교역 증감률은 '17년을 제외하고 對세계 교역 증감률을 지속 상회하는 등 양국은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발전하였다.

〈표 3-1〉 한미 교역 동향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韓 → 美	703	698	665	686	727	733	741
美 → 韓	453	440	432	507	589	619	575
교역량	1,156	1,138	1,097	1,193	1,316	1,352	1,316

* 무역협회, 단위 : 억불

② 한미간 투자현황

투자 측면에서도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는 한미 FTA 발효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미국기업의 대한 투자 역시 3배 증가하였다. 한국기업들은 대미 투자를 통해 한미 FTA 체결이후 약 1만명 이상의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근로자 지불하는 평균임금도 91,000불에 달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표 3-2〉 한미 투자 동향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누계
對美투자	60	59	60	71	137	152	112	148	96	893
對韓투자	37	35	36	55	39	47	59	69	53	429

* 무역협회, 단위 : 억불

③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강화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미 및 미 정부인사 방한 계기에 상무 장관회담 개최, 양국간 차관보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에너지정책대화' 정례적 개최, 고위급 협의채널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기반 마련과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미간 산업협력은 기본적으로 양국 기업 중심의 민간협력 형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호 투자, 기술 협력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간 협력은 유망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 계기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0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실리콘밸리를 방문하여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對韓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2020 CES 전시회 참관을 통해 최신기술·미래 산업 트렌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 달성을 위한 산업·기술분야 정부 정책방향을 점검하였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美 혁신기업 대상 투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반도체·수소경제·스타트업 분야의 對한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한미 양국 기업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라운드테이블 개최에 앞서 글로벌 화학소재 기업인 듀폰(DuPont)社の 존 캠프(Jon D. Kemp) 사장을 별도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듀폰社は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한국에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코트라에 투자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공급선 다변화 추진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양국은 지난 '17.6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과 '18.4월 상무장관회담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산업협력대화 개최 정례화에 합의하였으며, 그 이후에 '18년에 1회, '19년에 2회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 한미 산업협력대화는 특정 산업을 주제로 선정하여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정부가 해당 분야의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들이 최신 기술들을 공유하는 등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첫 번째 산업협력대화는 '18.11.6일 서울에서 미국 상무부와 함께 LNG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당시 행사에는 정부측은 산업부, 미국 상무부가 참석하였고, 기업측은 SK E&S, GS,포스코, 엑스모빌, 셴프라, GE 등 양국 LNG 기업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천연가스(LNG)가 새로운 에너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이 될 것임을 공감하면서, 한국의 전력 및 LNG 시장, 미국의 LNG 프로젝트 현황 및 전망 등을 공유하였다. 특히, 미국의 LNG 수출 증대 노력과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려 시, 당시 행사는 앞으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산업협력대화는 '19.7.10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당시 행사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고속도로교통청이 참석하여 양국 자율주행 정책을 공유하였으며, 현대차·GM 등 양국의 완성차 업체와 퀄컴·인텔·삼성전자·KT 등 다양한 IT·통신 업체가 참석하여 자율주행 연구 동향을 통신, 인프라, 인공지능 등 분야별로 공유하고 협력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외 인공지능, 통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 필수적인데, 양국 간 산업협력대화는 다양한 양국 기업들의 새로운 협력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산업협력대화는 '19.10.24일 서울에서 美 정부 및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재생·수소 에너지 등을 주제로 개하였다. 재생에너지, 수소를 주제로 개최된 당시 산업협력대화에서는 우리측 산업부와 미측 에너지부·상무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의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LG전자·두산퓨얼셀·에어프로덕츠·GE 등 양국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업계가 업계의 산업·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분야 등도 논의하였다. 특히, 동 대화는 양국 정부가 외교·안보·통상 뿐만 아닌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도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 업계간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는 기회가 되었다.

한미 양국 정부간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로서, 지난 2011년 舊 지식경제부와 미 에너지부가 체결한 '한미 청정에너지 공동기술개발 이행약정'과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 에너지부 장관이 공동 발표한 「한미 에너지협력 장관 공동성명」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수소연료 전지차 실증, 에너지효율 분야 공동기술 개발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셰일가스,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비전통 화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 중심으로 셰일가스 개발 협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에너지분야 대미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전통에너지 개발 협력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등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중이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탄소중립 2050 목표를 선언하는 등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산업에 대한 인프라 및 R&D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간 동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정부는 미 에너지부와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2. 중 국

동북아통상과 사무관 이창우

(1) 한·중 경제협력 현황

사드 배치 이후 다소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는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복 분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이후 양국간의 협력채널 활성화와 더불어 새만금-연청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부는 중국의 공업신식화부(산업), 상무부(통상), 국가에너지국(자원) 등과 교류하며,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한중 협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2019년 3월에는 보아오포럼을 계기로 공업신식화부 장관과 신에너지 차 및 생태산업단지 등 분야의 협력을, 국가에너지국 국장(장관급)과는 동북아 및 글로벌 LNG 시장의 투명성·유동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또한,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국장(장관급)과의 면담에서는 제품의 인증·안전, 지적재산권 보호 등 방면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하였다. 2019년 12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상무부와의 개별 양자면담에서는 RCEP의 신속한 타결 노력 등 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침체된 양국간의 기업인 교류, 교역·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2020년 4월 개최된 중국 상무부와의 장관급 유선면담에서는 코로나19 공동 극복에 필요한 실질적인 협력방안 논의가 가능하도록 양 기관간 실무급 협력채널 개설에 합의하여 기업인 이동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장쑤성, 광둥성, 산둥성 등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중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속통로 적용, 초청장 발급, 전세기 운항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양국 기업간의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장쑤 무역투자 협력교류회(20.10.30), 한-산둥 경제통상 협력교류회(20.10.22), 한-광둥 발전 포럼(19.4.4) 등 지방 협력 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2) 對中 통상 현안 대응

'19-'20년 대표적인 對中 통상현안으로는 △미중갈등 지속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우리기업 배터리 장착 신에너지 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보조금 지급대상에 미포함) 등이 있었으며, 산업부는 상기 현안을 포함해 다양한 통상 현안에 있어서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수출기업 등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면서, 우리기업에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서 기술, 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미중갈등의 지속으로 인하여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對 화웨이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다양한 대응 조치를 발표하는 등 첨단 산업, 기술을 둘러싼 공급망 관련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유관부처등과 미중갈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신에너지자동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중국 공업신식화부장(19.3월), 상무부장(19.8월) 등 고위급 면담 계기에 중국 내 한국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보조금 제도 폐지 이후에도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내·외자 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후 2019년 12월 공업신식화부가 발표한 자동차 보조금 대상에 우리기업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포함되었다.

3. EU

구주통상과 사무관 이기현
사무관 박용균

(1) 주요국 통상현안 선제대응

① 영 국

2020년 1월 31일 23시(영국시 기준), 영국은 유럽연합(EU)을 공식적으로 탈퇴(브렉시트) 하였다.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이 4년 남짓의 긴 논의를 마무리 짓고 EU와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 과정은 기한이 3차례나 연장되는 등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해왔다. 우선, 2016년 12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무역작업반을 신설하고, 2년이 넘는 실무 논의를 거쳐 2019년에 한-영 FTA를 체결(2019년 8월 22일 서명, 10월 28일 국회 비준)하였다. 한-영 FTA는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되어 브렉시트 이후에도 우리 기업은 영국과 무역 거래시 모든 공산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왔다. 2019년 1월부터 KOTRA, 무역협회와 함께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가동하여 브렉시트와 관련한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브렉시트 대응 업계 간담회, 웨비나를 개최하여 브렉시트의 진행 경과,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과 EU의 미래관계협상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전파에 주력하였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브렉시트라는 영국의 변화는 영국을 EU 진출의 거점지로서 생각하는 우리에게 도전일 수 있다. 하지만, 의약품, 풍력, 핀테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갖는 영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對영국 교역,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영 경제통상공동위, 한-영 FTA와 같은 협력기반을 통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다.

(2)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① 프랑스

프랑스는 세계 7대 경제대국이자 EU 2대 선진시장으로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13일~16일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양국 기관 및 기업은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등 분야에서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상호진출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5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양국의 상호 보완적 기술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2019년, 2020년 각 1차례 개최된 기술협력 포럼을 통해 자율차, 디지털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IT 융합 등 6대 분야 14개 과제에 315억원을 지원하며 얻은 성공적 공동R&D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기업간 기술협력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아이디어 피칭’, ‘1:1 B2B 상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협력의 기회를 창출하였다.

② 독 일

독일은 EU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286.2억불, '19) 우리와 소재·부품, 표준, 에너지 등 분야에서 많은 협력관계가 있는 국가이다. 2019년 11월 양국은 한-독 표준협력 대화 출범을 위한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제1차 한-독 표준협력대화에서 스마트 제조와 미래차 분야 표준 협력을 위한 공동 작업그룹을 구성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독 계기에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와 장관급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협력 채널 내 산업, 통상, 에너지 3개 분과를 통해 분야별 협력을 강화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독일이 소재·부품 강국인 만큼 양국이 진행중인 공동편당형 R&D 사업 중 소재·부품 과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양국 기업간 기술제휴 및 표준협력 촉진을 위해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20년 독일 현지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독일 기업·연구소간 기술이전 및 상용화, M&A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20.5월 ‘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을 체결, 매년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 개최를 합의하였으며 위원회 내 에너지전환, 신녹색에너지기술, 원전해체 등 3개분과 실무분과를 통해 에너지전환, 그린수소, 원전해체기술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③ 스웨덴

스웨덴은 자동차, 통신, 제약·바이오 등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며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움직임 또한 매우 활발한 국가이다. 양국은 2019년 6월 13일~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 방문 계기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 개설 합의, 무역투자지원 기관간(무역협회, KOTRA, 한국수입협회, 비즈니스스웨덴, Invest Stockholm 등) 및 연구기관(탄소융합기술원

-RISE SICOMP, 전자부품연구원-스웨덴 왕립공과대학)간 MOU 체결 등을 통해 한층 강화된 협력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비즈니스 서밋 계기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社가 2020~2024년간 약 6.3억불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2019년 12월 아스트라제네카,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간 5자 MOU를 통해 ① 신약개발 공동연구, ② 생산협력 및 동반성장, ③ 글로벌 시장진출 협력, ④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V4

※ V4 : '91년 헝가리 비셰그라드(Visegrad)에서 결성된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협의회

V4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자원 등으로 2004년 유럽연합(EU)에 편입된 후 유럽의 공장지로 부상하였으며,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등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도 유럽 시장을 겨냥한 V4 진출을 확대하여 2020년 對V4 투자 총 누계액(신고 기준)은 100억불 넘어서게 되었다. 최근 우리 기업의 V4 투자는 EU 친환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V4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우리기업 진출확대와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양측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V4 경제통상 포럼」을 2020.10월 발족하였다.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에 힘입어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교역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V4간 교역은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168억불(수출 135억불, 수입 33억불)을 기록하였다. 2019년 한-헝가리 수교 30주년을 맞아 제3차 경제공동위를 현지에서 개최(수석대표: 한국 산업부 장관-헝가리 재무부 장관)하여 VIP 투자자 지위획득을 포함한 우리기업 투자 원활화 및 양국 협력을 공고히 하였으며, 2019년 및 2020년 각각 폴란드, 체코 고위급(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각국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참여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다.

제 2 절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국 협력 고도화

1. 신남방

신남방통상과 사무관 박찬서

(1) 추진배경

우리 경제는 과도한 美·中 의존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특히, 美의 수입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 美·中 간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및 수출 업계의 고려가 고조되었다. 반면 신남방지역은 고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억 명의 거대 시장과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세계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남방지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현재까지의 성과

인니 정상순방('17.11)을 계기로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남방을 4강에 준하는 협력 파트너로 격상하고, 3P(People, Peace, Prosperity)를 통해 한-아세안 평화 공동체를 실현하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후,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순방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 회의('19.11월) 개최를 통해 상호 호혜적 협력모델을 발굴하였다.

1) 2019년 성과

①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정상 순방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를 순방하였다. 브루나이에서는 양국 간 투자 협력과 LNG 분야 협력 증진을 합의하였다. 이어진 말레이시아 순방에서는 양국의 산업협력 강화, 할랄산업 육성, 프랜차이즈 진출협력, 프로젝트 수주 및 투자협력 등을 위해 1건의 정부간 MOU와 7건의 유관기관 MOU 체결을 성사*시켰다. 마지막 일정 캄보디아 순방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협력, 투자진출 애로 해소와 에너지 및 건설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1건의 정부간 MOU와 3건의 유관기관 MOU를 체결**하였다.

* Industry 4.0 대응 위한 산업협력 MOU, 할랄산업 육성협력 MOU, 쇼핑몰 내 프랜차이즈 진출협력 MOU, 유통 및 물류용기 표준협력 MOU,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자금지원 MOU, 투자협력 MOU, 가상전력발전소(Virtual Power Plant) 프로젝트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

** 마이크로그리드 협력 MOU, 투자지원 협력 MOU, 캄보디아 LNG 발전 협력 MOU, 건설분야 협력 MOU

② 태국·미얀마·라오스 정상 순방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2019년 9월 태국·미얀마·라오스를 순방하였다. 태국에서는 1건의 정부간 MOU와 7건의 유관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 디지털·스타트업 협력 및 인프라 수주 지원을 지원하였다. 다음으로 미얀마에서는 2건의 MOU와 3건의 유관기관 MOU를 체결**을 통해 Korea Desk 설치·수출 금융 등 기업 진출 지원, 무역정책·품질관리체계·산업기술 등 발전경험 공유, 소외 지역 전력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라오스에서는 에너지·제품안전 등 삶의 질 개선 지원 및 수력발전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성명서에 반영하였다.

* 4차 산업 협력 MOU,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협력 MOU, 에너지기술협력 MOU, PTTGC 프로젝트 수주 자금지원 MOU, SCC 프로젝트 수주 자금지원 MOU, 한-태국 전기차동차 협력 MOU, 유통·물류용기 표준협력 MOU

** 한-미얀마 통상·산업 협력 MOU, 한-미얀마 통상·산업 협력 MOU,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협력 MOU, 수출금융 활성화 MOU, 건설기계 산업협력 MOU

③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첫째, 인적·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비자절차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둘째, 양측은 상생 번영과 혁신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인프라, 스마트시티, 환경협력 네트워크, 표준화 연구, 기술직업교육훈련, 항공 자유화 확대, 금융협력 등 연계성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 계획에 대한 아세안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2) 2020년 성과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과 경험사업을 이행하고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급회담 개최 및 기업지원·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인니, 미얀마 등의 국가와 화상을 통해 장관급 경험위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우리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핵심협력국인 베트남과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20년 12월 경제 각료 최초로 산업부 장관의 베트남 방문이 추진되었다. 동 방문계기 산업·FTA 공동위를 개최하여 '23년 한-베 교역 1,000억불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산업·무역투자·에너지 측면에서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동 계기 신남방 소재부품 협력의 거점인 VITASK 센터를 개소하고 베-EU FTA 원산지 누적을 합의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더욱이 RCEP('20.11.15, RCEP 정상회의)과 한-인니 CEPA('20.12.18) 정식 서명, 한-캄보디아 FTA 최종 타결('21.2.3)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기반을 조성하였고, 인도와는 정상 상호방문 후속조치 이행으로 한-인도 공동 R&D를 지속 진행하고 있다.

* 비즈니스데스크·협력센터(2월), 미얀마 코리아데스크(12월), VITASK 센터(12월) 등

** '18.7월 VIP 인도 순방, '19.2월 인도 총리 방한

〈표 3-3〉 한·인도/ASEAN 연도별 교역 현황(백만불)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도	총교역액	17,556	18,057	16,271	15,785	20,004	21,491	20,663	16,852
	수출	11,376	12,782	12,030	11,596	15,056	15,606	15,097	11,952
	수입	6,180	5,275	4,241	4,189	4,948	5,885	5,566	4,900
베트남	총교역액	28,263	30,342	37,576	45,125	63,931	68,265	69,249	69,122
	수출	21,088	22,352	27,771	32,630	47,754	48,622	48,178	48,543
	수입	7,175	7,990	9,805	12,495	16,177	19,643	21,071	20,579
싱가포르	총교역액	32,658	35,053	22,953	19,265	20,557	19,756	19,428	18,271
	수출	22,289	23,750	15,011	12,459	11,652	11,782	12,769	9,826
	수입	10,369	11,303	7,942	6,806	8,905	7,974	6,659	8,445
말레이시아	총교역액	19,684	18,681	16,344	15,041	16,760	19,200	18,127	17,971
	수출	8,588	7,583	7,735	7,533	8,045	8,994	8,846	9,077
	수입	11,096	11,098	8,609	7,508	8,715	10,206	9,281	8,894
인도네시아	총교역액	24,758	23,627	16,722	14,894	17,975	19,994	16,466	13,911
	수출	11,568	11,361	7,872	6,609	8,404	8,833	7,650	6,317
	수입	13,190	12,266	8,850	8,285	9,571	11,161	8,816	7,594
태국	총교역액	13,303	12,944	11,216	11,045	12,672	14,087	13,123	12,049
	수출	8,072	7,599	6,362	6,482	7,467	8,505	7,805	6,853
	수입	5,231	5,345	4,854	4,563	5,205	5,582	5,318	5,196
필리핀	총교역액	12,489	13,363	11,570	10,507	14,296	15,606	12,019	10,213
	수출	8,783	10,032	8,318	7,278	10,594	12,037	8,363	7,127
	수입	3,706	3,331	3,252	3,229	3,702	3,569	3,656	3,086
미얀마	총교역액	1,193	1,380	1,166	1,220	1,036	1,071	1,227	1,075
	수출	705	800	660	761	573	534	632	610
	수입	488	580	506	459	463	537	595	465
캄보디아	총교역액	751	848	870	813	865	974	1,033	885
	수출	615	654	653	573	604	660	697	567
	수입	136	194	217	240	261	314	336	318
브루나이	총교역액	2,037	1,582	1,239	779	859	672	482	297
	수출	102	290	272	67	64	62	74	82
	수입	1,935	1,292	967	712	795	610	408	215
라오스	총교역액	199	174	198	149	119	114	114	94
	수출	187	156	170	126	92	84	75	50
	수입	12	18	28	23	27	30	39	44

(3) 향후 추진 계획

1) 신남방지역과의 교역·투자 재활성화 촉진

코로나로 위축된 교역·투자 여건 회복을 위해 첫째, 아세안 회의 등 주요 협력체를 통해 특별입국 및 신속통로·교류확대가능국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한-캄 FTA('21.2.3 타결) 서명절차를 추진하고, 한-필 FTA('19.6.3) 협상을 진행한다. 셋째,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한다. 넷째, 베트남, 인니,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업통합지원(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를 본격화하고, 또한 해외공동물류 센터 이용, 온라인 전시관 홍보, 수입보험 지원, 해외시장조사 등 기업지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한다.

* (베) 원산지 시스템 선진화('21, 1.45억원), LNG 기술지원('21, 1.43억원) (인니) 법정계량 역량강화('21~'23, 4억원) 등 추진 및 신규 FTA와 연계한 경제협력사업 지속 모색

2) 순방·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을 통한 가치사슬 연계성 강화

① 기술 지원사업(TASK)*

현지 소부장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TASK의 대상 국가와 사업 수를 확대 추진한다. 이에 베트남과는 TASK사업 후속 사업으로 설립된 소재부품협력 핵심기반 시설인 VITASK 센터**('20.12)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별 경제 환경에 따른 맞춤형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 TASK(Tech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개요) 현지 소재부품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 및 양국간 가치사슬 연계 확대 촉진
(주요내용) ① 애로기술 해소, ② 시험·분석, ③ 기업연계 및 판로개척 등 지원

** 하노이 소재, 자동차·전자 등 분야 기술지도, 인력양성 지원 등 추진('19~'23, 137억원)

*** 인니(섬유), 캄보디아(섬유·식품가공), 태국(전기차), 필리핀(식품가공), 미얀마(농기계·식품가공, 상황에 따라 재검토 가능)

② 가치사슬 협력 확대 위한 기반시설 구축

아세안의 산업·기술협력 수요대응 및 협력사업 정책의 총괄 지원을 위한 한-아세안혁신기구 설립을 추진한다('21년~).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입지 강화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지원하는 표준 협력 거점으로서 한-아세안 표준화연구센터를 설립을 진행한다('22년~).

③ 중점국가 중심 맞춤형 협력 강화

아세안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인니 내 산업 생산거점 확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지 확보, 세제혜택 제공, 인허가절차 단축 등 현지 정부 협의 지원을 통해 자동차·철강·화학 등 주력산업

현지 생산거점(현대차 완성차 공장 준공, 포스코 열연공장 증설, 롯데케미컬 플랜트 증설 착공 등)을 구축한다. 또한 우리기업 GVC 강화를 위해 베트남 내 여건 개선 및 현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코리아데스크, VIETRACE 역량강화를 통해 기업진출여건을 개선하고, VITASK·기술 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해 기술이전과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3) 인도와의 다층적 협력 채널 구축 및 통상 현안 관리 강화

인도와 공공(관련부처)·민간(업종별협의회)·지역(州政府)에 걸쳐 협력채널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통상 현안 관리 강화를 위해, 첫째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진전을 위해 패키지 교환을 검토한다. 둘째, 印무역구제조치를 정부간 협의채널* 통해서 대응하고,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21년 12억) 등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 ①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21년중), ② 한-인도 CEPA 개정 협상, ③ 한-인도 경험 채널 등

2. 신북방

신북방통상총괄과 사무관 김희원

2019년과 2020년간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실질 성과 도출을 위해 대상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국빈으로 방문하고, 같은 해 9월 국무총리가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이후 2019년에는 한-러시아간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중앙아 산업 협력 인프라 조성 등의 성과도 일부 있었다. 2020년은 신북방 협력의 해로, 특히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여러 가지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심화로 각종 행사의 축소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비대면 접촉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신북방 정책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6월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선·자동차·기술 등 산업 분야 전반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같은 해 6월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9월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간 협력 관계를 증진하였다. 2020년에는 9개 다리 행동계획 2.0 관련 가스·전력·조선 등 산업부 소관분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소부장·미래차·수소경제 등 新산업 협력 본격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펀딩형 R&D, 산업기술 협력 온라인 상담회, 수소협력 세미나, ICT·소부장 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였다.

2019년 4월에는 문 대통령이 중앙아 3개국(투르크, 우즈베크, 카자흐)을 순방하고, 7월에는 국무총리가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여 정상급 외교를 통한 신북방정책의 외연 확대를 꾀하였다. 정상급 채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2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 3월 카자흐스탄 경제

공동위 등 장관급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북방정책의 본격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한-우즈벡 워킹그룹(3.27), 한-투르크 비즈니스협의회(4.17) 등 화상회의를 통해 기업인 입국허용(우즈벡) 및 진단키트 수출(카자흐) 등 코로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11월에는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11.6), 한-카자흐 경제공동위(11.17), 한-투르크 경제공동위(11.23) 등 중앙아 3개국 공동위를 연쇄 개최하여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밖에도 2019년 7월에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과의 수교 이후 총리급으로는 최초로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1) 러시아와의 9-Bridge 추진 본격화

신북방통상총괄과 사무관 홍유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7일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계기 기초연설에서 전력, 가스, 조선, 항만, 북극항로, 철도,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 한-러 협력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9-Bridge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9개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 및 경제개발부와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2019년 2월 양국 부총리 회담 계기 '9-Bridge 행동계획'에 서명하였다. 양국은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9-Bridge 협력 분야를 에너지, 철도·인프라, 조선, 항만·항해, 농림·수산, 보건, 투자, 혁신플랫폼, 문화관광으로 확대·개편하는 '9-Bridge 행동계획 2.0'을 마련하고, 2020년 10월 한-러 경제공동위 대표 간 화상회의 계기 공동성명문 채택 및 부총리 간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개 분야 중 에너지(전력 및 가스), 조선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전력

전력 분야에서는 동북아 지역 전력망을 연계하는 이른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는 극동시베리아 및 몽골의 풍부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수요가 많은 한·중·일로 끌어오기 위한 동북아 국가간 송전망 연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 사업은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 공급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번영에 기여하고 동시에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및 계통 불안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수단 확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역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여 북핵문제, 영토분쟁 등 정치·외교적 긴장 상황을 완화하고, 특히 전력망 북한 경유를 통해 남·북 긴장 완화 및 향후 통일에 대비한 북한 내 전력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이라는 의의도 있다.



〈그림 3-1〉 동북아 수퍼그리드 연계도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사업은 두 개의 신규 송전망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사할린)의 천연가스로 생산한 전기를 남-북-러 500kV HVDC 송전선로(1,000km, 3GW)를 통해 국내로 송출하기 위해 러시아-북한-남한으로 연결되는 세로축이다. 다른 한 축은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중(370km), 한-일(460km) 간 500kV 해저 HVDC(2GW)를 통해 국내 및 일본으로 송출하기 위해 중국-한국-일본으로 연결되는 가로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T/F를 설립하였다.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 계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러시아 에너지부 간, 한국전력공사와 러시아 로세티 간 한-러 전력계통 연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양국간 공동연구 추진 로드맵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개시하였다. 2020년 10월에는 한-러 정부 주관 공동연구 워킹그룹 운영에 합의한 바 있으며, 동 협의 채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한-러 전력망 연계 공동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전력망 연결을 완성하고,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경로확정, 비즈니스 모델 마련 등 남-북-러 연계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2) 천연가스

2019년 기준 러시아는 미국에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529백만톤) 국가로서 신규 프로젝트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요처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으로서 2009년부터 매년 150여만톤의 LNG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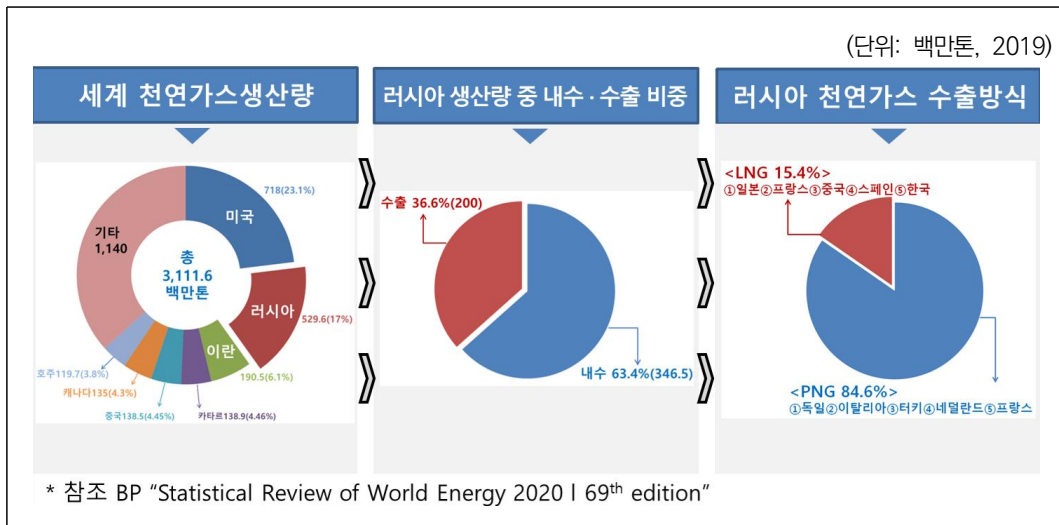
2020년에는 200여만톤 수준까지 증가한 바 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향후 천연가스 소비비중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도입선 다변화 및 수급 안정성 도모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가스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3-4〉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현황(천톤, 비중)

(단위 : 천톤)

지역별	'17년(비중)	'18년(비중)	'19년(비중)	'20년(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러시아	1,923 (5.1%)	1,930 (4.4%)	2,247 (5.5%)	2,019 (5.0%)	△10.1%
합계	37,471	44,015	40,750	40,000	△1.8%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품목코드 27-11-11-0000)



〈그림 3-2〉 2019년 러시아 천연가스 현황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17년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및 2018년 6월 러시아 정상순방 계기 양국은 호혜적 협력 잠재력이 큰 가스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가스협력 T/F가 구축되었고, 한-러 양국 기관 및 정부 간 실무협회가 진행되는 등 한-러 가스 분야 협력 확대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 계기 정상 공동성명에 양국은 한-러 파이프천연가스(PNG) 연계 공동연구를 반영하였고, 같은 해 10월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프롬 간 PNG 공동연구에 착수하였다. 해당 공동연구는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양국은 경제성을 기본으로 공급안정성·외교안보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가스 협력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 유망 LNG 프로젝트 참여방안 검토, 남북관계 개선 대비 PNG 연계 추진 등을 러시아와 민관 협의를 통해 지속 논의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가스 도입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3) 조선

2017년 이후 우리 대형조선사들은 러시아 발주 LNG선, 유조선 등 대형선박을 35척 수주하여 약 79억불의 수주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2019년, 2020년에는 높은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 발주 쇄빙 LNG운반선을 대거 수주한 바 있다. 아울러,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순방을 계기로 양국의 조선 분야 협력은 기존 선박 발주-수주에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지원, 기자재 공급, 연구 인력 교류 등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원원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우선 러시아의 자체 선박 건조를 목표로 추진중인 즈베즈다 조선 현대화 사업에 우리 대형 조선사들이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 기술 자문 등 기술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자재 등 조선 분야 협력 다각화를 위해 러시아 조선기자재 시장진출 설명회,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한-러 조선해양 기자재센터, 같은 해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 해양기자재 수출거점기지를 개소하고, 조선 분야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는 등 한-러 조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에 이어 2020년 우리대형조선사와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간 약 40억불 규모의 쇄빙 LNG운반선 공동건조 계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향후 양국은 러시아의 즈베즈다 조선소 자립화를 위해 기술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즈베즈다 등 러시아 조선소 선박 건조시 우리 기자재 공급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확대, 고부가 선박 및 쇄빙 기능 등 기술역량 제고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양아시아 협력사업 내실화

신북방통상총괄과 서기관 정경화
사무관 이은효
사무관 이시원

1) 한-중양아시아 교역·투자 현황

한국은 1992년 중양아시아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고 교역을 시작하였다. 공식적인 무역통계가 처음 집계된 1994년의 교역규모는 4억3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20년에는 5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과 중양아시아 교역은 1990년대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부터는 우리 기업의 중양아시아 플랜트, 건설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기계류와 같은 공업 제품 위주로 바뀌어왔다. 한국의 대 중양아시아 주요 수출품은 섬유 및 화학기계, 자동차부품, 자동차, 기계요소 등이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입품은 원유, 우라늄, 합금철, 비철금속과 같은 원자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앙아시아 주요 5개국 중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래 교역 규모가 꾸준히 상승해 2019년 42억 2천만 달러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그러나 2020년 들어 국제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3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2017년 이래 교역 규모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들어 23억 6천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 17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누계(신고금액 기준)는 1991년 2백만 불에서 2020년 58억 8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부동산업, 광업 등이다.

〈표 3-5〉 한·중앙아시아 교역 추이(*20년)

국 가	교역액 (백만불)	수출액 (백만불)	수입액 (백만불)	무역수지 (백만불)	투자(누계) (백만불)
카자흐스탄	3,088	1,998	1,090	907	4,058
우즈베키스탄	1,722	1,704	18	1,686	1,573
투르크메니스탄	69	69	0	69	2
타지키스탄	46	46	0.3	46	64
키르기즈스탄	75	74	0.5	74	182
5개국 전체	5,000	3,891	1,109	2,782	5,880

*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2) 한-중앙아시아 협력 현황

①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

중앙아시아는 자원 및 에너지 인프라의 건설 수요가 증가하여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상당수 대규모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우리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원회,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경제협력채널 운영을 통해 국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한 - 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원회는 2019년 3월 서울에서 5년만에 제8차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상호 호혜적 협력 강화 및 무역·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정상 순방 대비 산업·자원·에너지 분야 협력사업을 점검하였다. 2020년 11월에는 화상으로 제9차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에너지·자원, 운송·물류,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2019년 9월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제1차 한-카자흐스탄 워킹그룹을 개최하여 신규 경제 협력 프로그램(Fresh Wind) 및 정상 순방 성과사업의 체계적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와 무역투자공동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제9차 회의는 2019년 3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양국간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과사업 창출을 위한 중요한 회의였으며, 한-우즈벡 FTA 공동연구 합의 등이 이뤄졌다. 또한, 한-우즈벡 농기계R&D센터, 한-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 개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2020년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10차 무역경제 공동위원회('20.11월), 제3차 워킹그룹('20.3월), 제4차 워킹그룹('20.7월)을 화상 또는 대면으로 개최하고, 코로나19 이후 외국정부의 고위급 최초 방한인 우즈벡 부총리 방한 계기 무역경제공동 위원회 수석대표 회담을 통해 부하라정유공장 현대화 기본설계 계약 체결, 한-우즈벡 FTA 공동 연구 완료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2008년 11월 6일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간 공동협력위원회 설립 협정'이 발효되어, 2008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9년 문재인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시 양국간 '경제 협력프로그램'이 체결되는 등 양국간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2020.11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8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원회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양국은 주요 4개 분야(에너지, 산업, 물관리, 교통)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동 계기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투르크멘 발칸조선소 간 조선분야 협력MOU가 체결되어 조선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고위급 교류

2019년 4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계기, 3개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신북방정책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신북방정책 추진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앙아 3개국과의 협력 채널 강화·격상을 합의하고, 키안리 판매법인 설립(투르크),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우즈벡), 현대차 조립공장 설립(카자흐) 등 31개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하였다. 또한, 한-우즈벡 FTA 타당성 공동연구,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투자보장협정 개정 등 60여개 협정 및 MOU를 체결하였다.

2019년 9월 카자흐스탄 아탐쿨로프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이 방한하여 산업부 성윤모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상순방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한-카자흐 실질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2019년 9월 산업부 김용래 통상차관보가 제1차 한-카자흐스탄 워킹그룹 참석차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스클라르 부총리를 예방하고, 워킹그룹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카촉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2020년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대통령과 두 차례의 정상간 전화통화(‘20.4월, 10월),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방한(‘20.7월),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 방한(‘20.11월)이 이뤄졌으며,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총 55만불 인도적 지원과 의료전문가 파견 등 2019년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③ 민간 경제계 교류

2019년 4월 정상순방 후속조치로 2019년 10월 한국무역협회와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 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2020년 4월에 2차, 8월에 3차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플랜트, 교통, 해수담수화사업, 섬유, 철도, 조선 등 주요 관심분야에서 양국 기업이 참석하여 논의하고 있다.

2019년 4월 정상순방 계기 누르술탄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아스카르 마민 총리를 대표로 산업인프라개발부장관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진출에 관심 있는 90여개 대·중소기업 및 기관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동 포럼을 통해 양국간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로의 전환과 산업다변화를 통한 투자 외연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2019년 7월 이낙연 총리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였으며, 동 계기에 양국간 최초로 비즈니스포럼 및 B2B 상담회가 개최되었다

3) 향후 협력 방향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와는 교역, 산업 등에서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협력을 통한 성장 잠재력이 크다.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적인 우리로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단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의 발전모델 도입을 원하고 있다.

정부는 한-우즈베키스탄 부총리 회담, 무역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양국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과 기존의 무역,

투자, 프로젝트 등의 협력을 넘어 의료, 보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예정이다. 특히, 한-우즈베키스탄 FTA 공동연구가 2020년 7월에 완료되었으며, 양측은 FTA 협상 개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바, 향후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카자흐스탄과는 자동차, 플랜트, 원전 등 산업·에너지 분야 뿐 아니라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상생 번영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교통·물류 분야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은 '2050 경제발전전략'을 기본으로 제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 산업다변화를 추진중임을 감안하여, 향후 양국간 협력 분야를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국가발전전략 “2011-2030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사회복지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리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발주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섬유, 조선,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우리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시장진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3) 기타 협력

제1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2016.6)된지 4년 후 2020년 2월 바쿠에서 2차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탈석유산업을 지향하는 아제르와 자동차, 기계, ICT 등 분야에서 산업 다각화를 위한 양국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아제르 정부가 발주한 ‘아제르바이잔 GPC 프로젝트(30억불)’와 ‘아시마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10억불)’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여 양국 간 플랜트 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 남북으로 터키 및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어 우리나라와의 교류 확대는 신북방정책의 외연확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제르바이잔은 주요 산업이 석유화학에 집중되어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장기발전전략으로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간 경제협력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 기업들의 시장진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3. 중 동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조문규
주무관 손경환

중동은 한국의 에너지 주요 공급처이며 플랜트·원전 수출 대상지역으로, 풍부한 오일머니를 활용한 산업·경제·자원협력 중점 대상지역이다. 특히 전체인구 중 30세 이하가 45.62%(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중동 각국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ICT 육성 등 산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VISION 2030’을 발표한 이래 석유의존도를 축소하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회·경제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쿠웨이트 ‘VISION 2035’,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카타르 ‘국가 VISION 2030’ 등 중동 국가들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포스트 오일시대에 대비한 산업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8년 5월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핵합의를 탈퇴하고 對이란 제재를 복원하였고 이란산 원유수입이 많은 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컨덴세이트)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 하였으나 2019년 5월 2일부로 동 예외조치를 종료하였다.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피격사건(‘19.9.14) 이후 국제테러세력 지원을 이유로 이란중앙은행(CBI)을 제재 대상에 추가(‘19.9.20) 하는 등 미국의 對이란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이란 교역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후 우리정부는 국내은행들에 예치된 이란중앙은행 원화 자금을 활용하여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코로나 19 관련 의약품 등)을 재개하였다.(‘20.4월)

또한, 2020년 9월,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를 통해 미 백악관에서 UAE, 바레인과 관계 정상화 서명식을 개최(아브라함 협정)하였다. 아브라함 협정 체결로 이스라엘은 이집트(1979년), 요르단(1994년)에 이어 그간 대립관계였던 걸프지역 아랍국가와 수교하게 되었다.

이렇듯 중동 지역은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에서 축적된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회 인프라 개발 및 산업 다각화 잠재력이 큰 한편, 리스크 또한 병존하는 지역이다. 시리아, 이라크 등의 치안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의 정정불안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지역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제 1 장

제 2 장

경제
통상 협력 강화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1)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1970년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젯다-메카간 고속도로와 주베일 항만 등의 건설현장에 진출한 이후 우리나라는 중동지역 국가들과 에너지와 플랜트·인프라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원유 도입량의 69.0%(6.8억 배럴), 천연가스 도입량의 32.9%(13백만톤)를 공급해 왔다. 한편 2020년 우리나라의 중동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 대비 105.2% 증가한 약 71.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3-6〉 중동지역 국가별 원유 도입 현황

구분	2020년			2019년		
	물량(백만B)	순 위	비중(%)	물량(백만B)	순 위	비중(%)
사우디	327	1	33.4	297	1	27.7
쿠웨이트	131	2	13.4	151	2	14.1
UAE	78	4	7.9	89	5	8.3
이라크	77	5	7.9	118	4	11.1
카타르	60	6	6.1	64	6	6.0
전 체	980	-	100	1,072	-	100.0

〈표 3-7〉 중동지역 국가별 천연가스 도입 현황

구분	2020년			2019년		
	물량(천톤)	순 위	비중(%)	물량(천톤)	순 위	비중(%)
카타르	9,087	1	22.7	11,311	1	27.8
오만	3,900	5	9.7	3,946	5	9.7
UAE	176	13	0.4	183	12	0.4
전 체	40,000	-	100	40,750	-	100.0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동지역과는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에너지·자원을 공급받는 한편, 이 지역에 인프라·플랜트 수주를 통한 플랜트 기자재 수출, 자동차(부품 포함), 전자제품, 선박 및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공급하고 있다.

2020년말 기준 한국과 중동의 교역규모는 약 594억 달러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여파로 교역규모가 위축되었다. 2020년 유가 하락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동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수입으로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표 3-8〉 대 중동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36,616 (11.4)	32,288 (△11.8)	34,790 (7.7)	30,413 (△12.6)	26,228 (△13.8)	24,380 (△7.0)	21,668 (△11.0)	17,661 (△18.6)	14,675 (△16.9)
수입	127,768 (7.2)	126,186 (△1.2)	119,121 (△5.6)	68,505 (△42.5)	54,126 (△21.0)	70,153 (29.6)	86,071 (22.7)	71,999 (△16.3)	44,725 (△37.9)
수지	△91,152	△93,898	△84,331	△38,092	△27,899	△45,773	△60,384	△54,338	△30,050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중동 지역분류 기준)

활발한 교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對중동 투자비중(신고액 기준)은 '20년 1.2%(8.4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은 Post-Oi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일 머니를 활용하여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표 3-9〉 한·중동 투자현황

(단위: 백만불, 건)

구분		'14	'15	'16	'17	'18	'19	'20
對韓 투자	건수	65	67	74	70	69	56	67
	금액	225	1,381	397	1,066	594	756	547
對중동 투자	건수	234	268	226	212	176	148	110
	금액	964	1,603	1,045	794	883	795	843

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對韓 투자), 수출입은행(對중동 투자)

(2)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

1) 정상급 교류

① UAE 아부다비 왕세제 방한

2019년 2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한국에 방문하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2018년 3월)된 양국 관계를 공고히 했다. 왕세제 방한은 2018년 3월 우리 정상급의 UAE 방문 이후 약 1년만의 답방으로, 방한 계기에 산업·투자, 원전 등 에너지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양국 원전업계는 '바라카 1호기 연료장전·시운전·운전을 위한 협력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양국 정부간 '청정생산 및 생태산업개발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추진했다.

② 사우디 왕세자 방한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2030'을 주도하며 한국을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2019년 6월 한국을 방문하여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논의하였다. 동 사우디 왕세자 방한은 1998년 압둘라 왕세제 방한 이후 21년만에 이루어진 사우디 왕위계승자의 방한이자 모하메드 왕세자의 최초 방한으로, 방한 계기에 약 83억불 규모의 양해각서 및 계약을 10건 체결하고, 기업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한층 격상되었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 양국은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 친환경 자동차 등 고부가 가치 신산업 분야와 수소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였다.

2) 고위급 교류

① 장관 UAE 방문

산업부장관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에 따른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인 UAE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을 현지에서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양국 핵심 협력분야인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UAE를 방문하였다. 또한 아부다비지속가능주간(ADSW, Abu Dhabi Sustainability Week) 개막식에 한국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UAE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② 제2차 한-사우디 비전2030 위원회

산업부장관은 2019년 4월 알 투와이즈리 사우디 경제기획부장관과 서울에서 '제 2차 한-사우디 비전2030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7.10월 제1차 위원회 개최 이후 1년 6개월 여 만에 개최되었으며 제조/에너지, 디지털/인프라, 역량강화, 보건의료, 중소기업/투자 등 경제협력 5대 분야에서 40여 개의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이행 계획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 성과 창출 방안을 찾았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양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 및 일대일 상담회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양국간 비전 2030 협력 프로젝트(B2B, G2G)의 발굴·점검 및 중점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③ 제5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산업부장관은 2019년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제 5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통상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2016년 12월 제4차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이후 약 3년만에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카타르 정부측과 에너지,

건설·인프라, 해양수산, 보건·의료 등 9개 분야에서 양국간 성과사업 도출 및 구체적인 협력방안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 화력·신재생전력생산 및 ㉢ 장애인보조공학기기 협력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향후 전력생산 및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4. 중남미

미주통상과 사무관 정완호

중남미는 인구 6억4천만명, 경제규모 5.8조불(세계 GDP의 6.7%)의 신흥경제 지역으로 한국의 전통적 무역 흑자 지역이다. 또한 우리의 3대 해외건설 시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신남방·신북방을 넘어 외연을 넓혀나가야 할 교역다변화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이라는 도전과제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남미는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여지가 크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글로벌 경기 충격은 원자재 수출비중이 높고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중남미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2020년 중남미는 미국, 중국 등의 수요 감소와 원자재가격 하락 여파로 교역이 급격히 감소했다. 많은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와 취약한 인프라 시설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다. 보건문제와 더불어 실업, 빈곤, 재정적자, 시위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의 對중남미 교역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 무역수지 흑자지역이었으나, 2020년에 전체 교역이 399억불로서 2019년 466억불 대비 14.4% 감소했으며, 처음으로 9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對중남미 투자는 2019년 167억불로 전년대비 115.5%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98억불로 2019년 대비 41.7% 감소했다. 반면, 중남미의 對한국 투자는 2019년 11억불로 전년대비 28.9% 감소했으나, 2020년에는 16억불로 2019년 대비 46.4% 증가했다.

한편, 한-중남미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두 지역 간 무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19.4월 한-칠레 정상회담, '19.5월 이낙연 국무총리 중남미 2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공식방문, '19.10월 한-콜롬비아 산업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지지, 한-칠레 FTA개선, 무역·투자 촉진, 4차산업혁명·에너지·인프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21.3월 한-중미5개국 FTA⁶⁾가 전체 발효됨에 따라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교역 감소,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통상여건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 모두 높은 미-중 교역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교역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한-메르코수르(MERCOSUR)⁷⁾ 무역협정과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협상⁸⁾을 조속히 추진하여, 한-칠레 FTA('04년), 한-페루 FTA('11년), 한-콜롬비아 FTA('16년), 한-중미5개국 FTA('21.3월) 등과 함께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 벨트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기반마련은 앞으로 중남미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간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온두라스('19.10.1 발효), 니카라과('19.10.1), 코스타리카('19.11.1) 엘살바도르('20.1.1), 파나마('21.3.1)

7)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18.5월 무역협상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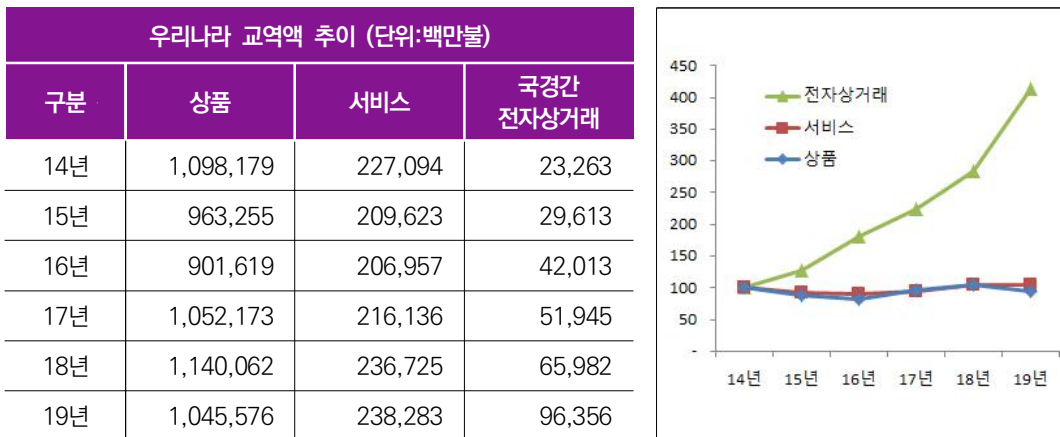
8) '12년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간 결성한 지역연합,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시 한-멕시코 신규 FTA 체결 및 칠레·페루·콜롬비아와의 기존 FTA 개선효과

1.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

(1) 디지털통상 전략 수립 및 선제적 제도개선 추진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소비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와 디지털기술이 경제의 핵심 생산요소로 부상하고, 무역의 주요대상도 기존 상품·서비스에서 데이터와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EU 등 주요국은 디지털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표 3-10〉 디지털 교역액 추이



※ 그림은 14년 거래금액을 100으로 둘 때, 각 연도별 값의 14년 대비 비율

우리도 글로벌 디지털통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기업의 디지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디지털통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의 활용 측면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통상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디지털경제에 핵심인 데이터 이용 등 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규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디지털통상 대응반'을 출범('20.7월)시켜, 소관 부처별 제도개선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2) 다자·양자간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 추진

①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다자간 디지털통상 규범 마련 추진

디지털기술 발달로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무역 변화를 다룰 WTO 차원의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전자상거래 협상이 '19.5월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기업의 수요와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통상규범을 선별한 포괄적인 제안문을 제출하고,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⁹⁾ 중이다.

②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등 지역·양자간 디지털통상 협정 체결

세계 최대 FTA인 RCEP¹⁰⁾('20년 11월 최종 서명)에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하여 성장하는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와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자 디지털통상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의 개시를 선언('19.6.22)하고 '21.3월 기준 7차례의 공식협상을 포함한 여러차례의 공식·비공식협상을 개최하여,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디지털규범 정립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다.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우리와 유사한 싱가포르와의 디지털통상 협정체결은 전세계적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비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활성화된 비대면 거래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KSDPA는 기존 디지털통상 협정의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하여,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9)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19.5월 협상 개시 이래 '21.3월 기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86개국이 참여하여 총 16회의 전체회의('19년 6회, '20년 8회, '21년2회) 및 소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전자무역 원활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대우 등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마련 중이다

10)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FTA(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

2. 디지털통상 기반 강화

(1) 디지털통상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무역환경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체계적인 디지털통상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단기교육 과정인 '디지털통상 아카데미'를 201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통상 아카데미는 산·학·연·관의 통상관련 업무를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020년은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협력하여 '20.9월부터 격주로 총 10회에 걸쳐 전문가 강의 및 포럼으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21년은 시기를 앞 당겨 4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2) 민·관 소통 확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통상 환경에 적시 대응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디지털통상 민·관협의체를 구성('19.12월 발족)하여 디지털통상의 주요이슈를 민관이 공유하고 정책추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통상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제고하고 저변확대를 위한 '2018 산업부-OECD 공동 포럼('18.11월, COEX), '2019 디지털 경제컨퍼런스('19.5월, 무역협회)', 디지털경제통상 대회('19.12월, COEX), '디지털통상 컨퍼런스('20.7월, COEX) 등 다양한 컨퍼런스,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경제 및 통상에 대한 최신동향을 공유하였다.

제 4 절 코로나19로 인한 통상이슈 대응 및 기업애로 해소

1. 기업인 출입국 원활화

신북방통상총괄과 서기관 정흥곤

(1)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신설·운영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과 관련하여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Pandemic”을 선언하면서 세계는 사상 초유의 국가·국경간 봉쇄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간 이동에 있어 필수사항인 사증 발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고, 정기 항공편도 코로나19 이전의 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 기업인들의 글로벌 경제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었고, 대외경제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수 인력들의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업인들의 국가·국경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20.4월 국무조정실의 주관 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로 이루어진 “기업 입국애로 해소 TF”를 발족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년 한 해 동안 중국, UAE, 인도네시아 등 총 23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인 2만 3천여명의 예외적 입국을 지원하였다.

'20.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코로나 환경에서의 우리 기업인 출입국 지원을 위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는 별도 홈페이지(www.btsc.or.kr)를 비롯하여 안내를 위한 대표번호(1566-8110) 등을 갖추고, 사업목적으로 출입국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 환경에서의 국가별 출입국 현황, 우리나라 기업인 출입국 지원제도 현황, 주요 업무별 정부부처 담당자 등 기업인 출입국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 (Single-Window)하는 한편, 출국前 예방접종 및 전세기 지원부터 출장 과정에서의 건강진단 및 의료 지원, 입국시 격리면제 지원까지 해외 출장 쏠주기(One-Stop Service)를 지원하고 있다.

'21.4월부터 시작된 기업인 필수목적 출장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 이유로 코로나19 유행 국가,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등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을 방문하거나,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국가로 출장이 예정된 경우, 기업인이 출장 60일전에 백신접종을 신청하면 관련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서 기업인이 백신을 접종받을 있는 제도이다.

전세기 지원에 있어서는 종합지원센터가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수요가 많은 베트남, 중국 등으로의 출장 기업인 모집, 전세기 인·허가 협의 및 운항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4월부터 지금까지 전세기 총 49회 5,229명을 지원하였고, 비자 발급, 현지숙소 예약, 격리면제 신청 등을 일괄 지원하는 '입국지원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앞으로도 수요가 많은 중국 등을 대상으로 이동지원 패키지를 확대할 계획이며, 베트남을 비롯하여 미국, 인니 등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약 및 약정 체결, 현장에서의 작업 불가피, 비대면으로 해소 불가능 등 사유 인정시 입국 전·후, 체류기간 중 PCR 검사 의무 등 엄격한 기준하에 국내 입국시 격리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월 격리면제 접수가 13개 부처에서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되면서 기업인이 접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2주에서 평균 5.8일로 단축되었고, '21.3월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되어 기업인의 지원제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였다.

(2) 『신속통로』 제도 도입 등 양자·다자 국제공조 주도

우리 기업인의 해외출장 등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양자·다자 정부간 기업인 출입국 원활화 국제공조를 우리 주도하에 적극 추진하였다. 우선, 중국, 일본, 베트남, 인니, 싱가포르, UAE 등 국내기업인의 출장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 등을 전제로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 등 양국 상호간 기업인 입국특례를 제도화한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시에, 우리 주도로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6개국간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공동각료선언을 채택('20.5월)하였으며 이 밖에도 WTO, OECD, G20, APEC, 아세안 등 기업인 이동 원활화를 위한 다자·지역 공조를 주도하였다.

2. 주요 국가·지역별 대응

(1) 중 국

동북아통상과 사무관 이창우

① 한중 기업인 입국애로 해소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정부의 엄격한 방역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인은 중국 입국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었다. 이에 양국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20년 5월 '한중 기업인 입국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속통로 제도는 일정 요건과 방역 절차를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당초 입국시 14일 격리기간을 2~3일로 단축함으로써 양국 기업인들의 방역 부담 경감과 기업인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업부는 신속통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함으로써 신속통로 운영과정에서 우리기업인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간 정기항공편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입국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부는 정기항공편 축소에 따른 우리기업인의 입국 애로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중국 측에 정기항공편 증편 관련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전세기 운항 확대를 지원하였다. 특히, 전세기 운항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전세기 마련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의 중국 입국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무역협회, 코트라 등 지원기관과 협업을 통해 광둥성, 충칭 등 지역에 대한 전세기 운항을 추진하였다.

② 중국 진출 기업의 조업재개 지원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현지 진출 우리기업을 포함한 중국내 대부분 공장이 가동 중단되었다. 특히 중국내 부품 공장의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와이어링하네스 등 필수 부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차량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외교부 등과 협력하여 산동성 등 현지 공장 소재 지방정부에 조속한 조업재개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공장으로부터 부품수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중국 현지 기업들의 방역조건 이행, 중국 지방정부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중국내 부품공장이 예정일보다 빠르게 생산을 재개하고, 우리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2) 신남방

신남방통상과 사무관 박찬서

정부는 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인력들의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우선 우리의 생산기지가 위치하고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다수 기업으로부터 출장자를 모집해 전세기 이동·방역·격리에 이르는 방안을 구상·추진하였다. 산업부·외교부·주베(대)·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 등 유관 기관이 팀코리아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입국 협의, 비자 발급, 전세기·격리호텔 섭외 등 출장의 순과정을 직접 주도하여 4.29일 340명의 필수 인력들이 처음으로 베트남에 입국하였으며, 이를 통해 2만명이 넘는 인력들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태국, 인도 등 기업인들의 수요가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특별입국을 지원하였으며, 현지 격리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이동을 가능케 하는 신속통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인니, 싱가포르, 베트남과 신속통로를 구축하였다.

(3) 중 동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사무관 조문규

코로나19 상황 속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국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는 중동·아프리카 주요 협력국가에도 신속입국제도 및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추진을 지원하였다. 특히 한국, UAE 양국 정부는 기업인 출입국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요사업(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 학술 및 인도적 목적의 필수 방문자를 대상으로 입국 허가 및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하는 신속입국제도 도입('20.8.5)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중동·아프리카 주요국에 대한 우리 기업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예외적 입국을 지원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였던 쿠웨이트는 우리 기업의 필수 기술 인력에 대한 첫 예외적 입국을 허용('20.4)하였고, 이에 더해 산업부는 카타르, 이라크, 알제리 등에도 우리 기업인이 예외적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4) E U

구주통상과 사무관 박용균

코로나19 확산 초기, 유럽 각국의 엄격한 방역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인의 출입국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은 현지출장을 가야하는 사정이 발생하기 마련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에서는 친환경 배터리 공장 증설, 자동차 후속모델 양산 등을 위한 전문 엔지니어의 입국이 불가피했는데, 정부가 각 국 정부와 직접 협의하여 필수 목적상 출입국에 대한 예외조치를 인정받아 기업인이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제1장

제2장

경제
통상
협력
강화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지원

제 1 절 다자간 통상협력 강화

1.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기여

세계무역기구와 서기관 차세운

(1) WTO 개관

세계 다자무역체제의 시작은 1948년에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라 할 수 있다. 관세·쿼타 등의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교역 촉진을 목표로 했던 GATT 체제 하에서, 세계는 총 8차례의 협상 라운드를 통해 폭넓은 관세 인하 등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GATT 규범을 우회하여 보호무역 정책을 남용하는 등, 반 세기 동안 지속된 GATT 체제도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86년에 GATT 체제 하 8번째 협상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가 개시되었으며, 약 8년간의 논의 끝에 GATT를 대체할 다자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1995년 1월 1일에 출범하게 되었다.

WTO는 회원국간 합의된 규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 세계 각국의 상호호혜적 발전과 번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그 전신인 GATT와 유사하다. 다만, GATT의 규율 대상이 주로 공산품 거래에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WTO는 농산물거래와 함께 서비스·지재권·무역관련투자조치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규범의 구속력도 한층 더 강해졌다. 그 결과, '95년 WTO 출범 후 25년간 세계는 교역액이 4배 증가하고 평균관세율이 10.5%에서 6.4%로 낮아지는 등 무역자유화의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WTO의 회원국도 지속적으로 증가, '20년말 현재 세계 국가 대다수인 164개국이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이에 더하여 약 20여개 국가도 가입절차를 진행 중이다.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매년 2년마다 개최되는 각료회의(MC: Ministerial Conference)다. WTO 출범 이래 11차례 개최된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들이 핵심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무역 자유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제11차 각료회의(MC-11)는 2017년말에 열렸으며, 제12차 각료회의(MC-12)는 당초 2020년 6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개최 시점이 2021년말로 연기되었다. WTO는 금번 각료회의의 성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 이는 MC-12가 MC-11 이후 무려 4년만에 개최되는 각료회의일 뿐만 아니라, 최근 WTO의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소위 “WTO 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MC-12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 WTO 위기 - WTO 개혁 필요성 대두

WTO는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어, WTO의 기능도 크게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협상을 통해 통상규범을 제정하고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기능(“협상·규범제정”), ② 회원국들의 통상규범 준수·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이행·모니터링”), ③ 통상규범에 기해 회원국간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분쟁해결”)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WTO가 이 3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WTO의 세계 경제 내 위상과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는 실정이다.

우선, 회원국간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한 ‘도하 개발 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비롯, WTO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다자간 협상이 수년간의 노력에도 특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WTO가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 추세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도 WTO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커지게 했다. 게다가 미국이 WTO 상소기구 판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상소위원 신규 임명을 거부하면서, 최종심으로서 WTO 분쟁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상소기구도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WTO 체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각심을 회원국들에게 불러일으켰다. 이는 WTO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EU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은 WTO의 위상을 회복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다자무역체제의 옹호자이자 책임있는 WTO 회원국으로서, WTO의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WTO 주요 활동

우리나라는 '67년 GATT에 가입하고 '95년 출범한 WTO의 원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다자무역 체제 하에서 무역·수출에 기반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특히 WTO의 상세하고 실효성 있는

규범체계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공정무역 원칙을 확고히 하여, 우리 업계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에 우리는 예전부터 WTO 중심 다자체제의 발전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 왔다.

① WTO 개혁 노력 동참

우리는 우리와 같이 다자무역체제를 중시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WTO 개혁 논의를 주도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WTO 개혁 소그룹인 '오타와그룹'에서의 활동이다. 총 13개국 - 캐나다(의장국), EU,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멕시코, 브라질, 스위스, 노르웨이, 케냐 - 으로 출범한 오타와그룹은 WTO의 개혁 필요성을 회원국들에게 환기시키고 개혁 논의를 선도할 목적으로 2018년 10월 결성되었다. 동 그룹은 2020년말까지 6차례의 장관급 회의 및 수차례의 실무급 회의를 통해 WTO 개혁 현안을 논의해 왔으며, 우리도 동 그룹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WTO 개혁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다.

WTO 개혁을 위한 회원국간 결속을 다지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WTO 개혁 관련 세부 이슈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WTO 개혁의 핵심 이슈인 상소기구 관련 논의가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2018년말 EU 등 14개국과 상소기구 개혁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는 등 현재의 상소 기구를 개선할 방안을 회원국들과 활발히 논의하였다. 비록 상소기구는 2019년말 정지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우리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고민과 노력은 향후 WTO가 상소기구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는 WTO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회원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도 적극적으로 표명해 왔다. 한 가지 예로 우리는 2019년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특혜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WTO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담긴 결단이었다.

또한, 2020년에 진행된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하였던 것도 WTO의 위기 극복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총 3차례의 라운드로 진행되었던 동 선거에서 유 본부장은 8명의 후보 중 최종 2인이 겨루는 결선까지 진출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WTO 개혁 의지에 대한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와 기대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WTO 분야별 협상 참여

앞서 언급하였듯이, WTO 협상의 지지부진한 성과는 WTO 체제가 비판받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였다. 이에 WTO에서는 진행중인 협상에서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산 분야 보조금 규율 마련이 목적인 수산보조금 협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현재 WTO에서 진행중인 유일한 다자간 협상(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협상)인 만큼, 회원국들은 수산보조금 협상의 타결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고 있으며, 우리도 국익을 우선하면서 협상 진전에 계속 건설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WTO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외에 4가지 분야의 복수국간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회원국이 아닌 희망국만 참여하는 협상으로, 디지털경제 트렌드에 맞는 통상규범 마련이 목적인 전자상거래 협상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그 외 투자원활화, 서비스 국내규제, MSMEs(중소기업) 등의 분야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4개 복수국간 협상 모두에 참여하며 WTO 협상 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③ 코로나19, 환경·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과제 논의에 동참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지구적 과제 해결에 WT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오타와그룹 13개국은,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앞으로의 보건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WTO 차원에서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2020년 11월 제안된 동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각종 필수 의료물품이 세계 전역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것으로, 수출제한 등의 무역제한조치 최소화, 각종 무역원활화 조치 확산 등을 위한 WTO에서의 실질적인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WTO에서 환경·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노력도 전개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의 출범이다. 우리나라 포함 50개 회원국의 주도 하에 2020년 11월 출범한 동 협의체는, WTO가 환경·기후변화 관련 이슈의 대응에 기여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2019~2020년 APEC 논의 개관

2019년 APEC 21개 회원국¹²⁾은 칠레를 의장국으로 하여 장관급 회의인 통상장관회의를 5월 17~18일 비냐 델 마르(Vina Del Mar)에서 개최했다. 한편 정상회의를 11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개최국인 칠레의 국내 사정으로 취소됐고,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최종고위관리회의(12.7일)를 통해 칠레는 APEC 의장국 정상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의장국인 칠레 주도하에 회원국들은 ‘여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라 세레나 로드맵(2019~2030)’과 ‘해양쓰레기 로드맵’,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로드맵’을 승인하여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한 포용성 증진과 역내 해양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서, 2020년에는 말레이시아를 의장국으로 하여 정상회의(11월 20일)를 비롯하여 통상장관 회의(7월 25일), 합동각료회의(11월 17일)가 모두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고위관리회의를 주축으로 한 다양한 실무급 화상회의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¹³⁾ 특히, 화상으로 개최된 제27차 정상회의에서는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인적 잠재력 극대화(Optimis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Resilient Future of Shared Prosperity)’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코로나19 대응, 무역·투자의 담론 개선, 디지털 경제·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 혁신적 지속가능성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2) 2019년 APEC 통상 분야 논의 성과

2019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장관들은 WTO 기능의 개선과 강화,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진전, 디지털 시대의 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하여 APEC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였다.

우선, 참석 장관들은 규범에 기반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규범 협상, 분쟁 해결, 모니터링 등 핵심 분야에서 WTO 개혁이 진전될 수 있도록 APEC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11)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2)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ASEAN 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13)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국가로 이루어진 APEC은 매년 의장국을 교체함. 최근 5년간 APEC 의장국은 2016년 페루, 2017년 베트남, 2018년 파푸아뉴기니, 2019년 칠레, 2020년 말레이시아 등임(우리나라는 2005년 의장국).

또한, 회원국들은 '93년 합의된 '보고르 목표14)'의 이행이 종료되는 '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¹⁵⁾)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이 추진한 '보고르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노력(final push)' 핵심 분야 가운데 서비스무역규제 환경 측정 지수 개발 주도국으로 선정됐는데, 지수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방적 대외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주의 경제공동체를 실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경제가 보다 포용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 하였으며,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¹⁶⁾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디지털경제 분야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금'의 창설을 주도했다.

(3) 2020년 APEC 통상 분야 논의 성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APEC 21개국 통상장관들은 2020년 5월 5일 “코로나 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Statement on COVID-19 by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을 발표하였다. 동 선언문에는 의약품·의료장비·농식품 등 필수품의 교역 흐름 보장,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 시행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시적·비례적으로 시행, 경제회복을 위한 부양책 등 관련 모범 사례 공유 등 코로나19 대응의 기본 협력 방향이 포함되었다.

이후 APEC 통상장관들은 7월 25일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APEC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하였다. 동 선언문에는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및 무역원활화 약속,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방안 논의, 역내 회원국들의 코로나 19 관련 대응정책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플랫폼 설립 논의, WTO 다자통상시스템 지지 및 Post-2020 Vision 도출을 위한 작업 가속화 등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을 위한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였으며, 우리측 제안이 통상장관 공동선언문에 반영되었다.

14) Bogor Goals : '20년까지 APEC 역내에서 관세·비관세·서비스무역·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할 것을 천명한 목표

15)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21개 APEC 회원국을 포괄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의 개념으로 '04년 APEC에서 처음 제시

16)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 : APEC 역내 인터넷·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분야(인프라, 규제협력, 데이터 이동, 전자상거래 등) 제시. '17년 채택

한편 회원국들은 코로나 19 공동대응을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무역투자 논의 진전 방안 및 포용성·디지털경제·혁신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11월 16일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하였다. 동 성명은 필수품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WTO 개혁 지지, 미래비전¹⁷⁾(APEC Post-2020 Vision) 채택 환영,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혁신을 위한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 촉진, 구조 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작성된 2020년 경제정책보고서 주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3. G20 무역·투자 논의 참여

다자통상협력과 사무관 최정연

G20(Group of 20) 국가로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G7),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BRICS),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MIKTA)와 EU,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하고 있다.

G20은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99년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창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및 대형금융기관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 및 국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한 이래 매년 G20 정상회의를 통한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G20 통상장관회의의 경우, 2011년(의장국: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 장관들에게 “다자무역체제의 도전과 기회를 파악하고 멕시코 정상회의 때 보고하라”는 지침에 합의함에 따라 다음 해인 2012년 멕시코에서 제1차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G20 무역투자실무그룹(TIWG: Trade and Investment Working Group)은 G20 통상장관회의의 선언문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G20 통상장관회의에서의 지시를 이행·점검하는 협의체로, G20 정상회의나 통상장관회의 개최 전 약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정상 및 각료급 주요 성과 등을 논의한다.

17)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1994)의 기한이 도래하자, 향후 20년간 2040년까지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

• 미래비전 핵심요소

- ① (무역투자) 지역경제통합,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달성, 구조 개혁 등
- ② (혁신·디지털 경제) 혁신기술개발 촉진, 디지털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 ③ (포용적·지속가능 성장) 질적 성장 추구,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대응

(1) 2019년도 주요활동(의장국: 일본)

2019년도에는 처음으로 G20 통상·디지털경제 합동 장관회의('19.6.8-9)가 개최되어 G20 회원국의 통상 분야 및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G20 통상·디지털경제 장관들은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신뢰에 기반 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WTO 전자상거래 협상,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하였다. 한편 G20 통상 장관들은 주요국간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WTO 개혁 논의 가속화를 촉구하면서 중요 통상 이슈에서의 공조 의지를 다졌다.

(2) 2020년도 주요활동(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2020년도에는 연 1차례 개최되는 정례 통상장관회의('20.9.22) 외에도 코로나19의 무역·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특별통상장관회의('20.3.30, '20.5.14)가 두 차례 추가로 개최되었다. G20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에도 자유로운 무역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인력이동 촉진, 물류 연결성 강화, 전자적 방식을 통한 통관 원활화, 다자무역체제 지지 등 코로나19 영향 최소화에 관한 장·단기 행동계획 38개(G20 Actions to Support World Trade and Investment in Response to COVID-19)에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정례 의제들과 관련하여 WTO의 근본 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WTO 개혁 논의에 지지를 표명하는 'WTO의 미래에 관한 리야드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G20 지침, G20 회원국 경제 다변화 모범사례 공유, 투자유치 기술지원 관련 G20 성명 등에도 합의하면서 G20 회원국 간 무역·투자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역위원회 참여

다자통상협력과 주무관 오승교

(1) 개관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하고자 1961년에 설립되어 국제 경제 분야의 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3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매년 OECD 각료이사회와

무역위원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OECD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요 통상 이슈별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2) 각료이사회 무역세션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는 연 1회 개최되며, 세계 경제의 주요 동향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슬로바키아가 의장국을 맡아 5월 22~23일간 파리에서 개최하였다. 각료이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변혁의 이용(Harnessing Digital Trans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이라는 주제 하에 세계경제가 점차 디지털화해 가는 환경 아래서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과제를 해결하고 디지털화의 혜택을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 각료이사회 무역 세션에서는 디지털 시대 무역의 혜택을 실현하고 이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시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생활 보호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규범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020년에는 스페인이 의장국을 맡았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0월 28~29일간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각료이사회는 “강하고 회복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으로의 길(The Path to Recovery: Strong, Resilient, Green and Inclusive)”을 주제로 코로나19 위기 아래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경기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역세션에서는 회원국들이 ‘세계화와 경제회복에서 무역과 투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원국들은 무역이 경제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시장개방 유지·필수품 공급 원활화·필수인력 이동 허용의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의 무역·투자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무역세션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필수품에 대한 비관세조치 개선 등 무역촉진 조치 권장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디지털화된 혁신기업 모델 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 △국제무역에 대한 신뢰 회복 및 다자무역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WTO 개혁지지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3) 무역위원회

한편, 무역위원회와 무역위 산하 작업반 회의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회, 4회 개최되었다. 우리는 무역위와 산하 작업반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가치사슬, 서비스무역, 디지털

무역, 코로나19가 무역에 끼치는 영향, 청정기술 확산을 위한 무역의 역할 등 무역 자유화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무역위 작업반은 2020년말 기존의 국가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하였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OECD가 각국 서비스 시장의 규제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2007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4년 각료이사회 계기에 발표되었다. 2020년 우리나라 STRI는 22개 서비스 분야 중 컴퓨터, 보험, 창고물류 서비스 등 14개 분야에서 48개 조사대상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1.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개요 및 동향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에 따라 각국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이 증가해왔다. 수입규제 대표적인 형태인 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조금 부과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WTO 협정문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WTO 회원국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WTO 협정문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치 가능하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사용하고 있어 WTO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표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먼저, 수입규제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국가들의 수입규제 조치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수입규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6.4건에 이른다. 2020년에는 미국(7건)·인도(6건)·필리핀(4건)·호주(3건)·터키(3건)·태국(3건) 등 총 38건의 신규 제소가 발생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제소가 26건으로 전체 제소의 68%를 구성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1~3월 우리 기업에 대해 1건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작 되었으며, 3건의 반덤핑 조사가 새롭게 개시되었다.

〈표 4-1〉 최근 5년 對韓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현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1월~3월
					4건 (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1건)
45건	29건	25건	45건	38건	• (영국) 철강제품 :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1.1) • (터키) 열연강판 : 반덤핑 조사개시(1.9) • (EU) 고희수성 수지 : 반덤핑 조사개시(2.18) • (파키스탄) 냉간 압연 코일/스트립 : 반덤핑 조사개시(2.25)

출처: 무역협회

수입규제 형태별로는 2021년 4월 현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26개국 총 206건(규제중 162건, 조사중 44건)으로, 반덤핑조치가 154건, 상계관세 10건, 세이프가드조치가 42건이며, 수입규제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100건, 화학 43건, 플라스틱·고무·가죽 19건, 섬유 15건, 전자·전기 8건, 기타 21건이다.

〈표 4-2〉 對韓 수입규제 현황(2021년 4월 기준)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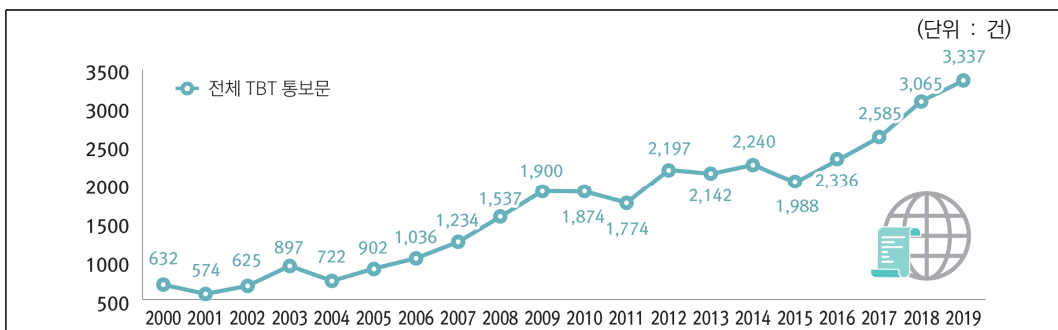
분류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EU	일본	영국	인도	터키	브라질	태국	인니	말련	기타	합계
규제중	40	16	12	5	7	2	1	14	13	7	5	6	3	31	162
조사중	4	0	0	3	1	1	0	8	3	0	4	4	1	15	44
합계	44	16	12	8	8	3	1	22	16	7	9	10	4	46	206

출처: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자 면담, 고위급 서한 및 정부 의견서 발송, WTO 정례회의 등 다양한 양자·다자 통상채널을 통해 상대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민관 합동 ‘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전략을 논의해왔다. 또한, 국제법상 위법한 수입규제의 경우 WTO에 제소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경우, WTO 회원국들의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TBT 위원회 통보 건수가 2006년 1,033건에서 2020년에는 3,354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신규 또는 시행 중인 기술규제가 실제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 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도 2020년 214건으로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외국의 비관세장벽은 기업들에게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상대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협상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개별 기업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기업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동향을 파악하고 민관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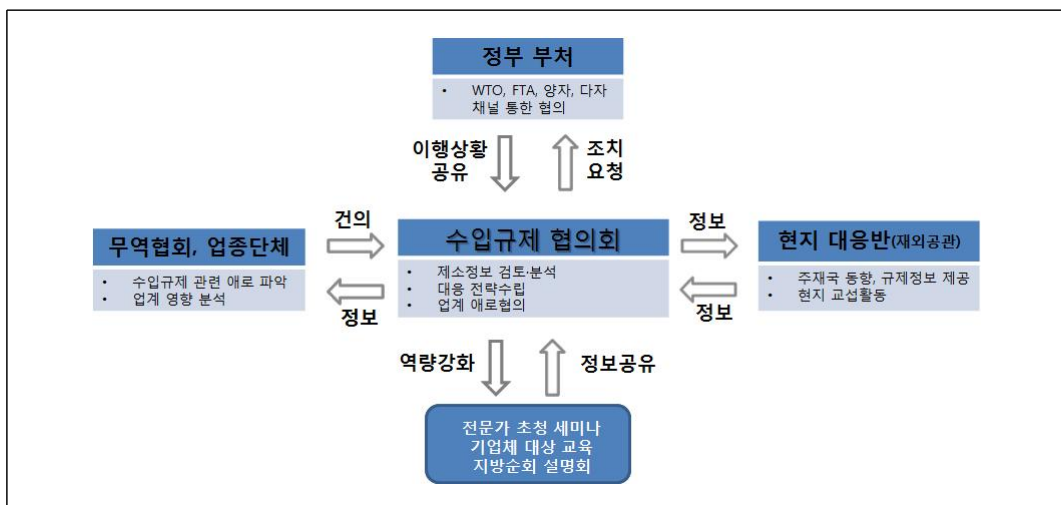


〈그림 4-1〉 WTO 회원국들의 TBT 통보 건수

2. 수입규제 대응

(1) 수입규제 대응체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9월 수입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수입 규제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외교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주요 업종단체 및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무역협회가 수입규제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규제협의회 산하에 지역별·품목별로 분과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4-2〉 수입규제 대응 종합 체계도

(1) 수입규제 대응 현황

첫째, 수입규제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주요 현안에 대응해왔다.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등 철강 분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업계 및 협회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 하였다. 동 협의회를 통해 초기단계부터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공관,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EU 주요인사들 면담 계기에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 협의회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주요 수입규제 주요 제소국인 미국의 조치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동남아 등 주요 신흥국의 규제 동향도 점검하고 대응사례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한국제품에 불리한 가용정보(AFA)·특정 시장상황(PMS)를 적용한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하여 덤핑·상계관세를 산정

*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 특정국가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출한 제조회가를 신뢰할 수 없어 조사당국이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

셋째, 수입규제의 경우 조치상대국 정부에 의해 취해지는 것으로, 조치상대국과의 양자 면담, FTA공동위 및 무역구제위원회 등에서 수입규제를 제기하고, 고위급 서한 발송, 조치국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반덤핑위원회·보조금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의 부당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넷째, 수입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입규제 조치에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WTO 관련 협정 및 상대국의 관련 법제도 등 법률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치 상대국 정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정확한 정보를 담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전문가 고용 비용과 대응자료 준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문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전문가들과의 자문을 주선·지원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45건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표 4-3〉 규제형태별·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2021년 4월 기준)

국 가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계
북미 (2개국)	캐나다	11	1		12
	미국	34 (3)	8 (1)	2	44 (4)
중남미 (5개국)	아르헨티나	3			3
	브라질	7			7
	콜롬비아	1			1
	코스타리카			1	1
	멕시코	4 (1)			4 (1)
아시아 (10개국)	중 국	15		1	16
	인도네시아	4 (2)		6 (2)	10 (4)
	인 도	18 (6)	1 (1)	3 (1)	22 (8)
	일 본	3 (1)			3 (1)
	말레이시아	4 (1)			4 (1)
	필리핀			5 (5)	5 (5)
	파키스탄	7 (2)			7 (2)
	태 국	8 (3)		1 (1)	9 (4)
	대 만	3			3
	베트남	3 (1)		2	5 (1)

국 가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계
아프리카 (3개국)	이집트	1		2 (1)	3 (1)
	마다가스카르			2 (1)	2 (1)
	남아프리카공화국	1		4 (2)	5 (2)
유럽 (3개국)	E U	7 (1)		1	8 (1)
	영국			1	1
	우크라이나			3 (1)	3 (1)
대양주 (1개국)	호 주	8 (3)			8 (3)
중동 (2개국)	GCC	1		3 (1)	4 (1)
	터 키	11 (2)		5 (1)	16 (3)
총계 (26개국)		154 (26)	10 (2)	42 (16)	206 (44)

* ()내 표시부분은 조사 중인 건을 나타냄

* 상기 수치는 조사 중인 건()내 표시부분을 포함한 수치임

〈표 4-4〉 품목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2021년 4월 기준)

국 가		철강/금속	전기전자	화학제품	섬유류	기타	총계
북미 (2개국)	캐나다	11	1				12
	미 국	31 (2)	3	2	3	5 (2)	44 (4)
중남미 (5개국)	아르헨티나		1	1		1	3
	브라질	2			2	3	7
	콜롬비아			1			1
	코스타리카					1	1
	멕시코	3		1 (1)			4 (1)
아시아 (10개국)	중 국	2	1	9	1	3	16
	인도네시아	3		2 (2)	2	3 (2)	10 (4)
	인 도	4 (1)	1	10 (6)	1	6 (1)	22 (8)
	일 본	1		2 (1)			3 (1)
	말레이시아	3		1 (1)			4 (1)
	필리핀	2 (2)		2 (2)		1 (1)	5 (5)
	파키스탄	1 (1)		3 (1)		3	7 (2)
	태 국	8 (3)				1 (1)	9 (4)
	대 만	3					3
아프리카 (3개국)	베트남	3		1		1 (1)	5 (1)
	이집트	2 (1)		1			3 (1)
	마다가스카르					2 (1)	2 (1)
유럽 (3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4 (2)				1	5 (2)
	EU	4		1	1 (1)	2	8 (1)
	영국	1					1
대양주 (1개국)	우크라이나			1		2 (1)	3 (1)
	호 주	7 (3)				1	8 (3)
중동 (2개국)	GCC	2 (1)	1	1			4 (1)
	터 키	3 (2)		4	5 (1)	4	16 (3)
총 계 (26개국)		100 (18)	8 (0)	43 (14)	15 (2)	40 (10)	206 (44)

* ()내 표시부분은 조사 중인 건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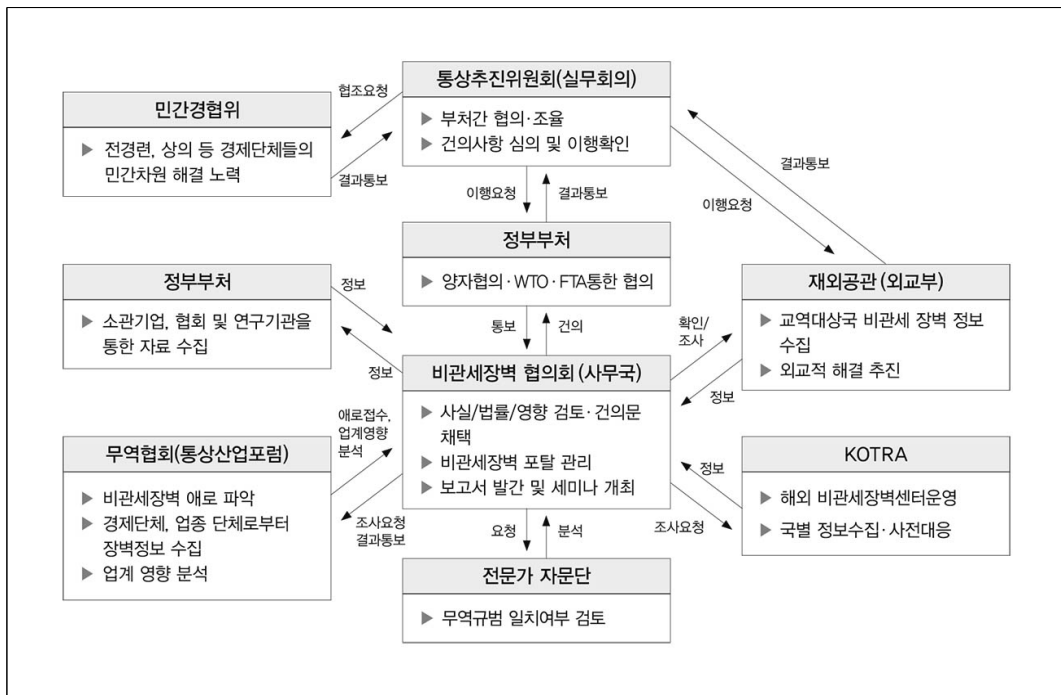
* 상기 수치는 조사 중인 건을 포함한 수치임

* 기타 : 제지, 생활용품, 농산물, 기계류 및 잡제품

3. 비관세장벽 대응

(1)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2013년 9월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하여 비관세장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 대응체계로서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동 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업종별 협단체·무역협회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분석·평가하고, 대응이 필요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선별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논의한다.



〈그림 4-3〉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2013년 11월 제1차 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23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우리 기업 애로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협의회 설치 이후 국내(관계부처 등), 현지(공관·무역관)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의 조미김 위생기준 완화, 강제성제품인증(CCC) 상호인증 품목 확대, 삼계탕 수출 개시, 화장품 오버라벨링 금지규정 철회 / 인도의 2차전지 관련 셀단위 인증마킹 의무 철회 등 주요 비관세장벽 개선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 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과장급)을 지정하여 소관 비관세장벽 동향 모니터링 및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을 강화 하였고, 제도상 애로 해소 건에 대하여 6개월 가량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해소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

첫째, 정부부처, KOTRA, 재외공관 및 무역협회 등을 통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 조치 사례를 발굴하고, 수집된 사례를 정리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과 공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EAEU, MERCOSUR, 중국, ASEAN, 인도, 멕시코 등 6개 지역 26개 무역관에서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 사례를 발굴하여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 전문가 검토를 완료 하였으며, 정부 대응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둘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먼저 한중 FTA, 한미 FTA 등 기 체결한 FTA 이행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부처별 양자협약체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를 의제화하고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기준 (SPS), 서비스 투자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위원회가 운영 중이고,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포함하여 15개 위원회 및 5개 작업반 등 이행채널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한편, WTO TBT위원회·SPS 위원회 등 다자 채널을 통해서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셋째, 정보·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도 지원하고 있다.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의 경우 우리 기업이 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5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비 관세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 내에 ‘비관세조치 DB’를 구축하여 현재 16개 국가, 20개 품목, 12개 비관세조치 유형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 3 절 WTO 통상분쟁 대응

1. WTO 통상분쟁 개요 및 동향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조무경

WTO 설립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DSU)는 분쟁해결기구, 패널 및 상소기구의 운영, 판정·권고 이행·감독, 불이행에 따른 양허정지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DSU에 따라 패널 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판정·권고 이행·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WTO 회원국은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한 다른 회원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600여건의 분쟁이 제기되었고, 이 중 우리나라가 다른 회원국을 제소한 분쟁은 21건이며, 우리나라가 제소를 당한 분쟁은 19건이다.

정부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WTO 협정 위반 조치를 시정하고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우리나라 통상분쟁 대응 현황¹⁸⁾

(1) WTO 한·미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분쟁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박근형

2012년 12월 19일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덤핑마진 및 보조금 확정 판정을 하였고, 2013년 1월 23일 미국 무역위원회(ITC)도 우리기업의 세탁기로 인해 미국 세탁기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관세(9.29%~13.02%) 및 상계관세(1.85%)가 부과되었다. 이에 우리 업체는 우리 정부에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조치를 WTO에 제소해 달라 요청하였다.

18) WTO 한·일 수출규제 분쟁과 관련한 사항은 제10장 (일본 수출통제 대응) 참조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WTO 제소 방침을 결정하고, 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2013년 8월 29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미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하였다. 2013년 10월 3일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통해 상기 반덤핑·상계관세조치를 조속히 철폐해 줄 것을 미측에 요청하였으나, 미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2013년 12월 5일 WTO 분쟁해결 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2014년 1월 22일 패널이 설치되었다.

2015년 11월 13일 패널은 반덤핑 관련 쟁점에서는 우리측이 대부분 승소, 보조금 분야에서는 우리측이 일부 패소한 내용의 패널보고서를 한·미 양국에 배포하였다. 한, 미 양국의 상소로 진행된 WTO 상소심에서도 우리측은 2016년 9월 7일 기존의 패소한 쟁점까지 승리하는 등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동 WTO 판정은 그간 미국측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 온 소위 제로잉 기법이 WTO 협정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표적덤핑을 적용하는 미국측의 조사방법론 역시 WTO 협정에 위반됨을 판정한 것으로서, 향후 세타키는 물론 여타 제품에서의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게는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행 기한(2017년 12월 26일) 내에 이행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8년 1월 22일 WTO 협정상 권한에 따라 미국 수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허(연간 7.11억불)정지를 WTO에 요청하였다. 미국측은 우리나라가 요청한 양허정지의 수준에 대해 이익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허정지 수준의 타당성을 다투는 중재절차가 진행되었다. 2019년 2월 9일 중재 재판부는 미국의 해당 WTO 판정 불이행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841만 달러로 판정하였다.

(2) WTO 한·일 수산물 분쟁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김효중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일부가 폭발하며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를 채택하였다. 2013년 8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한층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채택하였다. 일본은 우리의 일본산 수입식품 수입 규제 조치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2015년 5월 21일 우리를 WTO에 제소하였다.

2015년 6월 24일~25일 한·일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를 진행하였다. 양자협약에서 우리는 우리 조치의 합법성과 정상성을 설명하였으나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 한 채 회의가 종료되었다. 2015년 8월 20일 일본은 WTO 사무국에 패널설치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DSU 절차에 따라 2015년 9월 28일 개최된 DSB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되었다. 우리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를 섭외하고 분쟁대응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나 2018년 2월 패널보고서 최종 발표 결과, 주요쟁점에서 패소하였다.

2018년 4월 9일 우리는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역시 2018년 4월 16일 역상소를 제기하여 1년 여 동안 상소 절차가 진행되었다. 상소심에서 우리는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력과 과학적 전문가, 법률적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패널측 심리 범위 위반 및 법리 해석 오류를 효과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고 2019년 4월 11일 상소심 판정의 주요 쟁점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승소 결과 우리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변함 없이 유지하여 현재까지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고 있다.

(3) WTO 한·일 공기압 전송용 밸브 분쟁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박근형

2015년 1월 20일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권고하였고, 2015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는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2016년 3월 15일 일본은 우리 정부의 반덤핑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고,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 및 WTO 사무국에 전달하였다.

2016년 4월 우리 정부는 한·일간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조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설명하였으나 양측은 상호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회의가 종료되었다. 2016년 6월 9일 일본은 WTO 분쟁해결 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7월 4일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후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였다.

2018년 4월 12일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전체 WTO 회원국에 회람되었으며, 판정결과 우리 나라가 대부분의 주요쟁점에서 승소하였다. 이에 일본측은 5월 28일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를 제기 하였으며, 1년여 간에 걸쳐 상소 절차가 진행되었다. 2019년 9월 10일 상소기구 최종판정이 회람되었으며, 판정결과 상소기구는 13개의 쟁점 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함에 따라 기존의 우리나라 승소 판정이 유지되었다. 9월 30일 WTO 분쟁해결기구 (DSB)는 정례회의에서 우리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였다.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쟁점에서 승소하긴 하였으나, WTO 상소기구가 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 방법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함에 따라 우리 무역위원회는 이행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상기 이행을 위해 추가 조사·분석 및 조치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5월 21일에 WTO 판정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이행을 완료한 결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5년간('15.8.19-'20.8.18) 부과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바, 5년의 기간이 만료된 2020년 8월 19일에 일몰종료되었다.

(4) WTO 한·미 불리한 가용정보 분쟁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박근형

미국이 2015년 제정한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은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시 조사대상 업체가 최선을 다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업체에게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업체가 필요 정보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조사당국이 2차적인 출처로부터 얻은 가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WTO 반덤핑협정상의 관련규정에 비해 조사당국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한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반덤핑·보조금조사, 대용량 변압기 2차 내지 4차 반덤핑 연례재심시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하여 9.49~60.81%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미국의 이러한 관행이 계속됨에 따라 WTO 제소방침을 결정하고, 2018년 2월 14일 WTO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양자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4월 16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였으며, 5월 28일에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후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측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됨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였다.

2021년 1월 21일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전체 WTO 회원국에 회람되었으며, 판정결과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쟁점에서 승소하였다. 구체적으로 패널은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하였다. 다만, 미국의 AFA 제도 그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미측은 상기 패널판정에 대해 불복하여 2021년 3월 19일에 상소하였다.

(5) WTO 한·미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분쟁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박근형

2018년 1월 22일 미국은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동 조치는 2월 7일 발효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었다. 세탁기 제품의 경우 20%~50%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태양광 제품의 경우 최대 3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2018년 5월 14일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의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양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8월 14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였으며, 9월 26일에 패널이 설치되었다.

현재 패널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됨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 대응 중에 있다.

(6) WTO 한·일 스테인리스 스틸바 분쟁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조무경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일본, 인도, 스페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에 대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무역 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부과 중인 관세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3차 재심을 2016년 6월 개시해 2017년 3월에 관세부과 유지 필요성을 판정했다.

2018년 6월 18일 일본은 무역위의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2018년 8월 13일 개최된 양자협의를 통해 해당 반덤핑조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양측간 입장차로 인해 일본은 2018년 9월 13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청했고 2018년 10월 29일 패널이 설치되었다.

2020년 11월 30일 회람된 패널보고서에서 패널은 일측 제소장에 실제로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으나, 일측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재구성하여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그 외에도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부는 2021년 1월 22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정부는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일본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절차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7) WTO 한·일 조선보조금 분쟁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최우진

2018년 11월 6일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며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 및 WTO 사무국에 전달하였다. 특히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대우·성동·STX조선의 구조조정,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이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12월 19일 우리 정부는 일본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양측은 상호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회의를 종료되었으며, 일본은 동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일본이 패널 설치 요청을 보류하고 1년여 기간이 지난 2020년 1월 31일, 일본은 2018년 1차 제소에 제기했던 사항에 더해 제소 이후 이루어진 우리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로 제기하며 새롭게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하였다.

2020년 3월 30일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2차 양자협의를 통해 일측의 문제제기가 근거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측이 문제시한 금융거래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측이 우리 조치의 철회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함에 따라, 양국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양자 협의가 종료되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제1절 수출입 동향 및 성과

1. 주요 특징 및 성과

수출입과 사무관 이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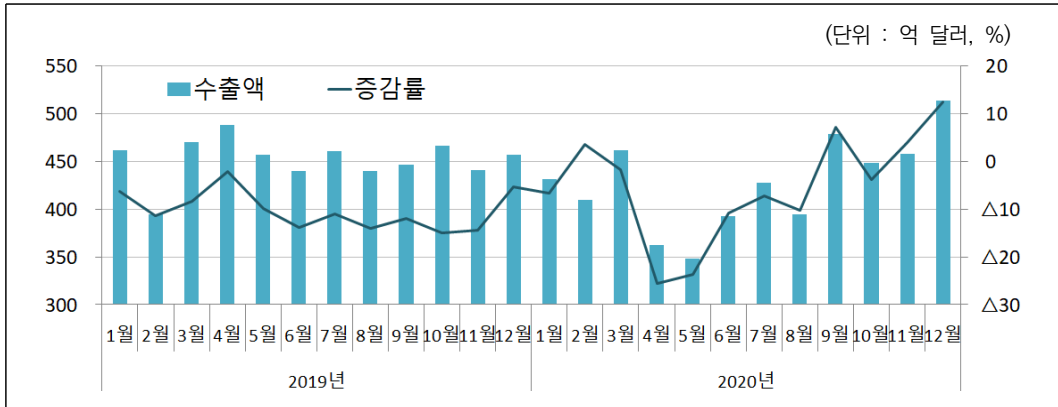
최근 우리 수출은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강국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1) 2019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

2019년은 미중 무역분쟁, EU 브렉시트 등 세계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확대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도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2018년 슈퍼호황을 맞아 우리 수출 성장을 견인하였던 반도체가 2019년에는 단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며 하락세를 이어간 점도 우리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한 5,422억 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하였으며, 교역규모는 8.3% 감소한 1조 456억 달러로 3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2)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급감한 이후 빠른 회복세

2020년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글로벌 교역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도 4월부터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2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3% 감소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차츰 회복하기 시작하며 9월에는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12월에는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 결과 2020년 수출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5,125억 달러로 세계 7위를 유지하였으며, 2021년 초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 5-1〉 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

2. 품목·지역별 동향

수출입과 사무관 이영석

최근 보호무역주의,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 품목들은 각기 다른 영향을 받으며 희비가 엇갈렸다. 또한 방역 상황과 경기 회복세에 따라 지역별 수출도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1) 품목별 동향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2019년 들어 단가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반등하였다. SSD가 포함된 컴퓨터도 2019년엔 부진하였으나, 2020년 50%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수출 순위가 두 단계 상승하였다. 바이오헬스는 진단키트 등 K-방역 위상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불을 돌파하면서 상위 10대 품목에 진입하였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한 이차전지와, 홈코노미 호재를 맞은 가전도 플러스 성장하면서 우리 수출 부진을 만회하였다.

〈표 5-1〉 15대 주요 품목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9년					2020년				
순 위	수출액	증감률	비 중		순 위	수출액	증감률	비 중	
1	반도체	939	△25.9	17.3	1	반도체	992	5.6	19.4
2	일반기계	526	△1.9	9.7	2	일반기계	479	△8.9	9.3
3	자동차	430	5.3	7.9	3	자동차	374	△13.1	7.3
4	석유화학	426	△14.8	7.9	4	석유화학	356	△16.4	6.9
5	석유제품	407	△12.2	7.5	5	철 강	266	△14.5	5.2
6	철 강	310	△8.6	5.7	6	석유제품	242	△40.6	4.7
7	자동차부품	225	△2.5	4.2	7	선 박	197	△2.0	3.9
8	디스플레이	205	△17.0	3.8	8	자동차부품	186	△17.3	3.6
9	선 박	202	△5.2	3.7	9	디스플레이	180	△12.2	3.5
10	무선통신	141	△17.6	2.6	10	바이오헬스	141	54.4	2.7
11	섬 유	130	△8.0	2.4	11	컴퓨터	134	57.2	2.6
12	바이오헬스	91	6.0	1.7	12	무선통신	132	△6.4	2.6
13	컴퓨터	85	△20.6	1.6	13	섬 유	112	△13.3	2.2
14	이차전지	74	2.6	1.4	14	이차전지	75	1.3	1.5
15	가 전	70	△3.6	1.3	15	가 전	70	0.5	1.4
15대 합계		4,261	△12.2	78.6	15대 합계		3,936	△7.6	76.8
기타 품목		1,162	△2.7	21.4	기타 품목		1,189	2.4	23.2
총 계		5,422	△10.4	100.0	총 계		5,125	△5.5	100.0

일반기계는 2대 수출 품목 지위를 지켰으나 글로벌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자동차는 전기차·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2019년 수출이 성장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이동제한 조치 여파로 2020년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하였다. 유가 급락의 영향을 받아 2020년 2분기 함께 부진하였던 석유화학, 석유제품은 회복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석유화학은 포장재 수요 확대에 힘입어 하반기 반등한 반면, 석유제품은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연간 수출이 40% 이상 감소하여 5대 수출 품목 지위를 철강에 내주었다.

(2) 지역별 동향

9대 주요 지역의 수출 순위는 2019~2020년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나,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4대 지역(중국, 아세안, 미국, EU)이 코로나19 국면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수출의 버팀목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경기 회복을 이뤄낸 덕분에 對중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하였으며, 수출 비중도 0.8%p 확대되었다. 미국은 반도체 등 수출 확대에 힘입어

주요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EU도 바이오헬스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돌파하였다. 그 밖에 일본, 중남미, 중동 등 지역으로의 수출은 두 자릿수 대 감소하며 수출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다.

〈표 5-2〉 9대 주요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9년					2020년				
순 위	수출액	증감률	비 중		순 위	수출액	증감률	비 중	
1	중 국	1,362	△16.0	25.1	1	중 국	1,326	△2.7	25.9
2	아세안	951	△5.0	17.5	2	아세안	890	△6.4	17.4
3	미 국	733	0.9	13.5	3	미 국	741	1.1	14.5
4	EU(28)	528	△8.5	9.7	4	EU(28)	520	△1.5	10.1
5	일 본	284	△6.9	5.2	5	일 본	251	△11.7	4.9
6	중남미	263	△5.2	4.9	6	중남미	195	△26.0	3.8
7	중 동	177	△18.6	3.3	7	중 동	147	△16.9	2.9
8	인 도	151	△3.3	2.8	8	인 도	119	△20.9	2.3
9	C I S	135	23.9	2.5	9	C I S	114	△15.3	2.2
9대 합계		4,529	△8.1	83.5	9대 합계		4,303	△5.0	84.0
기타 지역		893	△20.3	16.5	기타 지역		822	△8.0	16.0
총 계		5,422	△10.4	100.0	총 계		5,125	△5.5	100.0

제 2 절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1. 범정부 총력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무역정책과 서기관 김남혁
사무관 안진호
사무관 허정민

(1) 범정부 총력지원체계 구축기('19.1~'20.1)

2018년 사상 첫 수출 6천억불 달성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마이너스 증감률(전년동기 대비)을 기록하기 시작하며 2020년 1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미·중 통상분쟁, 노딜 브렉시트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반도체 시장 악화, 국제 유가 하락 등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대외 수출여건 하에서 정부, 수출지원기관 및 수출업계가 함께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출범('19.1.21) 시켰다. 동 회의체는 산업부 장관과 무역협회 회장이 공동 주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범정부 수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수출활력촉진단('19.1.31)', '수출통상대응반('19.2.11)'을 차례로 출범시키며 수출애로의 현장 해결을 추진하고 수출상황과 통상현안을 상시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원 등 단기적 대책과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와 체질 강화를 위해 수출 품목·시장·기업을 혁신하는 중장기 전략을 포함하여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19.3.4) 하였다. 이후, 수출마케팅, 중소·벤처기업 수출, 소비재 수출, 수출시장구조 혁신, 디지털 무역기반 강화 등 5건의 수출 대책을 추가로 수립함으로써 2020년 2월, 15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맞이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5-3〉 2019년 주요 수출대책 수립 현황

연번	시기	정책명	비 고
1	3월	수출활력 제고 대책	경제활력대책회의
2	4월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방안	무역전략조정회의
3	5월	중소·벤처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방안	경제활력대책회의
4	6월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경제활력대책회의
5	9월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경제활력대책회의
6	10월	디지털 무역기반 강화방안	경제활력대책회의

(2)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본격 운영('20.2~)

2020년 2월, 15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였으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며 무역위기가 다시 찾아 왔다. 이에, 산업부 장관 주재로 '수출상황 점검회의('20.2.3)'를 긴급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중(對中) 수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공동 주재)를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로 격상하여 단순 수출 대응 뿐 아니라 국가전략 관점에서 정책 대응을 보장해 나갔다. '제1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20.2.20)'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대책 뿐 아니라, 향후 3~5년을 대비한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2030 세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장기 무역구조 혁신 전략까지 제시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3월부터는 다시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에,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R&D 부담경감 등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에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지역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면한 수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20.6.10)'를 개최하여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수출은 9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였고, 10월에는 일평균 기준으로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하였다. 정부는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2011년 1조불 진입 후 10년간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무역규모를 2030년까지 2조불로 확대하기 위한 무역구조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을 마련하여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20.11.12)'를 통해 발표하였다.

〈표 5-4〉 2020년 주요 수출대책 수립 현황

연번	시기	정책명	비 고
1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수출입 영향 및 대응방안	수출상황점검회의
2	2월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3	4월	수출 활력 제고방안	비상경제회의
4	6월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5	6월	코로나19 대응 수출확대를 위한 전산업 활력제고 방안(서면)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6	8월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7	11월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8	11월	FTA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2. 무역금융 지원 강화

수출입과 사무관 권정희

무역보험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해 무역·해외투자 등 모든 대외거래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대표적인 정책보험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 1만개사에 총 37.4조원 무역금융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기업이 빠르게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20년 우리 기업의 수출 회복을 적극 지원하였다.

(1)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신시장 및 新산업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9.6조원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기업도 '19년 20,060개사에서 '20년 28,931개사로 대폭 증가하여 '92년 무역금융 지원 이래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표 5-5〉 무역보험 지원실적

(단위 : 조원, 개사)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무역보험 총 지원실적	148.6	155.8	165.1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	51.9	56.2	59.6
중소중견기업 지원기업수	16,770	20,060	28,931

특히, 중동·중남미 등 新시장에 진출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한 보험상품 운영, 중소기업이 상품 수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기 전에 수출채권을 시중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2)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금융 총력 지원

'20년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 해외 진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기업 1만개사에 총 37.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총력 지원하였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수출회복 총력 경주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우리 수출기업에 3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만기연장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에 무상으로 위험담보 기간을 추가 제공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재무상황이 어려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3.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대외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은 '19년 156조원에서 '20년 165조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이로써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20년 우리 기업의 수출 회복을 적극 지원하였다.

3. 수출입 물류 종합지원

무역정책과 사무관 양재원

(1) 수출입물류 대책반 가동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제 여객 항공편 중단으로 벨리카고(여객기 내 여객 수하물 적재 후 잔여 공간에 싣는 항공 운송용 화물) 공급 감소로 항공화물 공간확보 문제, 비용부담에 수출입 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였다. 이에,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항공협회, 선주협회 등 민간 협단체가 모여 「수출입물류 대책반」을 구성('20.4.24)하여 현장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 즉시대응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유류 여객기를 활용하여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특별 전세기 2대를 긴급 편성('20.4.29)하고 항공화물 운송을 지원한 조치는 항공물류에 숨통을 틔워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일본과 독일에 2차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20.5.29)하여 수출기업의 현장 물류애로를 해소하였다.

(2)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설치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회복세를 이어나가던 수출은 '20.9월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였으나, 미주항로를 중심으로 해상운임 상승과 선박(船腹, 여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을 싣도록 구획된 장소) 부족 등의 해상물류 애로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11월부터는 유럽·동남아 등 타 항로도 확대되었다.

이에,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를 비롯해 무역협회, 해운협회, HMM,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운영('20.12.3) 하였다. 이를 통해,

선복 및 공(空) 컨테이너 수급, 운임변동 추세 등 수출입물류 동향을 파악하고, 선복 추가공급, 중소화주 전용(專用) 선복량 배정, 항만사용료 감면 등의 선사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 대책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화주 물류애로 접수와 해결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4. 전시산업 위기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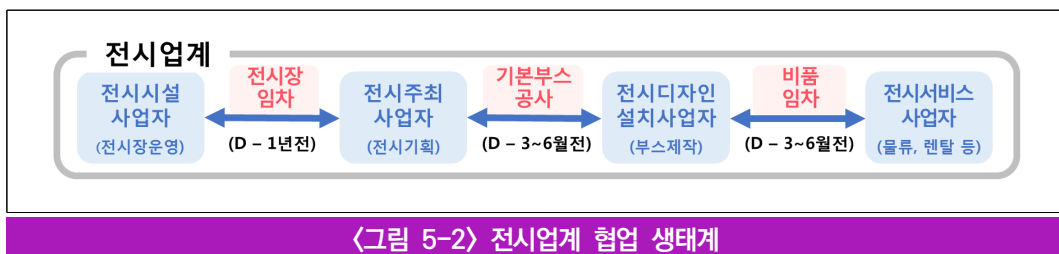
무역진흥과 사무관 윤한성

(1) 국내 전시산업 현황

전시산업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무역 인프라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혁신의 창구이며, 호텔·관광·외식·쇼핑·항공 등 다른 산업분야와도 연결되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19년기준 국내 전시산업 사업자 수는 약 2,988개사로, 매출액은 약 4.4조원, 종사자 수는 약 2.2만명 규모이고, 코엑스, 킨텍스 등 15개 전시시설 사업자이외의 사업자 대부분은 매출액 10억원, 종사자 10인 이하로 아직 영세한 상황이다.

전시사업자는 주최사업자, 시설사업자(전시시설 건립, 운영), 디자인설치사업자(부스 등 장치 디자인, 설치), 서비스사업자(물류 등 용역제공) 등으로 이루어지고, 전시장 임차계약이후부터 전시회 개최시까지 장기간 연쇄적으로 협업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전시산업 피해현황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년 2월이후 각종 전시회가 중단됨에 따라, 전시업계는 전시회 취소로 인한 위약금, 매물 비용 등 피해가 누적되고 일감 및 자금 부족 등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과 함께 5.8일 국내 전시회가 부분적으로 재개(MBC건축박람회, 킨텍스)되면서 국내 전시업계는 일시적으로 회복 분위기로 접어들었으나,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 방역당국의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시행(8.19~10.11) 등으로 전시회는 다시 중단되었다.

10.15일 ‘부산코리아빌드’(부산 벡스코)를 시작으로 전시회가 재개되고, 1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방역 최고단계(3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전시회 개최가 허용되었으나, 연말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상당수의 전시회가 다시 취소된 바 있다.

이와 같이, '20년 상반기 코로나 확산, 하반기 재확산으로 '20년에 예정된 총 537건의 전시회중 249건이 취소되어 288건만 개최되었으며('19년 650건의 44% 수준), 개최된 경우에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된 규모로 개최되었다.

업계에서는 전시회 취소로 인한 피해 규모를 매출 감소 등 약 1.7조원으로 추산(전시산업진흥회)하고 있으며, 전시회 개최 규모 축소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감안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국내 전시산업 주요 피해지원 현황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시회 취소·연기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고 있는 전시업계에 대해 금융, 고용, 세정·세제, 3차 추경 지원 등 단기 애로 해소와 전시회 개최를 통한 위기 극복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왔다.

① 전시회 취소·연기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전시사업자의 유동성 확보 중점 지원 (제1차 확대무역전략회의, '20.2)

전시 주최자이외에 시설, 디자인설치, 서비스 사업자도 종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추가하고, 은행권 대출연장, 신·기보 보증 등 긴급자금 지원을 실시('20.2~)한 바 있으며, 전시사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유예 지원, 전시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한시 경감(사례 : 코엑스 15%) 등도 지원하였다.

② 국내 전시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용 유지, 전시회 개최 정상화, 추경 등 전방위 지원 추진 (제2차 확대무역전략회의(전시산업활력제고방안), '20.6)

전시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20.4.27~'22.3.31)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전시회 방역관리지침 수립(중대본, '20.7월)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3.8억 매칭지원) 등을 통해 전시회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연기된 전시회의 피해 지원차원에서 참가부스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59.9억원, 부스 참가비 일부(30%)지원)함으로써, 주최자이외에 디자인설치, 서비스 사업자 등에도 지원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총 91개 전시회, 6,421개사의 12,125개 부스유치 지원).

③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20.8.19~10.11) 시행 등으로 또다시 위기에 직면한 전시산업 긴급 지원(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20.9)

전시산업지원사업 본예산(24.4억원)의 지원 범위를 “해외바이어 유치 비용”에서 “임차료·홍보비·장치비 등 개최 비용”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시장과 주최사간 위약금 문제가 지자체·협회 주도하에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중재하였다.

또한, 집합금지 조치로 업계 피해가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고단계(3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전시회 개최가 허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하였다('20.11.1, 중수본과 협의).

〈표 5-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단계 기준 및 적용사항('2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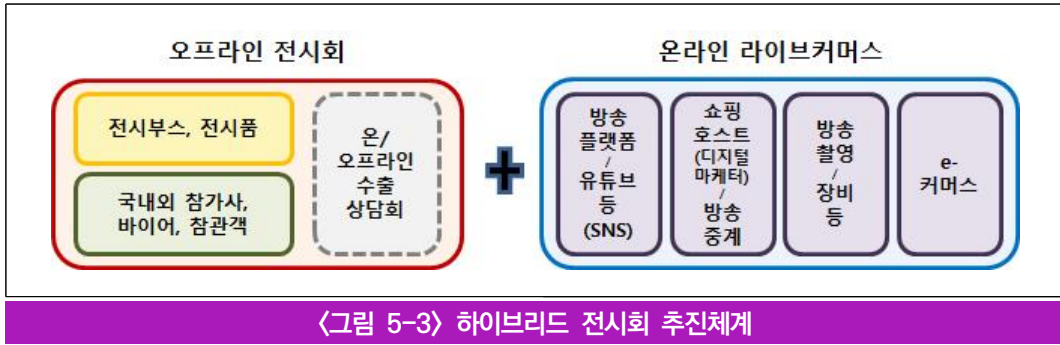
체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지표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1.5기준 2배 이상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전시회	개최 가능	4㎡당 1명 제한시 가능		16㎡당 1명 제한시 가능	10인 이상 금지

(4) 향후 대응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속에서 지속가능한 전시회 개최 여건을 만들어 국내 전시회의 정상 개최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능한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의 하이브리드 전시회(온라인 쇼핑플랫폼기반 라이브커머스* 등)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전시장에 상품 등을 전시한 후 온라인 상으로 실시간 영상 등을 중계, 홍보, 거래



또한, 방역 등 높아진 ‘K-브랜드’ 위상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위주로 코로나 진정국가에서 전시회(해외특별전 등)를 개최하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지 통역원 등이 출입국이 제한된 참가기업을 대행(비대면)하여 전시품을 홍보·마케팅하는 새로운 전시모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전시회 기획, 화상상담 지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 신설 통해 국내 전시사업자의 비대면 환경 대응역량도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무역규모(약 1조원), ICT·반도체·자동차 등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전국적인 전시 인프라, 한류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갖추고 있어 미래 전시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킨텍스 3전시장(7만m²), 잠실 제2코엑스(10만m²) 등 수도권 대규모 전시장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글로벌 Top tier급 전시회를 육성하고, 컨팩스(Confex, 전시회 + 컨퍼런스), O2O(Online to Offline) 모델, 전시회와 문화·관광간 융합, 지역특화 전시회 확산 등을 통해 국내 전시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 3 절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1. 무역 디지털 전환

무역진흥과 사무관 이민호

온라인·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및 데이터 활용역량 중심으로 무역의 비교우위가 전환되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하는 온라인 거래를 뒷받침할 물류 등 온·오프라인 간 연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우리 무역의 디지털 전환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비용의 획기적 감소, 무역거래의 지능화, 서비스·디지털 상품 등 수출품목 다변화, 온라인 시장개척 등을 위한 ‘무역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다.

(1) 한국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분야 3대 B2B 플랫폼의 강점을 기능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공유하고 공동 수출마케팅을 전개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대 플랫폼의 기능적 연계를 추진하였다.

우선 3대 플랫폼 각각의 상품, 거래 정보를 고도화하고, 상담·계약, 결제, 물류 등 수출거래 전과정을 온라인화를 추진하였으며, 3대 플랫폼의 기능적 연계를 위해 각 플랫폼의 상품 정보 DB를 연계하여 통합포털화하고, 해외 바이어의 문의 정보도 연계하여 바이어는 3대 플랫폼 어디에 접속 하더라도, 3대 플랫폼을 한번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3대 플랫폼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입점기업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공동·브랜드·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아마존·알리바바 등 글로벌 B2B 플랫폼에 ‘3대 B2B 플랫폼 공동 한국관’을 구축하여 온라인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디지털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전시회 취소·연기, 국내 전시회 개최 제한 등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프리미엄 온라인 상설전시관을 구축하였다.

섬유, 바이오헬스, 전자·스마트홈, 로봇, 기계, 화학, 조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업종의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수출회복 총력 경주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상설전시관을 구축하였고, 지속적으로 서비스산업·식품·방산·환경·소방 등의 업종도 상설전시관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시관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능을 탑재하여 기업·상품·바이어 정보, 거래실적 등 데이터 축적과 AI 적용으로 시즌별 상품관리 지원, 최신 판매동향 등 지능형 정보를 제공한다.

(3) 중소·내수기업의 디지털 수출기업화 추진

수출기업의 획기적 양적 확대를 위해 국내외 수출·투자 네트워크를 총동원, 유망기업 대대적 발굴을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수출 희망기업의 수출 검토단계부터 역량진단, 컨설팅, 사업 신청 등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채널(「무역·투자 24」)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 강화 등 평가체계 개선으로 기업 글로벌화 역량을 상세 진단하고, 적합한 사업 정보제공 및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B2B 마케팅의 경우에는 수출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B2B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있으며, B2C 마케팅의 경우는 기업 역량에 따라 수출대행, 글로벌 플랫폼 입점, 자사 플랫폼 운영 등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쇼핑 이벤트를 활용한 기획전 및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한다.

(4) 수출지원체계를 디지털 무역체제로 전면 개편

수출지원 제도·사업 및 조직 전반을 디지털 무역에 맞춰 선제 개편하면서 '21년 까지 전자무역 기반을 보강하고, 무역지원 플랫폼들을 모두 온라인 연결할 계획이며, 비대면·온라인 수출 특성을 반영하여 통관절차, 표준·인증제도를 정립한다.

기업들이 손쉽게 화상상담·디지털 홍보 콘텐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용 화상상담장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통합관리 포털' 운영을 통해 수출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K-스튜디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 지원을 위해 기업별 현지 거래규모 등 데이터를 활용, 해외 거점별로 최적의 사전입고 수량을 先배송하고, 계약 성사 즉시 배송할 수 있는 아마존 풀필먼트 방식의 해외 거점별 무역 창고를 운영하고, 주요 항만별로 혁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체계 도입하는 등 국내 주요 물류 거점에 디지털·전자상거래 물류인프라 확충할 계획이다.

(5) 전자무역 기반 확충

무역정책과 사무관 양재원

산업부는 전자무역포털(www.utradehub.or.kr)을 통해 2006년부터 기업이 무역과정에서 다뤄야할 수출신용장 통지, 구매확인서 발급, 간접수출실적 증명 등을 은행, 수출유관기관과 중계하고 있다. 현재 83,916개 기업·수출 유관기관이 이용하고 있고, 연간 3억8천만건(614종)의 전자문서를 중계하고 있으며('20년 기준), 해당 포털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받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표 5-7〉 전자무역포털 서비스 내용

구 분	서비스 제공 내역
무역포털	수출입신용장, 수출환어음/외상수출채권매입/지급지시 등 대금결제, 수입화물선취보증(e-L/G),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등 외환업무 서비스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통지 통합 데이터 조회, 간접수출실적증명 온라인 서비스
내국신용장 통합서비스	내국신용장 전자 개설통지, 매입추심의내국신용장 통합 데이터 조회
수출입요건확인	무역업체와 요건확인기관 간에 발생하는 승인, 추천 등 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
FTA KOREA	원산지판정관리,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유통/보관, 컨설팅 지원 등
글로벌포털	해외 파트너사와의 전자문서 교환, 한-대만 전자 원산지증명 서비스
전자상거래 무역포털	전자상거래 판매 물품의 배송요청, 수출통관, 대금결제, 구매확인서 서비스
해상스케줄 화물 추적	uLogisHub연계한 해상화물 스케줄, 추적 조회 서비스
TradeFlow	수출입 기업의 C/I, P/L정보를 데이터화하여 포워드·관세사의 물류 및 통관업무에 활용

〈표 5-8〉 전자무역포털 전자문서 처리 건수

(처리건수 : 백만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78.5	289.6	338.2	384.4	375.8

산업부는 무역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무역업무 처리 지원을 위해 '19년부터 '21년까지 3년동안 약 130억원을 투입하여 전자무역포털(uTradeHub)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전자무역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에서 중소화주, 셀러가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7년 2.3조불, '19년 3.5조불에서 '23년 6.5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은 '19년 4.2조원, 948만건에서 '20년 6조원, 2,075만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고려하여 전자무역포털을 통해 '20년 4월부터 판매관리(주문정보, 상품정보 등), 수출입신고, 배송관리, 결제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또한, 수출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등 수출문서상의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고 데이터로 변환하여 화물예약, 내륙운송 의뢰, 수출신고 등의 후속업무 과정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 입력하는 노력과 시간을 절감토록 하였다. 그리고 문서 수신 알림·조회, 각종 원장 관리, 간접수출실적 증명 발급 신청 등이 가능한 모바일 앱을 개발한 한편, 스마트 HS코드 추천, 무역상담 챗봇 서비스(TradeBot) 기능도 제공 중이다.

'21년에는 추가적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업이 수출입물류 업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화물 운임비 견적에서 물류사(포워더사)가 진행중인 내륙운송 의뢰·계약, 운송 정보 조회와 화주가 의뢰한 수출화물의 내륙운송 과정상의 위치정보, 해운운송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 무역금융 구조 혁신

수출입과 사무관 권정희

무역보험은 대외 무역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손실 위험을 담보하는 기능과 함께,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사업 수주 지원, 수출물품 제작자금 조달 지원, 수출대금의 조기 현금화 등 수출계약 단계부터 제작 및 결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출 소과정에 대해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무역금융에 핀테크 및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20.12월 우리 수출기업이 모바일과 PC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상품을 출시하여, 공공부문 세계 최초로 디지털 무역보험 시대를 이끌고 있다.

(1) 수출 소과정에 대한 전주기적 무역금융 지원체계 구축

'19.3월 수출활력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수출계약-제작-결제 등 수출 소과정에 대한 전주기적 무역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출계약 단계에서는 신산업 분야에 진출한 우리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계약 이행 보증 지원을 확대하였고, 제작 단계에서는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수출물품 제작자금 조달을 지원하였으며, 결제 단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상품 수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기 전에 수출채권을 시중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여, 총 7,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였다.

특히, 수출대금을 시중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의 경우, 기존 각각의 수출거래 건마다 개별적으로 보증하는 방식을 벗어나, 수출기업이 추진 중인 다수의 수출거래 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증하여, 수출기업은 여러 개의 해외 진출사업에 대해 단 하나의 보증서로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2) 무역금융의 디지털혁신을 통한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 출시

조선업 분야에서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핀테크 및 빅데이터 기술을 무역금융에 접목하여, 모바일과 PC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상품을 '20년 12월에 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은 무역보험을 이용하고자 할 때, 기존과 같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대면신청이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3.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무역정책과 사무관 허정민

(1) 서비스 수출 현황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규모는 '19년에는 1,038억불이었으며, '20년에는 901억불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과거 운송, 건설업 중심이었으나 최근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수출 중 운송, 여행,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도 '06년 67.7%에서 '19년 55.5%, '20년 47.2%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통신·정보, 금융, 개인·문화의 비중은 '06년 7.8%에서 '19년 19.2%, '20년 22.5%로 급성장하고 있다.

(2) 6대 K-서비스 집중 육성

정부는 시장성, 우리기업의 경쟁력 및 해외진출 수요와 비대면서비스의 부상, 한류·K-방역 등 기회요인, 그리고 최근 서비스 무역 트렌드를 고려하여 ① 콘텐츠, ② 의료·헬스케어, ③ 에듀테크, ④ 디지털서비스, ⑤ 핀테크, ⑥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유망 6대 K-서비스를 선정

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20.8.13) 하였다.

동 대책을 통해, 이동제한 등에 따른 마케팅 제약 해소, 자금조달 기회 확대, 해외진출 여건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활용한 제조·서비스 통합 진출, 창업 단계부터 세계시장을 고려한 서비스벤처 등을 집중 육성하는 등 기업, 시장, 인프라 3대 지원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9년 서비스 수출 세계 16위에서 2025년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 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3) 서비스무역 통계 개발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과 달리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확한 수출입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동안은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집된 외환거래자료를 기반으로 국제수지(서비스수지) 형태로 전체 규모를 발표하고 있으나, 업종/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무역정책 활용을 위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확한 수출 규모와 추이, 주요 수출 국가 등을 상품무역 수출입 동향과 같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무역 통계 개발 연구와 관계부처/기관 협의를 착수('20.8월) 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 거래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안 마련을 착수('20.10월) 하였으며, '21년도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유망 소비재 수출 활성화

무역진흥과 사무관 김창연

'18년 5월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주력산업 중심 수출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우리수출의 지속성장 구조를 확립하고자 유망 소비재(화장품·의약품·생활용품·패션의류·농식품)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제공, 소비재와 예술작품의 협업을 통한 아트콜라보 등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新남방·新북방정책과 연계한 한류 유망지역의 소비재 수출확대를 위한 박람회도 매년 꾸준히 개최 하여 우리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과 新시장 개척을 지원해 오고 있다.

'19년 美·中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속에서도 한류확산, 중국·아세안·인도 등 신흥시장 중산층 인구 증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기회요인을 활용한 유망 소비재 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었고, 이와 관련한 우리 소비재 기업들의 해외진출 수요 또한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수출성장세를 시험하고 있는 5대 유망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19.6.12) 하였다.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은 '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불 달성 등 소비재 산업을 신수출유망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크게 세가지 전략을(11개 세부과제) 바탕으로 소비재의 수출 동력화를 추진한다. (1) 소비재에 특화된 금융, 마케팅, 전시회 등 지원을 강화하고, (2) 스토리·문화(한류)를 입히고 감성·디자인을 갖춘 프리미엄화를 지원하며, (3) 대내적으로 규제혁신, 대외적으로 비관세장벽을 적극 해소하여 우리 소비재 기업의 신규 수출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년 코로나19로 인한 K-방역, 비즈니스의 비대면·디지털·온라인화 등 뉴노멀 수요에 대응하여 바이오·헬스 온라인 전시회(Bio Health Worldwide Online)를 개최하여 진단키트, 마스크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다. K-뷰티·푸드 등 우리나라 소비재를 판매하는 세계 각국의 현지 유통망과 협력을 강화하고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체험형 마케팅을 적극 활용·지원하여 국내 소비재 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발굴과 소비재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노력에 힘입어 '14년 200억불이었던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은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통해 '20년 324억불을 달성하였다.

〈표 5-9〉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액 및 비중(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수출	5,727	5,268	4,954	5,737	6,055	5,422	5,128
5대 소비재 (비중)	200 (3.5%)	210 (4.0%)	235 (4.7%)	268 (4.7%)	277 (4.6%)	283 (5.2%)	324 (6.3%)

* 5대 소비재 : 화장품·패션의류·생활유아용품·의약품·농수산식품

앞으로도 산업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소비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신규정책 및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재 수출기업의 수출애로 해결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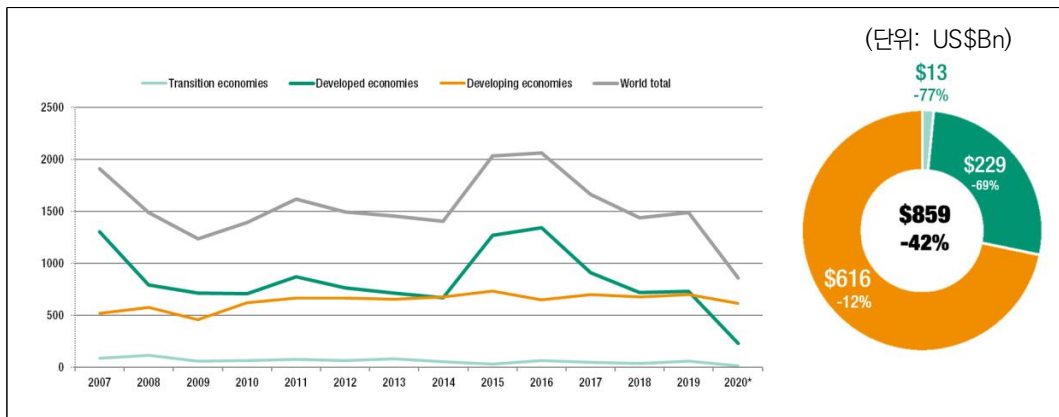
외국인 투자 및 유턴 활성화

제 1 절 외국인직접투자동향

투자유치과 서기관 유은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세계 투자 보고서 2021(World Investment Report 2021)에 따르면,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실적은 2019년에는 전년대비 6.5% 증가한 1조 5,302억 달러, 2020년에는 전년대비 34.7% 감소한 9,98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2020년 실적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실적인 1조 2,390억보다 약 20% 낮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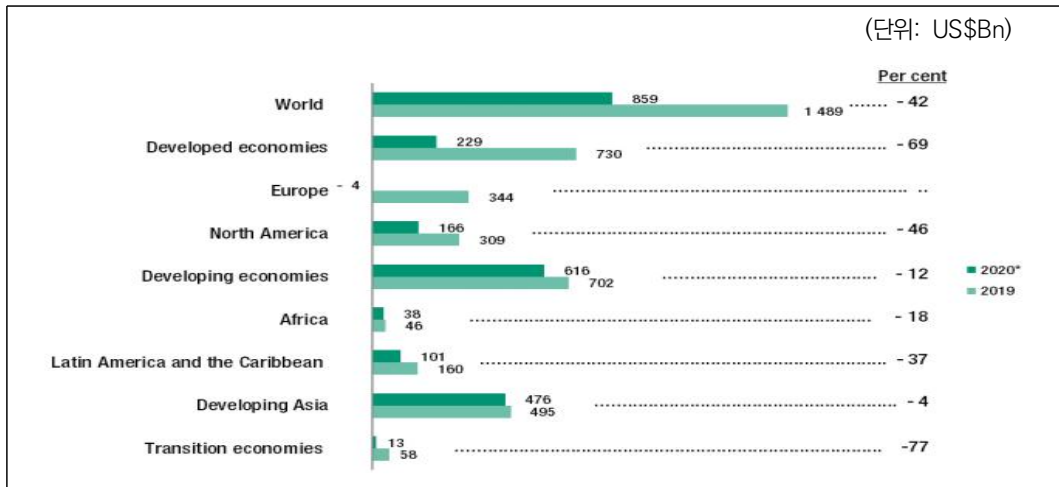


〈그림 6-1〉 전체 및 그룹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007년~2020년

출처: UNCTAD, 2020년 수치는 추정치(Preliminary estimates)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감소는 주로 선진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선진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20년 전년대비 58.3% 감소하여 최근 25년 중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에 반해, 2020년 개도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대비

8.4% 감소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중 선진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비중은 2018년 49.3%에서 2019년 48.9%, 2020년 31.3%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림 6-2〉 2019년 대비 2020년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출처: UNCTAD, 2020년 수치는 추정치(Preliminary estimates)

투자 유형별로는 그린필드, M&A 모두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였다. 2019년에는 M&A 분야, 2020년에는 그린필드 분야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표 6-1〉 2019년 대비 2020년 투자유형별, 지역별 비교

(단위: US\$Bn)

	2018	2019		2020	
		실적	전년대비 증감	실적	전년대비 증감
그린필드	9,825	8,459	-13.9%	5,639	-33.3%
국경간 M&As	8,157	5,074	-37.8%	4,749	-6.4%

출처: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1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 총괄

2019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 233.3억달러로 2018년에 이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하며, 5년 연속 200억달러를 달성하였다. 2019년 상반기에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투자 수요 감소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2019년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면서 한국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망세가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증액된 현금 지원을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정부·지자체 등이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선 결과 상승세로 전환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2020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및 재확산의 반복으로 인해 신고 기준 전년대비 11.1% 감소하여 207.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34.7%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우리나라도 상반기에는 감소폭이 전년 동기 대비 22.4%로 컸으나, K-방역, 화상상담·웨비나 등 온라인 IR, 유망기업 대상 전략적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하반기 들어 회복세에 진입하면서 2015년 이후 6년 연속 200억달러를 달성하였다.

〈표 6-2〉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억불, %)

구 분	신고 기준			도착 기준		
	'19년	'20년	전년대비 증감	'19년	'20년	전년대비 증감
상반기	98.7	76.6	-22.4	62.1	49.8	-19.8
하반기	134.6	130.9	-2.8	71.8	64.0	-11.0
합 계	233.3	207.5	-11.1	133.9	113.8	-15.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 주요 특징

① 2015년 이후 6년 연속 200억 달러 초과

2019년~2020년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은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달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2020년까지 6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2018, 2019년도의 높은 실적에 힘입어 10년 평균 외국인투자금액도 20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다.

② 업종별

업종별로 2019년~2020년 간 제조업 분야 투자는 서비스업 투자 대비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중 제조업 비중이 2020년 28.8%로 낮아졌다. 이는 제조업 부문 M&A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하였다(2019년 36억달러 → 2020년 8.4억달러). 2018년 대비 2020년 증감을 기준으로, 세부 업종별로는, 섬유·직물·의류(12,236.6%), 의약(1,789.4%)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여가·스포츠·오락(241.8%),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154.2%)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6-3〉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전년대비 증감	실적	비중	전년대비 증감
제조업	10,049	37.4	8,219	35.2	-18.2	5,970	28.8	-27.4
서비스업	15,583	57.9	14,758	63.3	-5.3	14,354	69.2	-2.7
기 타*	1,269	4.7	351	1.5	-72.4	422	2.0	20.4
합 계	26,901	100.0	23,328	100.0	-13.3	20,747	100.0	-11.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기타는 1차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포함

③ 지역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발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 부문 투자가 2019년, 2020년 연속 증가 하였으나 2020년 서비스 부문 투자 감소로,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6.4% 증가, 2020년에는 전년대비 22.5%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영국포함)발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투자가 모두 감소하여 2019년 20.1%, 2020년 33.8% 감소하였고, 그 결과,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중 비중이 2018년 33.2%에서 2020년 22.7%로 대폭 감소하였다. 중국발 외국인직접 투자는 대내외 여건에 따라 변동폭이 큰 편인데, 2019년은 전년대비 64.2% 감소, 2020년은 전년 대비 102.8% 증가하였고, 일본발 외국인직접투자는 2020년에 전년대비 49.1%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6-4〉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전년대비 증감	실적	비중	전년대비 증감
미국	5,879	21.9	6,842	29.3	16.4	5,301	25.6	-22.5
일본	1,301	4.8	1,430	6.1	9.9	727	3.5	-49.1
EU	8,921	33.2	7,131	30.6	-20.1	4,719	22.7	-33.8
중화권*	5,977	22.2	4,314	18.5	-27.8	5,459	26.3	26.5
중국	2,743	10.2	982	4.2	-64.2	1,991	9.6	102.8
기타	4,823	17.9	3,611	15.5	-25.1	4,541	12.3	21.9
합계	26,901	100.0	23,328	100.0	-13.3	20,747	100.0	-11.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중화권 :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④ 유형별

유형별로 보면 M&A형 투자는 2019년에는 그간 자금조달·기업결합심사 등의 이슈로 다소 지연되던 M&A 매가딜이 연속적으로 신고되면서 전년대비 7.6%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금융·보험업 분야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6.0% 감소하였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2019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감소하여 전체 감소폭이 컸으나, 2020년에는 제조업 부분 투자 증가로 전년 대비 8.8% 감소하였다.

〈표 6-5〉 유형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백만불,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전년대비 증감	실적	비중	전년대비 증감
M&A형	6,891	25.6	7,417	31.8	7.6	6,232	30.0	-16.0
그린필드형	20,009	74.4	15,911	68.2	-20.5	14,514	70.0	-8.8
합계	26,901	100.0	23,328	100.0	-13.3	20,747	100.0	-11.1

1. 개요

2015년부터 시작된 200억불대의 외국인직접투자가 2019년, 2020년까지 6년 연속으로 이어지며,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었다. 특히,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FDI 감소세('20년 △42%),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9년은 역대 2위 실적(233억불, 신고)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207.5억을 기록하며, 국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첨단 소부장, 신산업, 뉴딜분야(신재생에너지 등 '19년 2.4억불 → '20년 4.8억불, +101.4%) 투자가 지속 확대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고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정부와 지자체, 투자유치 기관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과 투자 맞춤형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가 국내 정착 및 애로해소 등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2. 2019년-2020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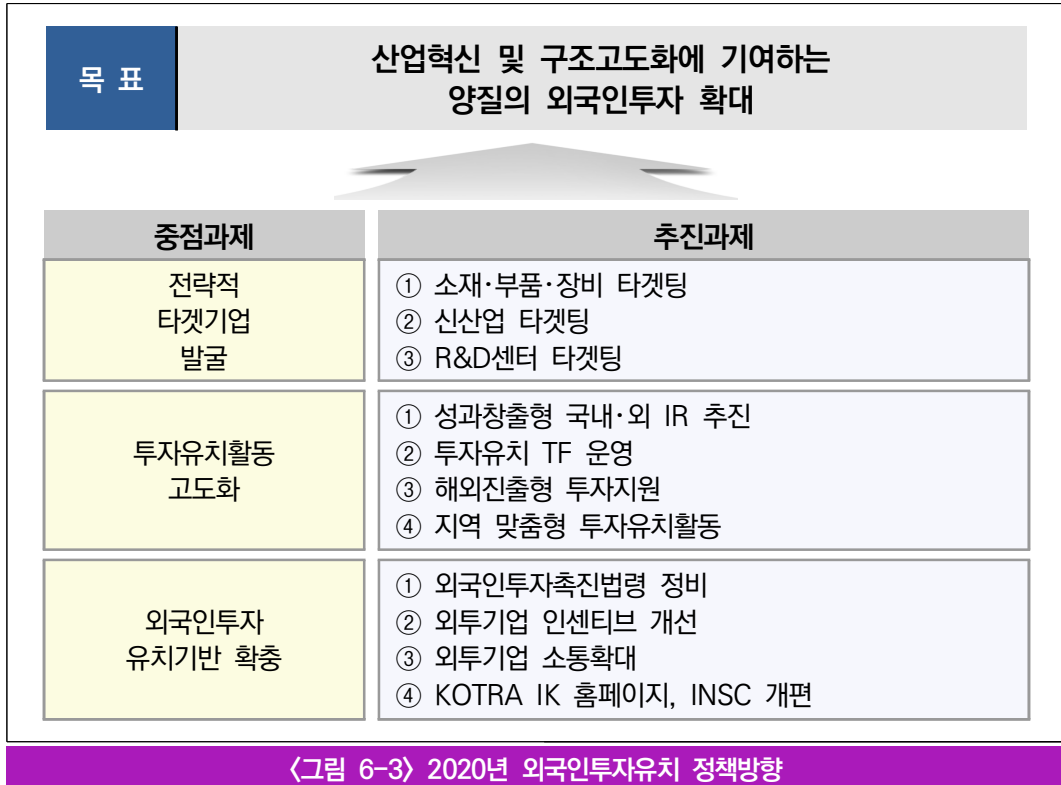
(1) 2019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주요내용

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통한 5년 연속 200억불 이상 달성은 물론 지역활력 제고,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 및 범정부적 유치활동을 추진 하고자, 『2019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마련하였다. 시책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략적 타겟팅 및 유치활동 강화) 주력산업과 신산업 등 미래 성장을 위한 13대 분야 200대 타켓기업 20개 앵커기업 선정 및 IR 추진, ② (기업 친화적 인센티브와 인프라 구축) 대폭 확대된 현금지원 예산을 활용한 인센티브 강화, 외투촉진펀드의 본격 운영, 피칭대회 개최 등 매칭 지원, ③ (외투기업과의 상시 소통과 정주여건 개선) 체계화된 외투기업과의 소통체계 구축, 외투기업 채용 수요와 규모를 고려한 채용지원 강화, 교육, 출입국, 응급의료, 교통환경 등 정주여건 지속 개선 등을 담고 있다.

(2) 2020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주요내용

산업부는 산업혁신 및 구조고도화에 기여하는 양질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목표로 △국내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유망 분야(소재부품장비, 신산업, 글로벌 R&D센터)의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유치동력 집중, △투자유치 성과 창출을 위해 개별 기업 심층협의 중심으로 국내외 IR 활동을 추진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을 병행, △외촉법 시행령 개정, 홍보 활동, 인센티브 개선, 외투기업 소통확대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환경 조성방안을 담은 『2020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마련하였다.



① 전략적 타겟기업 발굴

국내 산업 파급효과, 對韓 투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과 타겟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유치하는 한편, 타겟기업을 우선 접촉대상으로 활용하여 투자자 관심사항에 대한 사전준비 및 선제적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투자 현실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BIG3, D.N.A, 수소경제 등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외투기업 R&D 센터 지정제도 등을 활용한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② 투자유치활동 고도화

온라인 IR을 비롯한 맞춤형 IR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플랫폼을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유치 TF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투자결정을 유도하였으며,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외국투자자와 투자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매칭, 상담주선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③ 외국인투자 유치기반 확충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 인정관련 행정요건을 신설하고, 민원처리 확대 등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확대된 현금지원을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외투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채널 구축으로 애로청취와 해소에도 적극 노력 중이다.

3. 적극적 규제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추진

투자정책과 서기관 원영호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기업상과의 고위급 및 실무자급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정부와 외국인투자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의채널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투자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정부의 노동정책, 법률·규제,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해소를 추진하였다.



- (일시) '20. 5. 6.
- (참석) 산업부 장관,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 외투기업 대표 등 30여명
-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응 외투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투자 활동 지원 방안 논의



- (일시) '20.11.5.
- (참 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한외국상의 회장단, 외투기업 대표 등 20여명
- (주요내용) 유럽계 외투기업 대상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정책 소통

〈그림 6-4〉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상의 간담회 활동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면·비대면으로 외투기업인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국내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애로 해소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1. 질적 성과 고도화(투자 사례 중심)

(1) 2019년 주요 성과

먼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투자가 두드러졌다. 이차전지 핵심소재, 고기능성 플라스틱·폴리머, 시스템 반도체 등의 업종에서 핵심소재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젝트를 성사하였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의 R&D 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는 등 연구 개발·전문·과학기술 분야 투자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서비스 관련하여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수요 대응을 위한 공유경제(공유주방, 모빌리티 등), 생활서비스(숙박, 여행 등) 등 모바일 플랫폼 투자가 다수 유입된 점도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뷰티·푸드·문화 등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국내 소비재·문화상품 기업에 외국투자자의 투자가 활발히 유입되는 등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성사되었다.

(2) 2020년 주요 성과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여 원격교육·재택근무 지원·비대면 소비 등 온라인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투자가 지속되었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물류센터 등 인프라 확보형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투자, 마스크 소재 국내 생산을 위한 투자 등 K-방역과 연계된 바이오 분야 투자가 발생하였다.

소부장 및 R&D 분야 투자도 지속되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다변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전기자동차 부품 개발·생산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이차전지, IT, 자동차 등 첨단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투자 사례도 증가하였다.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분야 투자도 증가하였다. 풍력발전 단지 건설,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건축자재 생산, 폐기물 자원 순환 등 투자 범위도 다양한 특징을 보였다.

2. 성과 중심의 투자유치활동 전개

(1)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

① 전략적 해외 IR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 분위기 조성 및 주요 투자가 심층면담 등을 위해 해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전개하였다. 2019년에는 2월(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3월(미국 텍사스, 실리콘 밸리), 9월(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총 3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월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1회 개최하였다.

2019년 2월,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의 투자유치 활동은 선진금융, 인프라, 소프트웨어, 콘텐츠, 관광·레저 등 호주·뉴질랜드의 경쟁우위 산업을 유치하여 대양주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한-호주 FTA('14년 발효) 및 한-뉴질랜드('15년 발효) 체결 이후 양국 투자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에서 추진되었다.

2019년 3월, 미국 텍사스, 실리콘밸리에서의 투자유치 활동은 투자가들과의 접촉면 확대와 투자 유치 활동 효과성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 트렌드 및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선보이는 글로벌 행사인 SXSW(South by South West)와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SXSW 한국관을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투자가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스타트업 피칭 대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의 투자유치 활동은 소부장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같은 기간 중 개최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소부장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정부 대표단이 현지에서 이들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한국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투자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020년 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소부장(반도체·자동차), 신산업(수소경제·재생에너지·IT), 벤처캐피탈 분야의 혁신기업(10개社)을 초청하여 한국투자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라운드 테이블에 앞서 글로벌 화학소재 기업인 듀폰은 “EUV용 포토 레지스트 개발·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한국에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코트라에 투자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② 외국인투자주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제고를 위하여 해외 잠재 투자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투자매력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외국인 투자주간(Foreign Investor Week)을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동 행사를 통해 방한 해외투자자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요산업의 동향과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국내기업 및 지자체와의 투자상담과 현장방문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한국투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투자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9년 외국인 투자주간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협업의 중요성과 국가간, 기업간 연계성 강조를 위한 슬로건(한국과 통하고, 세계로 나간다 / Connect Korea, Connect Global)을 제시하였고, 방한투자자 및 외투기업 315명(소재·부품분야 88명), 해외언론 및 주한 외신기자 20명, 국내기업 298명, 유관기관 108명, 지자체 등 175명, 외투기업인사담당자 190명, 구직자 1,500여명 등 2,500여명이 참가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투자주간 사상 최초로 전 세계 101개국을 대상으로, 아리랑 TV 방송과 온라인(웹, 유튜브 등)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글로벌투자환경 진단 및 한국의 투자환경 등을 논의하는 혁신성장 포럼, 한국의 주요 지역거점별 중점산업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지역중심산업 포럼 등을 진행하고, 소부장·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들이 참여하는 300여건의 투자상담을 진행하였다.

(2)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 투자 촉진

① 제도 개선

2020년 2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율 외국인직접투자율로 인정함으로써,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 투자를 촉진하였다. 그동안에는 국제기준과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율은 외국인투자율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추가 투자시 필요 이상의 자본금전입,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 배당소득세 등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외투인투자 인정범위를 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②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간 불인정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여해왔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표 6-6〉 외국인투자 인정범위 변경

개정前 외국인투자 인정 범위	개정後 외국인투자 인정 범위
① 외국인의 국내법인 또는 기업 주식 취득 (투자금액 1억원이상+외투비율 10% 이상에 한해 인정)	※ 기존 범위(①, ②) 이외에 ③을 추가
② 해외 모기업이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5년 이상의 장기 차관	③ 외투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전입 없이 공장 신·증설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자로 인정

② 카라반, 정책협의회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경자청과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해당년도 투자유치 프로젝트 확인 및 외국인투자자가 제기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 그간 추진된 제도 개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입국지원, 입지 인프라 구축 등 투자유치 애로사항 해소 방안과 향후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지역 소재 既투자 외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증액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인 외투 카라반을 개최하였다. 주로 既투자 외투기업의 추가 투자 계획이나 신규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본사 설득에 필요한 인센티브 및 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제 4 절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및 국내복귀 지원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해외투자자과 사무관 김예은

80년대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기업들은 시장접근과 생산효율성 극대화 관점에서 오프쇼어링을 적극 추진하였고, 밸류체인을 전세계로 확대하는 글로벌화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생산거점인 개발도상국 등 현지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해외생산의 이점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에서 오프쇼어링에 따른 국내 제조업 생산감소와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면서 자국 제조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쇼어링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COVID 19등으로 GVC의 취약점이 노출된 바 있어 정부도 산업에 필수적인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리쇼어링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영 여건 변화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를 보다 활발히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12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을 제정하고, 조세감면, 입지지원, 재정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법제화하여 해외에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지원 중에 있다.

유턴법상 유턴기업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2년 이상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거나, 첨단산업 또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턴기업으로 선정하여 조세감면,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복귀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 축소량에 비례하여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 4억원 한도까지 도입설비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당 300억원 한도 내에서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도 설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규 고용창출인원에 대해서는 최대 100명까지 중소기업에 인당 720만원, 중견기업에 인당 360만원까지 최대 2년간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 중이다. 그리고 현지 우리기업들이 합법적인 청산 후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의 주요 장애요인인 현지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산 컨설팅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외국인 투자 및 유턴 활성화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한편, 2020년 정부는 3차례 대책을 통해 COVID 19 등으로 인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우선, 세제를 개편하여 기존에는 국내사업장 신설 기업에만 실시하던 법인세 감면을 증설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보조금 한도를 사업장당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기본 지원 비율을 기존에 비해 10%p 상향하였다. 또한, COVID 19 등으로 인해 해외사업장 축소에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유턴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국내 신·증설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20년 12월 유턴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제조업·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대상으로 하던 유턴제도 지원 대상이 방역·면역 업종으로도 확대되었으며, 첨단산업 또는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축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근거가 신설되었으며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 유턴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비율도 25%에서 10%로 완화되었다.

한편,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KOTRA에 유턴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의향기업 발굴, 지원제도 안내 및 선정신청서 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무역관 내 유턴기업 지원데스크와 헬프 데스크를 통해 현지 법인의 국내복귀를 지원 중이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난징, 톈진 등 중국에 7개소 유턴기업지원 데스크를, 북미 2개소, 동남아 8개소, 서남아 2개소 등 8개 지역에 총 29개소의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KOTRA 유턴기업 지원센터 및 해외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유턴 의향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유턴 정책 홍보 및 국내복귀 컨설팅을 통해 유턴 활성화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물론 유턴정책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비롯하여 다양한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정책효과를 파악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턴을 통한 투자와 고용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과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대내외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건실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투자 이행을 촉진하는 한편, 국내 복귀 후에 고부가가치 제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해외투자기업 지원 현황

해외투자자과 서기관 오정철
해외투자자과 사무관 이광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증가 폭이 확대('14년 286억불 → '19년 618억불) 되었으나 '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 감소하여 송금액 기준으로 549억 달러(전년비 △14.6%)를 기록했다.

업종별 해외투자자는 금융·보험업(175.3억불, 전년비 △31.3%), 제조업(129.1억불, △31.2%), 부동산(74.7억불, △3.8%), 정보통신(36.4억불, +294.2%), 전기·가스 공급(33.1억불, +84.9%) 순이며, 그간 주요 투자업종이었던 금융·보험업, 제조업, 부동산업은 모두 감소했으나, 정보통신업과 전기·가스 공급업은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147.3억불, 전년비 △4.2%), 케이만 군도(65.8억불, △22.0%), 중국(41.9억불, △27.9%) 등 3대 투자처가 전년대비 모두 감소한 반면, 캐나다(29.4억불, 전년비 +147.4%)는 공공기관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건으로 증가하였다.

〈표 6-7〉 업종별 해외직접투자현황

(단위: 억불)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체	303.8 (6.1)	403.6 (32.8)	448.7 (11.2)	513.8 (14.5)	643.0 (25.1)	549.1 (△14.6)
금융 보험업	69.2 (65.0)	94.3 (36.3)	132.9 (40.9)	173.8 (30.8)	255.0 (46.7)	175.3 (△31.3)
제조업	80.4 (4.1)	87.3 (8.6)	88.8 (1.7)	163.4 (83.9)	187.6 (14.8)	129.1 (△31.2)
부동산업	43.2 (21.6)	61.9 (43.4)	38.0 (△38.7)	52.6 (38.5)	77.6 (47.7)	74.7 (△3.8)
정보 통신업	6.8 (△26.5)	13.1 (93.1)	24.5 (86.0)	16.6 (△32.3)	9.2 (△44.3)	36.4 (294.2)
전기·가스 공급업	6.9 (△21.7)	9.4 (36.2)	11.9 (27.2)	10.4 (△12.3)	17.9 (71.4)	33.1 (84.9)
기타	97.4 (△14.4)	137.4 (41.2)	152.6 (11.0)	97.1 (△36.3)	95.6 (△1.6)	100.6 (5.2)

〈표 6-8〉 국가별 해외직접투자현황

(단위: 억불)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체	303.8 (6.1)	403.6 (32.8)	448.7 (11.2)	513.8 (14.5)	643.0 (25.1)	549.1 (△14.6)
미국	70.5 (18.3)	136.7 (93.9)	153.2 (12.1)	112.2 (△26.8)	153.7 (37.0)	147.3 (△4.2)
케이만 군도	31.4 (36.9)	44.6 (41.8)	50.6 (13.6)	63.0 (24.5)	84.3 (33.7)	65.8 (△22.0)
중국	29.9 (△7.3)	34.4 (15.1)	32.1 (△6.6)	48.0 (49.5)	58.1 (20.9)	41.9 (△27.9)
싱가포르	14.6 (49.1)	11.8 (△19.4)	10.7 (△9.7)	16.6 (55.5)	32.2 (94.1)	37.9 (17.9)
캐나다	5.7 (△51.8)	13.1 (129.5)	3.7 (△71.9)	5.2 (42.5)	11.9 (126.4)	29.4 (147.4)
기타	151.7 (1.1)	163.0 (7.5)	198.4 (21.7)	268.8 (35.5)	302.9 (12.7)	226.9 (△25.1)

최근의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과거 저임활용 중심의 개도국형 투자에서 시장 및 기술 확보 중심의 선진국형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 경쟁력 강화,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등 해외투자는 기업 경영전략상의 다양한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투자진출 대상국에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2020년에 新남방·북방 투자수요 집중지역 지원강화를 위해 인도(첸나이), 베트남(다낭) 등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15개국 24개소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한국투자지원센터에서는 우리기업이 성공적 현지정착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경영·투자 상담, 애로 해결지원, 투자진출 기업 경영실태 조사, 진출기업 마케팅 지원,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국내 산업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해외 M&A(기업의 인수·합병)는 글로벌 유망기업의 선진 기술, 유통·판매망, 브랜드 가치 등 경영 자원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영 전략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견인하기 위하여 해외 M&A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독자적으로 해외 M&A를 추진할만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 적고, 정부기관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KOTRA 내에 ‘해외 M&A 지원센터’를 2013년 2월에 설립, M&A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략수립 - 매물발굴 - 실사·협상 - 사후관리 등 M&A의 전주기에 걸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에 해외무역관중 M&A 거점무역관을 43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2020년 말까지 총 57건의 중소·중견기업 해외 M&A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M&A는 새로운 시장과 선진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여 글로벌 속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정부에서도 향후 우리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1. 남북교역 동향

남북 교역은 '80년대 후반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1988년 10월 7일 대북 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대북 교역을 공식 허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산 상품 반입액은 1989년 19백만불을 시작으로 2007년 665백만불(개성공단제품 제외)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0년 5·24조치로 개성공단 제품과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남북한 교역이 전면 중단되어 그 실적이 2011년 이후 급감하였다. 2016년 2월 10일 이후에는 개성공단까지 가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남북교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표 6-9〉 남북교역 및 북한산 반입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89	'05	'07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교역액	18.7	765.3	1,797.9	1,912.3	1,713.9	1,971.3	1,136.4	2,342.6	2,714.5	332.6	0.9	31.3
반입액	18.6	340.3	766.3	1,043.9	913.7	1,074.0	615.2	1,206.2	1,452.4	185.5	0.01	10.5
개성공단 제외	18.6	320.5	665.2	338.7	4.7	0.8	0.6	0.4	0.4	0.0	0.01	10.5

자료: 통일부

남북교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성공단 폐쇄 이전인 2015년에는 상업적 교역(개성공단 반출입, 위탁가공 교역, 일반교역 등)이 전체 교역액의 99.63%를 차지하였으며, 비상업적 교역(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등)은 0.37%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부터는 상업적 교역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2017년부터는 상업적 교역 없이 비상업적 교역만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표 6-10〉 거래 유형별 현황

(단위 : 백만불, %)

연 도	총 계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소 계	개성공단	위탁가공	일반교역	기타	
'07	1,798	1,233	441	330	461	199	367
'08	1,820	1,617	808	409	400	94	108
'09	1,679	1,607	941	410	256	36	36
'10	1,912	1,879	1,443	318	118	11	23
'11	1,714	1,703	1,698	4	0.2	1	11
'12	1,971	1,962	1,961	-	0.84	0.01	9.06
'13	1,136	1,133	1,132	-	0.59	0.14	2.95

연 도	총 계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소 계	개성공단	위탁가공	일반교역	기타	
'14	2,343	2,339	2,338	-	0.18	0.52	4.13
'15	2,714	2,704	2,704	-	0.18	0.55*	10.18
'16	332	331	331	-	0.03	0.01	1.09
'17	0.9	-	-	-	-	-	0.9
'18	31.3	-	-	-	-	-	31.3

*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관련 물품 포함

2. 남북경협 활성화 대비

현 정부 들어 2017년 7월 6일 대통령께서는 G20 회의 참석을 계기로 독일 코르버 재단 연설에서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 대북 5대기조와 원칙을 천명하셨다. 또한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기본방안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100대 국정과제 중 남북경협 과제로 포함되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동해권, 서해권, 접경지역의 남북 경제협력 H벨트를 물류·산업·자원·관광 등의 분야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통일부에서 관련 T/F를 구성하여 2018년 12월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6-11〉 ‘한반도 신경제구상’ 개요

비 전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열린 공동번영	
목 표	① 북한 변화와 남북경제통일 기반 조성 ②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 ③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	
원 칙	① 국민적 합의 기반 ② 포괄적 호혜주의 견지 ③ 남북합의 및 국제규범 준수	
4대 핵심정책	① 환동해 경제벨트 ② 환서해 경제벨트 ③ 접경지역 평화벨트 ④ 하나의 시장 협력	

* 자료 :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구체적 추진은 현실적으로 대북제재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북핵문제 진전 등 적절한 여건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무역안보 정책 추진

제 1 절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관리

무역안보정책과 주무관 하정운
무역안보정책과 주무관 도은지

1. 무역안보 환경변화

(1)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출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 서방국으로 구성된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 :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본격적인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COCOM은 공산권 국가로 하이테크 제품 등 전략적 물자 및 기술의 제공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수출관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 후에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종교, 인종, 영토 등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었고,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려는 우려국의 움직임과 테러리스트에 의한 안보위협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도 핵무기, 생화학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을 통제하는 국제체제인 핵공급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호주그룹(Australian Group),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로 변모하였다. 또한, 해체된 COCOM을 대신하여 1996년 7월 재래식 무기의 국제수출통제를 위한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가 성립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NSG, 1996년에 WA와 AG, 2001년에 MTCR 등에 각각 가입함으로써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평화,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관리를 추진하였다.

(2) 9·11테러와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국제규범화

수출관리는 2001년 발생한 9·11테러를 계기로 또 다른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국가가 아닌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미가입된 국가도 아우를 수 있는 전방위적 수출통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1540호를 채택하여 모든 유엔회원국은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여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3)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관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무역안보 환경은 안보의 이슈가 정치·경제적 이유, 기술 패권 등과 결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안보의 개념이 확장된 배경은 5G, AI, 빅데이터, 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있으며, 이는 첨단기술의 특성상 민간 겸용(dual-use)이 가능하고,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할수록 경제적·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에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9년 8월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인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규제를 강화하였다. 일측은 상기 조치의 이유를 국가 안보차원에서 자국 수출통제제도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한편, 강제징용문제와 한일협정을 둘러싼 갈등 등 정치적 목적에서 기인하였음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이 심화되어 가면서 미국과 중국의 수출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5월에 수출제한 대상목록인 Entity List에 화웨이와 관련기업을 등재하는 한편, 국방수권법, 수출관리규정 등의 개정을 통하여 미국산 기술 및 물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 중국은 2020년 12월에 수출통제 관련 일반법인 수출통제법을 제정하는 한편, 수출입 허가 품목을 발표하고, 외국 법령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를 위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2. 무역안보정책관 신설

수출통제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잡해지면서 무역안보 정책이 기술패권, 정치·경제적 이슈와 융합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따른 첨단기술 중심으로 세계 무역안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조직·인력 등 무역안보정책 역량을 한 단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 5월에 무역안보를 전담할 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관’을 무역투자실 내에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를 새롭게 설치하였다. 이는 전략 물자¹⁹⁾ 수출허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직과 인력의 확충으로 무역안보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첨단기술 중심의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 무역안보 정책 총괄·수립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불법수출 단속, 자율준수무역 거래자 제도 운영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상황허가 등 수출 통제, 우려거래 등에 대한 심층심사,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기술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 보유기업 M&A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 전담, 국제 수출통제체제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약체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대외무역법 등 개정

국내외 무역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급변화함에 따라 국가안보 및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수출통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 및 관련 규정을 2020년 3월에 일부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세나르체제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는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미사일·재래식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에 대해서도 회원국 정부의 상황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수출통제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국제 수출통제지침을 반영하여 상황허가의 제도적 틀을 갖추고 심사제도 등을 운영 중이나, 상황허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무역거래자가 해당 물품 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에 해당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판정을 할 경우, 판정 품질(판정의 정확도 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해당 판정 관련 자료를 동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판정제도를 개정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19)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재래식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등에 이용, 전용될 수 있는 물자(물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라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있다.

1.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필요성

전략물자의 무분별한 거래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1949년에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국가에 대해 미국 중심의 서방국가 사이에서 최초로 논의되었고, 1950년에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COCOM)를 설립하여 공산권 국가로의 전략적 물자 및 기술의 제공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최근에는 강대국 사이의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나, 걸프만, 팔레스타인,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 종교, 인종, 영토분쟁 등으로 인한 지역분쟁이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안보 위협은 지속되고 있으며, 생화학이나 핵무기, 미사일을 보유하려는 우려국가(concerned countries)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 등의 확산을 통제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로서 1978년에 핵무기를 통제하는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1985년에 생화학무기를 통제하는 호주그룹(Australia Group, AG), 1987년에 미사일 및 운반체를 통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1996년에 재래식무기를 통제하는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 등이 발족하였고, 이를 통해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가 전쟁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에 핵공급국그룹 가입을 시작으로 1996년에 바세나르체제 및 호주그룹 가입, 2001년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고, 총회의장을 수행하는 등 국제안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내적으로는 1987년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도입하고,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

하였다. 2003년부터는 상황허가 제도²⁰⁾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 4월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UN Security Council Resolutin, UNSCR) 1540호 이행을 위한 중개, 경유, 환적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10월에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와 기술개발촉진법령(현재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공고'를 통합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²¹⁾를 제정·고시하여 수출통제기준의 명확화 및 기업의 이용편의성을 제고시키고, 2007년에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제도²²⁾ 도입으로 무역거래자의 수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008년에는 전략물자의 수출입업무와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의 판정,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및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고, 외교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국제거래가 국가간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기업보호 측면에서는 수출통제 위반으로 인한 무역보복을 차단하는 한편, 국내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반면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위반한 기업은 우려통제자(DL, Denial List)에 등재되어 무역제한, 대외 이미지 실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전략물자 수출허가

전략물자는 전자·기계·화학 등 대부분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있으며, 2020년 현재 총 1,667개가 지정되어 있다. 전략물자는 이중용도품목²³⁾,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 등으로 구분되며, 개인 또는 업체(이하 '수출자')는 수출 전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전략물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출품목의 최종용도가 우려스러울 경우 등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출 외에 전략물자의 3국간 거래를 중개하거나, 국내 항만·공항에서 경유·환적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3년 이내의 수출제한 또는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은 수출 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1) 2009년 11월 2일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22)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포괄적 수출허가 신청,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23) 민간용으로 제조, 개발되었지만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표 7-1〉 전략물자 지정현황(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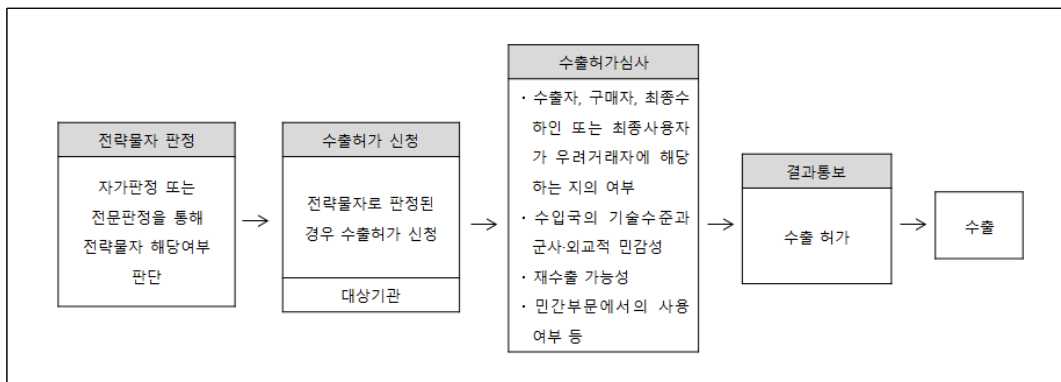
구 분			지정현황		예 시 * 전략기술은 해당 전략물자 관련 기술
			물품	기술	
별표2 (이중 용도 품목)	1부	소재, 생화학	459	464	탄소섬유, 마레이징강, 동물 병원균 등
	2부	기계	133	142	공작기계, 치수검사기, 원심분리기 등
	3부	전자	168	176	통신용 집적회로, 반도체 제조장비 등
	4부	컴퓨터	23	26	슈퍼컴퓨터, 방사선 경화 컴퓨터 등
	5부	정보통신보안	70	59	라우터, 광섬유, 전파방해장치 등
	6부	센서, 레이저	179	182	고속카메라, 광센서, 고출력 레이저 등
	7부	항공전자	64	88	자이로스코프, 위성항법시스템 등
	8부	해양	34	43	잠수정, 수중용 로봇 등
	9부	항공우주	130	146	가스터빈엔진, 액체로켓추진시스템 등
	10부	원자력	130	130	원자로, 연료봉, 증기발생기 등
소 계			1,390	1,456	
별표3(군용물자품목)			277	272	자동화기, 탄약, 함정, 무인항공기 등
합 계			1,667	1,728	

출처: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4호)

〈표 7-2〉 전략물자 품목별 수출허가 기관

허가기관	소관 품목
산업통상자원부	이중용도품목(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 제1부~제9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전용품목(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 제10부)
방위사업청	군용물자품목(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인 품목, 별표3)

출처: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4호)



〈그림 7-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출처: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4호)

(1) 전략물자의 판정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무역거래자의 신청에 의해 전문 판정기관²⁴⁾에서 판단해주는 '전문판정'이 있으며,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결과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간 일본수출규제 등 대외적 상황과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으로 기업들의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 신청 건수는 '16년 62,353건에서 '20년 109,182건으로 5년 사이 약 75%가 증가하였다.

〈표 7-3〉 전략물자 판정신청 추이(2016~2020)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판정	62,353	84,893	106,881	108,555	109,182
자가판정	48,537	66,855	75,555	71,717	75,460
전문판정	13,816	18,038	31,326	36,838	33,722

(2) 전략물자 허가신청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수출대상 품목이 전략물자로 판정된 경우 전략물자관리 시스템(Yestrade, www.yestrade.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업체는 신청 전에 거래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여부²⁵⁾, 전략물자 해당여부, 거래관계자(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의 우려거래자 여부, 전략물자의 우려목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출지역, 수출허가 유형별로 구비하여 동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 기본서류는 허가신청서, 수출계약서, 전략물자판정서, 수출자서약서, 최종수하인진술서, 최종사용자서약서, 최종사용자의 수입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등) 등이다.

전략물자의 수출지역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목적지 기준으로 '가의1', '가의2' 및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의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NSG, AG, MTCR, WA)에 모두 가입한 국가로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24) 전문판정은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25) 전략물자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수출 후 7일 이내에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거래보고서를 해당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등 28개 국가이다. ‘가의2’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지만 한국에 대하여 수출규제 중으로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로 일본 1개 국가이다. ‘나’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일부 가입 또는 비가입 국가이다. 전략물자의 최종목적지가 ‘가의1’지역이라도 ‘가의2’지역 또는 ‘나’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수출허가의 유형에는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가 있다.

① 개별수출허가

수출허가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전략물자 수출신청 건별로 매번 허가기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품목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확인을 거쳐 허가받는 형태이다.

② 포괄수출허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에 한해 초민감품목, 원자력 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 및 기술을 제외한 전략물자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자율판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도록 일괄 허가받는 형태이다. 포괄수출허가는 다시 사용자포괄수출허가와 품목포괄수출허가로 구분된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 여부 및 수출 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품목, 그 수출 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 등 거래관계자가 거래품목의 대량살상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임을 알았거나 의심되는 경우²⁶⁾,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수출신고 이전에 허가기관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UN이 지정한 우려거래자에게 수출하거나 특정품목²⁷⁾을 이란, 시리아 등 우려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26)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4호) 제50조(상황허가의 대상) 제1항 참조

상황허가가 필요하다. 상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황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 기관용, 세관용)에 필요한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개허가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인 포함)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전략물자 등의 수출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매 중개시 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나, 해당 중개 관련 당초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가의1”지역인 경우에는 면제된다.

⑤ 경유·환적허가

전략물자 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또는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및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 규정하는 운송사업자 등)는 허가기관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3) 전략물자 허가심사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수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근거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른 허가의 일반원칙, 수출허가의 지침, 개별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는 허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MTCR 통제품목은 대량파괴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고, CWC(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해당품목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①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등 평화적 목적, ②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환경 보호와 직접 관련된 목적, ③ 화학무기 사용,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 독성 사용 이외의 군사적 목적, ④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다.

수출허가의 지침은 NSG 원자력 전용품목 및 이중용도품목, MTCR 통제품목, AG 통제품목, CWC 해당품목, ATT(무기거래조약) 해당품목, 안보리 결의 제2231호(이란제재) 해당품목 등 통제체제별로 해당품목에 대하여 규정²⁷⁾되어 있다.

27)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4호) 제50조(상황허가의 대상)제3항 및 별표2의2 참조

28)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4호) 제18조(수출허가의 지침)

개별허가 심사기준은 전략물자 해당 여부, 수입국,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사용용도의 신뢰성, 재수출 가능성, 거래관계자의 우려거래자 해당 여부 등이며, NSG, MTCR, ATT 통제체제의 경우 별도 요소도 고려하고 있다.

수출허가 심사는 상기 모든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출허가서를 발부하거나 거부 처리한다.

〈표 7-4〉 항목별 제출서류 및 주요 검토·확인 내용

항목	문서	주요 검토·확인내용	제출방법
신청서	개별수출허가 신청서	수출자, 담당자, 구매자, 제조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목적지 국가, 판정 정보 등	Yestrade에 직접 입력
계약설명	수출계약서, 신용장, 가계약서, 주문서 중 1부	실제 수출계약 여부 확인	Yestrade에 관련서류 첨부
품목설명	전문판정서 전문판정결과 활용 동의서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서 제출은 Yestrade상 판정발급 번호 조회, 기재로 대신함
	자가판정서 매뉴얼 또는 사양서 등	전략물자 해당 여부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전략기술 해당 여부	
서약서	수출자 서약서	수출자, 수출품, 수량,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자 홈페이지, 사용 목적, 최종사용자 확인, 서약내용	Yestrade에 관련서류 첨부
	최종수하인진술서 또는 수입목적확인서 (단, CWC 제3종 화학물질을 CWC 가입국 이외로 수출시 수입국정부 발행 수입목적 확인서)	최종수하인 직접사용 여부, 재수출 및 재판매 여부(최종사용용도 기재) 등	
	최종사용자서약서	대표자, 계약담당자, 기업 업종 및 업태, 구매계약 내용(사용용도 및 보관장소) 등	
기타	최종사용자의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최종사용자의 업태, 주소, 대표자명 등의 진위여부, 사용용도의 적합성 등	Yestrade에 관련서류 첨부

수출허가 처리기간은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이나, ‘가-1’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허가를 처리해야 한다. 단,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관련 행정기관·국가·국제체제와의 협의, 현지조사, 자료 보완요청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허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서면계약에 따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목적지 국가가 ‘가의1’지역인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가의1’지역에 소재한 위탁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A인 경우에는 3년 이내이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이다.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이다.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업체가 수출허가 대상품목과 최종사용자를 제외한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허가기관에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를 작성, 신청할 수 있다. 허가기관은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수출업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이동·확산 우려 등의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업체는 수출허가서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외에 수출포기 등으로 수출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수출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전략물자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건수는 2018년 5,042건, 2019년 4,838건, 2000년 4,044건이다.

〈표 7-5〉 전략물자 수출허가 건수 추이(2016~2020)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허가건수	4,005	4,267	5,042	4,838	4,044

* 상황허가 실적 포함

(4) 불법 수출 단속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에 따른 3년 이내의 전략물자의 수출이나 수입이 제한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역량 제고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CP) 지정 제도

① 제도 개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CP) 지정제도는 국내 수출기업의 자율적인 수출 관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이 수출통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및 거래상 대방 확인 등의 수출관리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국제적 무역규범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2005년 도입되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실시로 기업주도의 수출관리를 장려하는 측면이 있었던 반면, 규모·업종 등 기업별 무역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CP지정요건으로 일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업의 규모 및 역량에 따른 CP 운영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하나의 체계로 운용하여 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상황 및 수준별 지정요건을 차등화 하여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고 자율수출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등급별로 구분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를 2014년 1월에 도입하였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받게 되면 포괄허가를 통해 별도의 허가 없이 일정기간(2~3년) 반복 수출할 수 있는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이 외에도 개별수출 허가시 심사면제, 서류면제, 허가면제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표 7-6〉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등급별 특례

구분	특례			A	AA	AAA
개별 수출 허가	가의1 지역			심사면제	심사면제	심사면제
	가의2 지역, 나 지역			-	-	서류면제
	같은 수출품목(동일HS번호, 동일통제번호)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서류면제*	서류면제	서류면제
	최종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단, 재판매 또는 재수출을 목적 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1. 수출자의 최대주주 2. 수출자의 해외 본점 3.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수출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 투자를 한 법인에 한함) 4. 수출자의 해외 지점 (단 수출자가 본점)	가의1 지역	허가 면제	허가면제 모회사가 같은 해외법인 포함	허가면제 모회사가 같은 해외법인 포함
			가의2 지역, 나 지역	서류 면제*	서류 면제	심사면제 모회사가 같은 해외법인 포함
		암호화품목(통제번호: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최종사용용도가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수용 제품의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할 때,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인 민간기업인 경우		허가 면제	허가 면제	허가 면제
	가의2 지역, 나 지역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 소관체제 가입국으로 동 물자 수출 포함			15일 (*표시는 10일)	10일	5일
	계약 체결 없이 제5조(허가기관)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허가면제(단, 실적보고 시 기술 수출내역 보고)			-	○	○
	암호기능이 주요 기능 혹은 기능군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한정되고, 공개되거나 상용화된 암호화 표준을 구현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고 저장하는 민수용 소프트웨어 중 민간기업의 운영효율화 및 판촉 지원 용도, 모바일 단말기 용도인 경우 허가 면제			-	-	○
	서비스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설치하고,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별표2 제5부 제2장 주3에 따른 예외조항을 만족하는 경우,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허가 면제			-	-	○
해외에서 국내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바세나르체제의 민감·초민감 기술을 '가의1' 지역에 견적, 입찰 제안서와 함께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허가면제. 다만, 관련 품목의 설계, 생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의 기술은 제외			-	-	○	
포괄 수출 허가	사용자포괄허가 (가의1 지역)		○	○	○ 통제번호 5자리	
	기간		3년	3년	3년	
	사용자포괄허가 (가의2 지역, 나 지역)		△	○	○ 통제번호 5자리	
	기간		-	2년	3년	
	품목포괄허가		X	△ '가의1' 지역만	○	
	기간		-	3년	3년	
	정기보고 주기		실적보고	반기	연간	
중개 허가			허가면제	X	○	
			실적보고	-	반기	
수출허가면제에 대한 수출거래보고				7일	반기	연간

〈표 7-7〉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규모별·등급별 현황

규모	업태	등급	업체수	합계
대기업	제조	AAA	5	29
		AA	13	
		A	11	
	상사	AAA	2	11
		AA	5	
		A	4	
	소계		40	40
중소기업	제조	AAA	3	96
		AA	55	
		A	38	
	상사	AAA	2	22
		AA	14	
		A	6	
	소계		118	118
대학 연구기관	AA		2	2
	A		1	1
	소계		3	3
	합계			161

② 해외사례

일본은 전략물자 자체통제장치(조직, 규범 등)를 갖추고,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혜택(포괄허가)을 부여하는 CP제도가 있으며, 통상 3년 동안 반복사용 가능한 포괄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표 7-8〉 일본의 수출허가 종류별 상세내용

구 분	화이트 국가	일반국가	
	일반포괄허가 (모든기업 가능)	특별일반포괄허가 (CP기업만 가능)	개별허가
처리기간	1주 이내	1주 이내	90일 이내
제출서류	2종	2~3종	3~10종
허가 유효기간	통상 3년	통상 3년	통상 6개월

미국은 수출관리 및 준수 프로그램(EMCP, Export Management Compliance Program)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이 이를 참고하여 자율준수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달리 지정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Outreach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기업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략물자 관리능력 제고로 기업들이 수출통제 제도를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매년 ‘무역안보의 날’을 개최하여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무역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인 홈닥터 사업을 진행하여 해당 기업의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도이행을 위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략물자 온·오프라인 교육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수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내 집합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강의를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방문교육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군·경찰 등 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품목식별 훈련 등을 통해 수사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대학에도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수출통제 인식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계층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무역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아웃리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9월에 개최한 「유엔안보리 결의(UN Security Council Resolutin, UNSCR) 1540 산업계 아웃리치 컨퍼런스」를 통해 UN, EU, ASEAN과 유관기관, 기업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확산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 및 각 국가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 3 절 기술보호정책 및 수출통제체제 대응

1. 기술보호정책

기술안보과 사무관 이시몬

(1) 개요

IoT·클라우드·센서 등 기술개발 가속화와 초연결사회로의 변화는 산업보안과 기술유출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간 FTA 등 국가 간 통상협력 강화에 따라 자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M&A·핵심인력 이동을 통한 기술유출 발생 등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기술선진국은 물론 각국의 기술보호가 강화되면서 우수기술인력 유출 우려나 인력확보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COVID19'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기술발전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은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유출방지, 보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기본목표와 기반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07년 4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을 시행한 이후 산기법 제5조에 따라 산업기술보호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전파하였다.

정부는 산기법 개정은 물론 산업현장에서의 산업기술보호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7.9.27)를 발족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의 종합허브로서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관련 정보 전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및 발간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무역안보 정책 추진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2) 주요 추진 실적

산업통상자원부는 산기법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제3차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19.1-'21.12)하였으며, 산기법 개정('19.8),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내외 국가핵심기술 보호관리 실태조사 실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상시 운영 등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또한 2019년 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동 대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해외 인수·합병 심의제도,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등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 정보통신, 생명공학, 우주 4개 산업분야에서 신규 추가 기술을 발굴하여 12개 분야에서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21.1.15)하였고 현재 해외 유출방지를 위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기술보유기관이 스스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보호지침('21.1.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산업보안 안내서('21.1.15)를 제정·보급하고, 보호 조치 이행현황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였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보안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산업현장의 니즈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기술보호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안인력의 산업보안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의 날'(10.27)을 제정하여 산업기술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고 산업보안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산업기술보호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동향과 정보, 법률·정책·제도 안내 및 지원사업 홍보 등을 위해 산업보안 정보도서관(www.is-portal.net)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유출·침해 분쟁을 돕기 위한 산업기술 분쟁조정 지원제도, 산업기술이 침해·유출시 사후구제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 확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보안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3)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기술보호 강화 추세 등 변화하는 기술보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보호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2~'24)을 수립할 예정이다.

2. 수출통제체제 대응

기술안보과 사무관 이성민

(1) 개요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불을 상회하는 수출대국으로 발돋움하며 글로벌 교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가 되었다. 시장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 교역은 제한없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무기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품, 기술 등이 소수 무장세력이나 우려국가(concerned countries)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 세계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킨다는데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기술은 그 속성상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생산방법 등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도 기술이전이나 학습 등을 통해 전수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만약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 및 관련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자 한다면 국가간 교역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제사회는 재래식 무기, 핵무기,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의 확산을 통제하는 협의체제를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로 각각 구성하였고, 무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 및 부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괄적으로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하여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 등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게 되었다.

〈표 7-9〉 4대 수출통제체제 개요

체제명	통제분야	설립(韓가입)	회원국	특이사항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무기	'96년('96년)	42개	MAST 민감기술 관련성 高
호주그룹(AG)	생화학무기	'85년('96년)	43개	러시아 미가입(他체제 모두 가입)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87년('01년)	35개	-
핵공급그룹(NSG)	핵무기	'78년('95년)	48개	중국이 가입한 유일한 체제

수출통제는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고, 외교측면에서는 기업의 국제 거래가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경제측면에서는 교역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첨단물자 및 기술의 이전을 원활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수출통제제도의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또한, 민감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 또는 거부에 대한 정보가 회원국간 공유되어 전 세계 공급망 시장에서의 안전무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2) 수출통제체제별 수출통제 현황

현재 수출통제 대상품목 약 1,700개를 국제체제별로 분류하면 바세나르체제에서 관리하는 품목 수가 약 1,000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바세나르체제는 이중용도 품목과 군용 물자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용도 품목으로는 재래식 무기의 개발·제조·이용을 위한 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전자, 해양, 항공 추진장치 등이 있다. 또한 통제대상 군용물자 품목으로는 폭탄, 탱크, 항공기, 군함, 총기 및 그와 관련 기술 등이 있다. 구체적인 품목 명칭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10〉 기술분야별 전략물자 해당품목

구분		전략물자 해당품목
이중용도 품목 통제리스트	Cat 1 신소재	알루미늄 파이프, 티타늄 튜브 등 금속 합금, 텅스텐 분말, 알루미늄 분말, 탄소섬유 등
	Cat 2 소재가공	베어링, CNC 선반, 밀링머신, 연삭기, 방전가공기, 표면층착장비, 치수 측정기, 로봇, 유동성형기 등
	Cat 3 전자	집적회로, 반도체웨이퍼, 축전지, 리튬전지, 신호분석기, 네트워크분석기, 주파수변환기, 반도체 장비 등
	Cat 4 컴퓨터	디지털컴퓨터, 광섬유 통신케이블, 무선방향탐지기, 전파방해장치, 침입 탐지시스템 등
	Cat 5 통신/정보보안	네트워크 서버, 통신장비, 무선영상수신장비, 교환기, 광통신케이블, 정보 보안장비, 집적회로 등
	Cat 6 센서 및 레이저	수심측량기, 지층탐사기, 음향송수신기, 광센서, 열화상카메라, 지층탐사 장비, 레이더 시스템 등
	Cat 7 항법/항공전자	가속도계, 위성항법시스템, 관성시스템, 자이로스코프, 진동장비, 항해 장비 등
	Cat 8 해양기술	잠수정, 수상선, 수중카메라, 수중로봇, 수중관측시스템, 추진 프로펠러, 펄프제트 추진시스템 등
	Cat 9 항공/추진장치	가스터빈엔진, 터보엔진, 진동시험장비, 로켓엔진, 무인항공기, 우주발 사체, 로켓 등
	Sensitive List	Cat 1 ~ 9 의 물자 중 중요도가 높은 민감물자
	Very Sensitive List	Cat 1 ~ 9 중 물자 중 중요도가 매우 높은 초민감물자
군용물자 품목 통제리스트	Item 1~22	활강무기, 탄약, 신관장치, 군용차량, 생화학 독성작용제, 최루가스, 방사성 물질,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무인항공기, 항공기엔진, 군용 영상장비 등

NSG 체제에서 관리하는 품목 수는 약 290개이다. 이중용도 품목으로는 산업용 장비(공작기계 등), 소재(알루미늄 합금 등),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펄프 등), 핵무기 기폭 및 측정장치 등이 있다. 한편 원자력 전용품목으로는 핵물질, 원자로, 중수 생산시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 등이 통제되고 있다.

AG 체제에서 관리하는 품목 수는 약 220개이다. 구체적인 대상품목에는 화학작용제 및 전구체, 생물작용제(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식물성 병원균 및 동물성 병원균, 이중용도 화학제조 시설, 장비 및 기술(열교환기, 증류탑, 펄프 등), 이중용도 생물장비 및 관련기술(발효조, 동결건조기) 등이 있다.

MTCR 체제에서 관리하는 품목 수는 약 210개이다. 구체적인 통제대상 품목은 Cat I (WMD 운반 가능한 미사일 및 관련 기술)과 Cat II (Cat I 구성품인 이중용도 물자)의 분류 체계에 의해 구분된다. 우선 Cat I에는 완성로켓시스템(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무인항공시스템(순항미사일) 등이 포함되며, 사거리 300km이상, 탑재중량 500kg이상인 것이 통제대상이다. 이러한 사양을 만족하는 Cat I 관련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제조설비 포함) 수출허가 시 수입국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한편 Cat II에는 완성로켓시스템 및 무인항공시스템(사거리 300km이상, 탑재중량 500kg미만), 터보제트엔진, 추진제, 항법장치, 비행제어, 환경 챔버, 레이더 등의 품목들이 포함된다.

(3) 수출통제 통제기준 개정 실적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품목 및 통제기준은 무기 및 관련 제조기술의 발달, 국가별 기술수준 격차 등을 토대로 국제체제 회원국 합의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특히 국제체제에서의 통제 대상 및 기준사양 개정은 국가별 경제 및 무역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품목별 기술·시장 분석 등을 통해 신중하게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국 기업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포함되면 정부 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어 불편하지만 반면에 비용과 노력을 들여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오히려 전략물자에 신규 추가하여 비회원국의 기술탈취를 어렵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처럼 통제기준 개정 효과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국내 산업계 입장을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19년에는 총 58건의 개정안건이 4대 수출통제체제에서 통과되었으며, 고성능 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 방안이 체제별로 논의되었다. 특히 바세나르체제에서는 전문가그룹회의와 기술실무회의가 개최되어 총 47건의 개정안건이 합의되었는데 미국은 최근 항공기용 가스터빈엔진 부품 생산 등에 활용되고 있는 3D 프린터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공작기계를

통제대상으로 정의하였고, 영국은 보안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는 포렌식 도구에 대한 통제를 추가하였으며 프랑스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개인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에 대한 통제를 추가하였다. 한국은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 및 관리 목적의 게이트웨이의 통제예외 범위를 각각 확대하여 민수용 품목의 수출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등의 경우 향후 무기개발에 전용가능한 차세대 첨단기술인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3D프린팅 등 신형기술에 대한 통제기준 도입을 적극 주장하였다. 한편 핵공급국그룹에서 합의한 통제품목 개정 안건은 없었으며, 회원국들은 미국 이란핵협상 탈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 밖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에서는 8건의 개정안건이 통과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합 사이클 엔진, 발사지원 장비, 추진기관 시험장비 등에 대한 통제기준이 명확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호주그룹에서는 총 4건의 개정안건이 합의되었는데 특히 한국은 다양한 화학장비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밸브의 호칭치수 통제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명확화하여 관련 업계의 일관된 수출관리 이행을 돕고자 하였다.

'20년에는 COVID19로 인해 대부분의 수출통제체제에서 대면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바세나르 체제,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회원국들은 대면회의를 통해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20년 안건들은 모두 합의되지 못하고 21년으로 이월되었다. 호주그룹의 경우 회원국들이 화상회의로도 통제여부를 합의할 수 있다고 결정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된 이행회의에서 5개의 안건에 합의하였는데 주요안건으로는 한국이 제안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및 미국과 영국이 제안한 노비축 전구체 등에 대한 신규 통제기준 추가 등이 있다.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위험, 대량살상무기의 살상력 증대로 인해 수출통제체제의 역할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고속성장하면서 수출허가심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통제 안건은 유사입장국 공조, 통제강화 반대 논리 발굴 등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핵심동맹국들은 무역강국으로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수출관리에 공조해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수출통제체제 논의에 참여하여 안건을 제출하고 안건별 통제여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출 통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몽골, 말레이시아, 시리아 등 비회원국의 수출통제 제도 소개 및 홍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신형 민감기술을 통제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적극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 분야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통제의 목적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안전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관련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함으로써 민감품목 비확산을 통한 국제평화와 지역안보 달성 및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을 균형감 있게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동일한 품목의 통제기준 개정에 대해서도 자국이 확보한 무기 제조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강화를 주장할 수도 있고, 신규 수출시장 확대 및 수출허가 비용절감 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국내 안보와 경제 관점에서 품목별 경제적 중요도, 기술 및 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FTA 활용 지원 및 국내 보완 대책

제1절 FTA 수출 활용 현황

활용촉진팀 사무관 천영중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 세계 57개국과 총 17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FTA 시장규모는 전 세계 GDP의 약 78% 수준이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74.6%에 이르렀다. 이러한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FTA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FTA 체결 상대국 내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FTA 네트워크 확충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FTA 수출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FTA 수출 활용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수출 활용률은 우리 기업이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FTA 특혜관세 대상품목의 수출액” 중에서 “실제 FTA를 활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액” 비율을 의미한다. 2020년도 FTA 수출 활용률은 74.8%이며, 협정별로 살펴보면 한·캐나다 FTA 수출 활용률이 95.4%로 가장 높고, 한·EU (87.2%), 한·미국(84.4%), 한·호주(80.9%), 한·EFTA(80.1%) 순이다. 반면, 한·중국(65.0%), 한·아세안(49.2%)의 경우 발효시기에 관계없이 다소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FTA 수출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이 관세당국 등 기관 발급 방식으로 수출당사자 자율 발급 방식에 비해 까다롭고, 가공무역 규모가 높은 원인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8-1〉 '20년도 협정별 수출 활용률(%)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전체
68.6	80.1	49.2	74.6	87.2	68.7	84.4	76.0	80.9	95.4	65.0	42.8	47.9	74.8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은 FTA 활용 전담인력 및 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대기업에 비해 수출 활용률이 낮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FTA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이 점차 상승 추세에 있으며, 2018년 60.1%, 2019년 60.3%, 2020년 62.1%로 상승하였다.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FTA 수출 활용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대기업과 활용 격차가 축소되도록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지원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8-2〉 '20년도 협정별/기업규모별 수출활용률(%)

구분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전체
대기업	86.9	94.9	58.8	80.4	92.5	95.5	91.8	81.0	87.9	99.2	71.1	53.0	75.7	83.6
중소중견	53.9	58.0	42.4	67.0	78.7	35.1	69.8	69.0	62.5	70.3	57.2	36.5	19.4	62.1

산업별 FTA 수출 활용률은 기계류(85.5%), 광산물(77.2%), 화학공업(72.0%), 플라스틱·고무(69.6%) 등 대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생활용품(61.9%), 농림수산물(54.7%), 섬유류(50.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8-3〉 '20년도 산업별 수출활용률(%)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	플라스틱고무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	기계류	전기전자	잡제품	전체
54.7	77.2	72.0	69.6	50.6	61.9	63.8	85.5	67.6	46.8	74.8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이 제공하는 FTA 활용 통계자료를 협정별·기업규모별·산업별로 분석하여 중소중견기업의 FTA 수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 2 절 FTA 활용촉진 지원 및 정부-민간 소통협업

활용촉진팀 사무관 서민경, 이춘, 양성국, 형명우
총괄기획과 사무관 김윤주, 김경래

1. FTA 활용촉진 지원

(1) FTA 활용 맞춤형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네트워크 확대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FTA 콜센터 1380을 통한 상시 상담, FTA 현장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한·중 FTA 특화 차이나데스크 운영, 원산지 제3자 확인사업, 원산지 관리시스템인 FTA-Korea(제조업 원산지관리) 및 FTA-Agri(농업 원산지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확대, FTA 통합 플랫폼 운영 등이 있다.

FTA 콜센터 1380은 FTA 활용과 관련한 전문상담을 위해 FTA종합지원센터 내에 2013년 6월 개통 되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0을 누르면 품목분류, 협정문·품목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정보 등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2020년에는 FTA 콜센터 1380을 통해 총 25,827건(일평균 102.9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문의사항별로는 원산지 증명서 작성(35.9%), 품목분류/관세율 문의(21.7%), 인증 수출자 문의(8.6%) 순이다. 업종별로는 화학/화장품(13.0%), 기계(15.5%), 철강/금속(6.0%) 순이며, 협정별로는 중국(20.6%), 아세안(14.6%), 미국(9.4%) 순으로 집계되었다. FTA 콜센터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그 간 지속적으로 상담 건수가 증가하여 왔으며 기능을 확대하여 FTA 활용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정보, 금융 수출거래지원, 애로 지원 상담 등도 통합 서비스 할 수 있게 고도화 하였고, 정책수요자가 보다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출지원 정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인터넷을 통한(www.fta1380.or.kr) 사이버 상담체계를 FTA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구축하여 기업의 FTA활용 애로를 전주기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기업들이 애로의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 FTA 활용 서비스 체계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컨설팅을 지원하는 FTA 현장컨설팅이 그것이다. 특히 2020년에는 지역 현장 중심으로 FTA 활용지원 컨설팅 체계를 재편하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내에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하여 한·중 FTA를 전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서에 필수인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수출협력업체의 부담 완화와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 2020년 1,015개사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를 검증 후 확인결과서를 발급하였다.

(2) FTA 활용 국내외 인프라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FTA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지역에서 2015년 북경, 상해, 청도, 청두(폐소)를 시작으로, 2016년 광저우, 톈진, 다롄 등 7개소에 FTA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신남방 지역에는 2016년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201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8년 태국 방콕, 인도 뉴델리, 2019년 필리핀 마닐라, 인도 첸나이 등 7개소, 중남미 지역은 2017년 콜롬비아 보고타(폐소), 2020년 멕시코 멕시코시티 등 2개소를 개소하였고, 2020년 영국 런던에 브렉시트 대응을 위한 한시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8개국 15개 FTA활용지원센터를 KOTRA 해외 무역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기 체결된 FTA를 홍보하고, KOTRA 파견직원(15명), 전담인력(17명), 현지 자문단(80명) 등 총 112명이 현지진출기업 및 국내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 지방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서 전국 16개 시, 도에 설치된 18개 지역 FTA 센터(세종센터 추가 개소, '20.2월)와 6개 권역(경기 남부, 경기 북부, 경북권, 경남권, 충청권, 전라권) 지역 차이나데스크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업 맞춤형 FTA 활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적인 인프라와 함께 FTA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 정보부족 해소 및 원산지 증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FTA Korea(KTNET) 등 원산지관리시스템 무료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FTA Korea 사용 기업 수는 23,204개사, 원산지 판정 및 서류발급 건수는 167,054건에 달하는 등 시스템을 통한 FTA 활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간 연계를 통해 원산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바, 2020년 기준 수출기업 44개사를 대상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원산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 편의기능 개선과 함께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비관세장벽 대응 컨설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다자간 무역협정 체결로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무역기술장벽(TBT) 등을 활용한 비관세장벽이 새로운 무역장애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TBT, 지재권 등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하였다.

2020년부터 FTA종합지원센터의 기업지원을 원산지 증명에서 해외인증,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하여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누구나 전화(☎ 국번 없이 1380) 또는 온라인(www.okfta.kita.net)으로 간단한 신청을 통해 수출 과정 중 발생하는 국가별·제품별 해외인증, 지재권 등 비관세장벽 애로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시상담 및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상담·컨설팅 외에 해외인증 획득 및 특허 출원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3개사의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13개사(해외인증 획득 10개사, 지재권 출원 3개사)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1년 3월 30일 FTA종합지원센터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TBT종합지원센터 간 수출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4) 전주기 FTA 플랫폼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FTA 관련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통합·관리하여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는 소통·환류 체계 '전주기 FTA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산업계의 FTA 관련 애로·건의사항이 통합·관리되지 않아서 정책반영과 기업의 애로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애로·건의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FTA 이행·개정 및 정부의 제도개선에 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플랫폼은 민간·유관기관·정부가 운영하는 FTA 기업애로 대응 창구*를 연계·DB화하여 기업과 정부가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기업애로·건의사항 처리과정을 FTA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시스템을 통하여 접속되는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은 정부와 유관기관의 담당부서에 이첩되어 처리과정이 모니터링·관리된다.

* (민간) FTA1380 (FTA종합지원센터), Trade Navi (무역협회), 주요 업종별 협·단체 (9개)
(유관기관) KOTRA 해외무역관, (정부) FTA강국코리아 (산업부), Know TBT (국표원)

정부는 이 플랫폼을 통해 FTA 이행·개정 및 제도개선 안건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은 신청한 애로·건의사항이 접수·이관·처리되는 단계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12월 16일 시스템 구축 완료 계기 홍보를 위하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FTA 활용 기업 및 FTA 활용지원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FTA 활용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강화 및 전주기 FTA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향후 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해 협·단체 설명회,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한 산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플랫폼 연계 채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 FTA 전문인력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 상경계열 대학생, 중소기업 수출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각 계층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FTA 활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①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출 실무와 FTA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FTA 전문인력 구인 애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5개교 102명의 규모로 시작하여 2020년에는 7개교 122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2021년에는 10개교 1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동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FTA 활용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각 해당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취업 연계까지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2년 연속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는 등 사업 초기임에도 그 성과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19년에는 교육 수료생의 취업률이 87%에 달했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고용 여건에서도 수료생 102명(대학진학 등 20명 제외) 중 80명이 76개 기업에 취업, 78.4%의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이는 '20년 직업계고 전체 졸업자 취업률 50.7%(교육부, '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20.11.2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수료생 채용에 참여한 기업수도 '19년 120개사에서 '20년에는 296개사로 크게 증가하는 등 관련 기업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표 8-4〉 '19~'20년 취업연계형 FTA 실무과정 수료생 취업률 현황

구분	수료생	대학 진학 등	취업자	취업률*	채용신청 기업수
'19년	102명	5명	84명(76개사)	86.6%	120개사
'20년	122명	20명	80명(76개사)	78.4%	296개사

* 취업률(%) = {취업자 / (수료생 - 대학진학 등)} × 100

② 대학 FTA 강좌 지원사업

FTA 대학강좌 지원 사업은 한·중 FTA, TPP 등 거대시장과의 FTA가 발효되면 FTA 활용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대학생의 FT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FTA 활용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하였다. 사업초기에는 FTA 강좌에 대한 대학 측의 관심제고와 저변확대에 주력하였다면, 2013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1. 강좌자립역량강화(책임교수역량강화, 전문가 Pool구축, 대학자립의지 평가 등), 2. 강좌 전문성 보강(표준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수준별·단계별 강좌, 현장연계 실습형 강좌 활성화 등), 3. 사업프로세스개선(전담기관지정, 평가 및 환류체계, 강사 운영 기준 명확화 등), 4. 사업운영 내실화(강좌운영 인프라 보강, 현장소통 및 홍보강화,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FTA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를 제고해 나가고 있다.

〈표 8-5〉 최근 5년간 대학 FTA 강좌지원 사업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운영대학수	24개 대학	20개 대학	14개 대학	16개 대학	20개 대학
개설강좌수	45개 강좌	44개 강좌	25개 강좌	28개 강좌	34개 강좌
수강생수	1,910명	1,764명	1,050명	988명	1,199명

③ FTA 활용 컨설팅 교육사업

또한, FTA 컨설턴트 양성사업은 코트라 등 정부유관기관에서 수출 및 FTA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컨설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다만, 2019년부터는 수출전문위원들의 대다수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교육 대상을 수출전문위원에서 중소기업 업무 담당자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서울에서만 개최하던 교육을 주요 지방 거점별로 분산 개최하여 지방에 소재해 있는 기업들도 수월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8-6〉 최근 5년간 FTA 컨설팅 교육사업 현황

(단위: 명)

구 분	FTA컨설턴트 (전문강사 포함)	중소기업 재직자	기타	합 계
2016	300명	-	-	300명
2017	437명	-	-	437명
2018	569명	-	-	569명
2019*	346명	473명	-	819명
2020	169명	479명	41명	689명

* 2019년부터는 교육 대상에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추가함

2. 정부-민간 소통협업

(1)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는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내 보완대책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25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2007년 5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발족되어 운영되다가 2008년 2월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2013년 3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4년 3월 위원회 명칭을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에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민간위원을 추가 구성하는 등 동 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뿐만 아니라 통상조약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개편하였다.

동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2명)을 맡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청 차관급인 정부위원과 경제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노동·농민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자 등 통상조약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2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2007년 6월부터 2021년 4월말까지 총 56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 등이 원활히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경제국과의 FTA가 마무리 되면서 FTA 체결지원과 관련한 심의 수요가 크게 악화되고 FTA의 성과평가, 제도개선 효과, 활용촉진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7년 11월 정부와 민간 간 긴밀한 소통, 분야별 실무협의, 정보공유 등을 위한 실무조직으로서 성과평가 분과, 제도개선 분과, 활용홍보 분과 등 총 3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2019년 2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FTA 활용 기업간담회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그 간 미국, EU, 중국 등 경제대국을 포함한 57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하여 FTA 시장규모가 GDP 기준으로 78%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반면 FTA가 확대된 만큼 국가별로 규정과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고충도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었다. 통상국내정책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2013년부터 FTA콜센터1380, FTA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애로상담, 현장 컨설팅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및 섬유·생활용품 등 영세 업종의 FTA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기존 지원과 병행하여 2016년 6월부터 업종별 FTA 활용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업종별 협·단체와 협력하여 기업의 FTA 활용 애로 파악 및 해소, 지원정책 안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에는 366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29회와 현장방문 7회를 실시하여 177건의 애로를 해소하였다. 2020년도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14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11회와 현장방문 5회를 실시하여 88건의 애로를 해소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간담회 참여기업(770개사)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비대면 온라인 애로조사를 실시(3~4월)하였으며, 이중 173개 기업이 응답하여 총 163건의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FTA를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철강업계를 시작으로 관심이 높은 기업·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3)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별 협·단체와 관계부처,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FTA 관련 이슈 및 정책을 공유하고, FTA 이행·활용 애로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상황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제 3 절 FTA 국내보완대책 및 이행상황평가

국내대책과 서기관 서장원
사무관 김민수

1. FTA 국내 보완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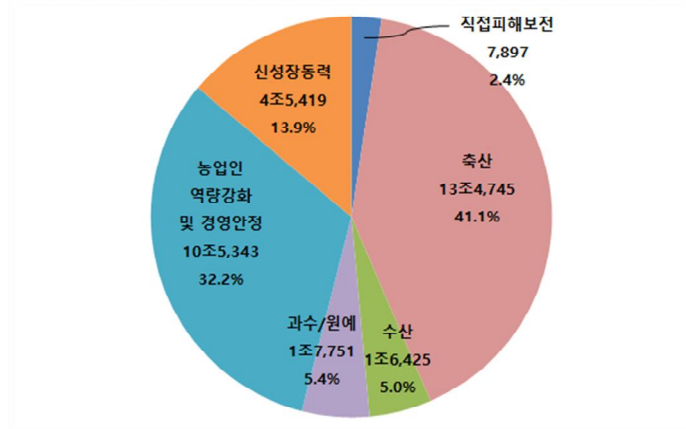
(1)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경과

FTA 국내보완대책은 FTA로 인한 취약산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FTA 체결과 함께 수립된다. 현재까지 한·미, 한·EU, 한·호주 및 캐나다, 한·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의 FTA 체결 시 수립된 국내보완대책을 추진 중이다.²⁹⁾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경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농업분야 체질개선 등을 위해 24.8조원 규모의 재정이 집행되었고,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기존에 축산업 발전대책 8.8조원에 2조원이 추가된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었다. 2014년 9월에 수립된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의 경우 기존 한·미 및 한·EU FTA 대책을 보완하고 축산·재배 분야의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총 피해액 수준인 2.1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2015년 6월에 수립된 한·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취약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FTA 활용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1.7조원의 보완대책으로 구성되었다. 총 40조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은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37.3조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그중 32.8조원이 집행되어 8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2)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집행현황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된 분야별 예산은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 등 직접피해보전 7,897억원(2.4%),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의 축산분야 13조 4,745억원(41.1%), 수산분야 1조 6,425억원(5.0%), 과수/원예분야 1조 7,751억원(5.4%) 등이며, 근본적 체질개선사업인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10조 5,343억원(32.2%), 신성장동력 창출 4조 5,419억원(13.9%) 등도 집행되었다.

29) 한·칠레 FTA 기금사업은 2004~2010년 까지 국고 기준으로 1조 2천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 한·미FTA 투융자계획(과수분야 경쟁력 제고)에 흡수되어 2010년에 종료됨. 2004~2007년까지 한·칠레 FTA 기금사업 예산은 7,027억 원임



〈그림 8-1〉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 집행실적(2008~2019년 합계, 억원)

2019년 FTA 국내보완대책은 2조 6,975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2조 2,682억원을 지원하여 84.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표 8-7〉 2019년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예산(A)	집행(B)	집행률(B/A)
합 계	26,975	22,682	84.1
직접피해보전	2,058 (농업 2,020+수산물 38)	48 (농업 10+수산물 38)	2.3
품목별 경쟁력 제고	21,268	18,986	89.3
- 축산분야	14,976	13,975	93.3
- 과수·원예분야	23	19	80.4
- 수산물분야	1,816	1,757	96.8
근본적 체질개선	3,649	3,648	99.97
-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1,988	1,954	98.3
- 신성장 동력창출	1,661	1,694	102.0

세부 내용을 보면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한 직접적 피해 보전을 위해 48억원을 지원하였다. 우선 농업분야에서는 2019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인 귀리, 목이버섯 두 품목에 대해서 직불금 10억원이 지급되었고, 폐업지원은 0.2억원을 지원하였다. 수산물분야의 경우 직접 피해보전에 총 38억원을 지원하였다. 직접피해보전에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27억원과 폐업지원제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수요 초과로 인해 폐업지원제를 전용하여 지원하였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산분야 22개 사업에 1조 3,975억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과수원에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3개 사업에 19억원, 수산물 가공인프라 및 수출확대 등 수산분야 19개 사업에 1,757억원 등이 지원되었다. FTA 국내보완대책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성과분석 보고서³⁰⁾에 따르면 이러한 2019년도 품목별 경쟁력 제고사업의 추진결과,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으로 인한 농가 경영안정, 친환경 농축수산업의 확산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¹⁾

농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13개 사업에는 3,648억원이 지원되어 신규농업인력 육성,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경영안정화, 종자산업육성, R&D 투자확대, 농식품수출 확대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발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 육성에 기여³²⁾하였으며, 신규농업인력 육성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예 농업 인력 육성에 기여³³⁾하였고,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³⁴⁾ 등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자산업 육성 정책은 농업인의 종자 개발에 따른 종자 로열티 부담 경감, 국내 종자산업 인프라 구축³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식품수출을 촉진하고자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신규거래선 발굴, 맞춤형 수출정보제공, 해외 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하여 우리 농식품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에 기여하였다.³⁶⁾

(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30) 「2019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2020.5, 농식품부) 및 「2019년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2020.5, 해양수산부)

31) 구체적인 사례로 축산기술보급 정책의 시행으로 한우 1등급 출현율(%)이 54.0('08)→63.1('10)→65.0('14)→69.3('16)→72.0('17)→72.9('18)→73.9('19)로 증가하였고, 사업수혜농가의 연간 모든 두당 출하두수(MSY)는 2017년에 17.4두로 전년 평균 모든 두당 출하두수(16.3두)보다 6.7% 증가하였으며, 젖소 두당 산유량(톤)도 10.1톤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함.

32) '발작물 경영공동경영체 품목 생산량(출하량) 증가율'은 2019년 8.9%로 목표(7%)를 1.9% 초과 달성함.

33) 한·뉴질랜드 양국간의 농업분야 청소년 및 전문인력 교류 수혜자 대상 '어학연수 만족도'는 2019년 91.5점이며, 참여자의 88.0%가 어학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

34) '임대 농기계 이용농가 수'와 '농기계 이용률'은 각각 27만 6천 호, 12.8일 /대로 목표(27만5천호, 12.8일/대) 대비 높은 실적을 나타냄

35) 2019년의 '국산 품종 보급률'은 전년대비 딸기 1.0%, 버섯 1.1%, 과수 0.5%, 화훼 2.1% 상승하였고, '기반 구축 사업지구의 씨감자의 보급량'은 2019년에 2,978톤으로 전년(2,722톤) 대비 9.4% 증가

36) '농식품 수출액'은 2019년 70.3억 달러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대일본 경제 교류 위축에 따른 전체 수출 감소('18년 6,049억 → '19년 5,424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전년(69.3억달러) 대비 1.5%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목표(71억달러)를 99.0% 달성함. 또한, 'OECD 상위 5개국 농식품 수출액 평균 대비 우리 농식품 수출액'은 7.9%로 목표치(7.8%) 대비 0.1%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동 기금은 2015월 11월, ‘국회 여야정 협의체’가 ‘국회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자유 무역협정(FTA)’ 등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때 당시 논의되던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도입한 민간 기금이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 수혜산업의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여 농어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12년 6월 발의되었으나 기술적·법리적 한계,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의결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직전인 2016년 4월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3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FTA농어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동 관련 법률 개정안은 2016년 6월에 일부수정 발의되었고 2016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공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농어업·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금의 설치 근거, 운용 및 출연 주체, 조성액 목표 및 부족시 정부의 필요조치, 사업용도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 추가 등
- 조세특례제한법 : 기금에 대한 출연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10%)

2017년 3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업 관계자, 국회의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전담하여 관리·운용할 상생기금 운영위원회 및 운영본부를 출범시켰다.

상생기금 운영위원회 및 운영본부 출범 후 2021년 4월 현재,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총 1,228억 1,828만원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조성하였다.

조성된 상생기금은 △정주 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사업(428.1억원),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의 공동협력사업(187억원),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133.3억원), △농어업인 자녀 대상 교육·장학사업(34.1억원), △농협 발행 상품권 사업(25.4억원) 등 에 총 807억 9,079만원을 지원하였다.

2. FTA 이행상황평가

(1) 법적 근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해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동 법률은 통상조약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국민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그 체결 절차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17일에 발효되었다.

통상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이행상황평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②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③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④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이행상황평가는 통상조약 발효후 5년마다 실시하는데, 동 법률 시행(2012년 7월 18일) 당시 발효후 5년이 경과한 통상조약에 대해서는 1회 평가하며, 그 외에는 발효후 5년, 10년마다 총 2회 이행상황을 실시한다.

(2) 추진 현황

2021년 3월 말 기준 총 9건의 FTA에 대한 이행상황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되었고,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 홈페이지(www.prism.go.kr)에 공개되어 있다.

9건의 평가 FTA는 다음과 같다. 우선 1회 평가 대상은 총 4건으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한·아세안 FTA이다. 2회 평가 대상은 기타 기체결 및 향후 체결될 통상조약이다. 현재까지 2회 평가 대상 중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총 5건에 대한 이행상황평가가 이루어졌다. 2020년에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인도 CEPA(2회차)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결과는 2021년 상반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총 6건의 FTA 이행상황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바, 한·EU 및 한·페루 FTA는 2회차 평가를 실시하고,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FTA는 1회차 평가 대상이다.

(3) 주요 내용

이행상황평가 보고서에는 교역 및 투자 동향, FTA로 인한 교역 및 투자 효과, 성장·후생·생산·고용 효과 등을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정량적으로 추정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2020년 평가대상인 인도·호주·캐나다부터는 주요 품목별 수출입 변동 원인과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하 표에서는 그간 실시됐던 이행상황평가의 경제적 효과를 정리하였다.

〈표 8-8〉 FTA별 경제적 효과*

구 분	수출효과	수입효과	투자효과		성장	후생	생산	고용
			對상대국	對한국				
한·칠레(9y)	15.6% (2.9억불)	13.1% (3.6억불)	10.5% (2백만불)	-	0.04%	2.85억불	0.5조원	△436명
한·싱가포르(8y)	18.9% (21.5억불)	13.1% (5.4억불)	8.7% (0.4억불)	20.4% (0.9억불)	0.06%	4.51억불	3.6조원	19,399명
한·EFTA(8y)	47.2% (5.6억불)	43.2% (12.4억불)	38.5% (1억불)	79.2% (0.6억불)	0.29%	17.4억불	7.4조원	37,782명
한·ASEAN(7y)	20.9% (51.8억불)	11.1% (20.7억불)	17.6% (39.3억불)	-	0.20%	25.2억불	7.9조원	45,731명
한·인도(5y)	20.8% (15.1억불)	13.7% (4.7억불)	18.8% (0.5억불)	61.2% (0.1억불)	0.05%	5.66억불	2.4조원	11,872명
한·EU(5y)**	86.1% (27.2억불)	22.7% (46.4억불)	-	-	0.14%	26.4억불	578억원	9,983명
한·페루(5y)	37.1% (3억불)	34.1% (2.8억불)	28.8% (1.2억불)	-	0.006%	1.79억불	3.3조원	3,618명
한·미(5y)	36.0% (66.3억불)	47.4% (26.6억불)	35.0% (9.9억불)	29.3% (3.2억불)	0.31%	54.7억불	11.8조원	57,463명
한·터키(5y)	41.2% (8.5억불)	71.0% (1.2억불)	-	-	0.01%	2.3억불	1.85조원	9,178명

* 수출 및 수입효과는 수출입증가분에서의 FTA 영향, 성장·후생·고용효과는 누적기준, 생산효과는 FTA 미체결과과의 비교시 변화값

** 수출입 효과의 비중은 연평균 수출입증가액 대비 FTA에 의한 증가를 의미하는데, 한·EU FTA의 경우는 수출 감소가 발생하여 미체결시 예상되던 금액(△31.6억불)의 86.1%를 상쇄

제 4 절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및 통상피해 지원

총괄기획과 사무관 진승덕

1.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1) 제도 개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먼저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를 무역조정 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지원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과거 한·미 FTA 추진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었다. '06년 4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07년 12월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지원대상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한·EU FTA 및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요건인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감소 피해를 2011년 9월에 25%이상에서 20%이상으로, 2012년 1월에는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업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융자금리를 기존 정책자금 기준변동금리 2.3% + 기업별 가산금리에서 고정금리 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기존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시설자금 8년(거치 3년)에서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시설자금 10년(거치 5년)으로 연장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기업의 경우, FTA 이행으로 인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이상 감소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무역조정 지원 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기업은 시설자금 45억원, 운전자금 5억원의 한도 내에서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1억 2천만원 한도로 상담(컨설팅)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5%이상 감소한 기업의 경우에도 4천만원 한도로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자동으로 무역조정지원 근로자가 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는 전직·재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직한 근로자의 경우 취업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어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지원 실적

산업부는 지난 '08년부터 '20년까지 총 260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해 왔다. 특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정기업수를 '18년 28개사에서 '19년 38개사, '20년에는 49개사로 크게 증가하였다.

'08년부터 '20년까지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및 시설투자금 용자는 총 375건, 8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진단과 경쟁력회복을 위한 컨설팅은 총 13.4억원을 지원하였다.

|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사례 |

❶ A사: 금속주물(용자 및 컨설팅 지원)

- 산업기계에 사용되는 금속부품을 주물 제작하는 A사는 한중FTA 영향으로 '16년 상반기 매출액 30%, 직원수 12.5% 감소
- 이에, '17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용자지원으로 단기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컨설팅을 토대로 해외 진출, 기술개발 추진
- 매출액 '17년 24억 → '19년 30억으로 증가

❷ B사: 섬유(용자지원)

- 모직물 원사를 생산하는 B사는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수입물량 증가로 '17년 하반기 매출액 21%, 직원수 5% 감소
- 이에, '18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용자지원을 받아 특수 원사 제품 개발 및 기계설비 투자해 경쟁력 강화 추진
- 매출액 '18년 23억 → '19년 30억으로 증가, 신규인력 7명 채용

❸ C사: 에나멜 동선(용자지원)

- 에나멜 동선을 주로 생산하는 C사는 한-ASEAN FTA 이후 수입 물량 증가로 '16년 매출이 15% 이상 감소
- 이에, '17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용자지원을 받아 기존 개발중이던 수출용 고압 케이블 개발에 성공
- 매출액 '16년 71억 → '18년 94억으로 증가, 신규인력 6명 고용

❹ D사: 차량용 볼트·너트(용자 및 컨설팅 지원)

- 차부품용 볼트·너트를 생산하는 D사는 한-EU FTA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하며 '13년~'14년 매출이 35% 이상 감소
- 이에, '15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용자 및 컨설팅 지원을 받아 자동차 부품 경량화 연구개발 추진·성공
- 매출액 '13년 50억 → '19년 76억으로 증가

2. 통상피해 지원

(1) 추진 배경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국가간 무역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적·물적 이동이 제한되며 무역·통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FTA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FTA로 인한 피해로 제한되어 있어,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국과 EU의 경우에도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을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 변화 등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20.2, 총리 주재)에서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산업부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주요내용

① 지원근거 신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거법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 추진한다. 평상시에는 FTA 피해를 지원하는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통상피해를 추가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 규정

주된 피해의 원인이 ① 세계적 경제·금융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②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③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④ 국가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 ⑤ 그 밖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중 하나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매출·생산이 5% 이상 감소한 기업을 지원한다. 다만, 통상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해 산정기간, 매출·생산 감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계부처 지원 연계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따른 융자·컨설팅 지원과 근로자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통상조약국내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의 경영안정·고용유지·판로지원·원자재수급 등과 연계하여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범부처 지원 체계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내에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가칭 통상피해지원단)을 구성하여 통상피해 상황을 조사·검토하고 관계부처의 지원시책을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마련된 세부 지원방안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추진한다.

(3) 향후 일정

동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FTA조정법 법률개정과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통상조약국내 위원회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21년 중 FTA 조정법 개정을 시작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용

제 1 절 무역구제제도 개요 및 현황

무역구제정책과 최재혁 사무관

1. 개요

무역구제제도는 덤핑과 보조금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수입국의 방어수단이다. 미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처음 국내법에 도입하였으며 이후 GATT 및 WTO협정을 통하여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무역구제 제도는 WT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교역규모 축소, 공급망 붕괴, 수요 부진 등의 상황이 각국 수출기업 피해를 확대하고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특히, 특별시장상황(PMS), 불리한 가용정보(AFA), 환율 상계관세 등 다양한 조사 기법을 끊임 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반덤핑 위주로 운용해오던 조치의 범위도 최근에는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까지 확대·다각화하고 있다.

그간 무역구제를 적극 활용하던 국가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에서도 무역구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아세안의 조사개시 건수는 20년 48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나아가, 무역구제제도가 미흡하던 아세안의 국가들도 최근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아세안의 조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일부 국가에서만 행해지던 무역구제는 이제 신흥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무역구제는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전세계가 쌓아 올린 자유무역의 가치가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각국 간 무역구제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 제도 현황

이러한 무역구제에 대한 국제규범들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나아가 이들 협정들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이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등 국내법으로 법제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 덤핑방지관세제도와 상계관세제도 그리고 세이프가드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위반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표 9-1〉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구분	근거규정		비고
	국내법	국제규범	
반덤핑제도	관세법	GATT 제6조①항, ②항 WTO 반덤핑협정	협의
상계관세제도	관세법	GATT 제6조③항, 제16조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세이프가드제도	관세법 불공정무역조사법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불공정무역조사법	없음	광의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불공정무역조사법	없음	최광의

3. 한국 무역위원회

(1) 무역위원회의 법적 성격

무역위원회는 1986년 제정된 대외무역법 제37조에 의거하여 1987년 7월에 출범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 심의·판정 및 구제조치의 건의 등 불공정 무역조사법령상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9인의 무역위원회 위원들의 심리와 합의를 통해 의결하고, 이를 위원회 명의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절차에 따라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유무를 조사하고 판정하며, 불공정무역조사법 및 관세법의 절차에 따라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유무를 조사하여 판정한다는 의미에서 준사법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되 위원회의 각종 조사와 업무처리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기구로서 무역조사실을 둠으로써 독자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무역위원회 조직과 인력

① 무역위원회 구성

1990년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무역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위원 8명을 포함,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무역위원회의 위원은 산업·무역·통상 분야, 학계, 법조계 또는 회계 및 지재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질병, 기피·제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무역조사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27조 제2항은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재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 피해조사, 덤핑 및 보조금 조사, 불공정 수출입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무역조사실을 두고 있다.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조사실 업무를 총괄·관장하는 직위로서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개방형 공무원으로 보하며, 3~4급 과장급 4명과 기타 실무자로 4~5급 2명, 5급 18명, 6급 10명, 7급 6명 등 총 45명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절 반덤핑,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산업피해조사과 서기관 송병철
사무관 구교영
덤핑조사과 사무관 한정선
불공정무역조사과 주무관 이은주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공정·투명한
무역을 위한 제 9 장

제 10 장

1. 덤핑방지관세 제도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범위 내에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GATT 제6조를 토대로 만들어진 반덤핑협정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청, 조사절차, 덤핑판정의 요건, 증거, 부과방법 등 실체적·절차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국내법적으로는 산업피해구제법 및 관세법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덤핑방지관세는 다음의 3가지 요건 즉, ① 수입물품에 덤핑행위가 존재하고, ②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야기되며, ③ 덤핑행위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간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덤핑이란 수출국내에서 정상적 거래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수입국으로 넘어가는 수출가격이 더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덤핑여부 결정을 위해 수출 가격과 비교되는 기준가격으로서 당해 물품 공급국의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수출국내 판매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즉,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않거나, 특수한 시장 상황 또는 소규모 판매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생산비 + 합리적 관리비, 판매비 등 비용 + 정상이윤)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한다.

수출가격은 수출국의 공장도가격 기준 수출가격(조정된 수출가격)을 사용한다. 그러나,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 등으로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입자가 최초로 독립된 구매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구성수출가격을 대신 사용한다.

〈표 9-2〉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조정요소

정상가격	덤핑가격	
	수출가격(EP)	구성수출가격(CEP)
수출국 통상거래가격	한국으로의 수출가격	한국내 재판매가격
• 운반비(-) - 운송비, 보험료, 창고료 등 • 판매조건의 차이(-) -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품질보증비, 은행수수료 등	• 운반비(-) - 운송비, 보험료, 창고료 등 • 판매조건의 차이(-) -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품질보증비, 은행수수료 등	• 운반비(-) - 운송비, 보험료, 창고료 등 • 판매조건의 차이(-) -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품질보증비, 은행수수료 등
-	-	• 현지법인의 관련비용(-) - 현지법인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판매관리비, 관세·통관·운송부대비
• 과세상의 차이 - 관세환급(-) • 거래단계 차이(±) • 물리적 특성차이(±)	-	-
조정된 정상가격 (순 공장도가격 기준)	조정된 수출가격 (순 공장도가격 기준)	조정된 수출가격 (순 공장도가격 기준)

한편,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정비교의 원칙이라 한다.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덤핑판정 시 통상적으로 모든 비교 가능한 거래에서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가중평균수출가격을 비교(A-A방식)하여 덤핑을 판정하나,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거래비교단계에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기도 한다(transaction to transaction, T-T방식). 나아가 예외적으로 가중평균에 의한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에 의한 수출가격의 비교를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구매자, 지역, 시기별로 수출가격의 양태가 다양하고 조사당국이 A-A방식 또는 T-T방식에 의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되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덤핑차액이 매우 작거나(미소마진, de minimis dumping margin) 덤핑수입량이 소량이라고 결정하는 경우(미소물량, negligible imports volume) 즉, 최소허용기준인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WTO반덤핑협정 및 관세법시행규칙에서는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 또는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출물량이 3% 미만이고 수출물량이 3%미만인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의 합계가 7%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을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실질적 피해발생이 우려되거나, 국내산업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실질적 피해는 수입제품 가격이 동종제품의 가격보다 낮으며, 이와 같은 가격 차이로 국내산 제품 가격의 인하 또는 상승억제를 초래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가동률, 재고 등의 주요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실질적 피해의 우려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해야 한다. 즉, 덤핑수입의 현저한 증가, 수출자의 공급능력 증가, 국내가격의 현저한 하락, 수출국내 재고상황 등을 종합하여 그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은 국내산업의 투자, 가동률, 손익, 시장점유율 등에서의 정상기대치 및 실제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인과관계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유발되어야 하며, 조사당국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근거로 입증해야 한다. 조사당국은 덤핑수입 이외의 다른 요인이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해서 이들 요소를 덤핑수입의 원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덤핑가격으로 팔리지 아니한 수입상품의 물량 및 가격, 국내의 수요감소나 소비행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제한적인 무역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과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 등이 있다.

한국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1987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78건의 반덤핑 조사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131건(73.6%)의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품목별로는 화학 45건, 종이·목재 22건, 기계·전자 13건, 제철·금속 19건 분야 등에 주로 집중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88건, 일본 55건, EU 32건, 미국 29건 순서이다.

〈표 9-3〉 연도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단위: 건)

구 분		'87~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반 덤 핑	전체*	60	11	7	5	4	6	8	3	6	7	6
	원심	42	4	7	3	3	3	6	2	1	2	1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반 덤 핑	전체*	5	5	10	4	5	7	6	8	5	178	(131)
	원심	2	3	3	3	2	3	2	2	2	96	(65)

* 당해연도 신청 기준, () 안은 조치건수

〈표 9-4〉 국가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단위:건)

구분		중국	일본	미국	EU	대만	인도	말련
조사신청		88	55	29	32	19	19	16
조사중		4	-	-	-	2	-	-
긍정 판정	조치중	11	5	2	4	2	4	2
	조치완료	57	39	18	14	12	12	9
기타 *		16	11	9	14	3	3	5

구분		인니	러시아	싱가폴	태국	캐나다	기타	계
조사신청		14	8	10	14	6	17	327
조사중		1	-	-	1	-	1	9
긍정 판정	조치중	1	-	1	3	-	4	39
	조치완료	6	5	7	4	5	2	190
기타 *		6	3	2	6	1	10	89

* 기타: 부정판정, 신청철회 및 신청기각 포함

〈표 9-5〉 품목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단위:건)

구분	화학	기계/전자	종이/목재	섬유	제철/금속
조사신청	59	21	33	13	25
조치 중	7	1	5	-	6

구분	유리/도자	기타	계
조사신청	11	16	178
조치 중	2	-	21

2. 상계관세 제도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계관세제도는 GATT 1994 제6조, 제1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국제법적 근거를 두며, 이와 함께 국내법인 산업피해구제법 및 관세법의 규정을 기초로 운용된다.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행위가 존재하고,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야기되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행위와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두번째와 세번째 요건은 덤핑방지관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GATT 제16조는 보조금의 개념을 모든 형태의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은 이를 구체화하여 ① 자국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 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있고 ② 재정적 기여에 의해 부여되는 혜택이 있으며 ③ 특정성이 존재할 경우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제1조는 재정적 기여를 4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접적 자금이전(무상이전, 대출, 지분참여 등) 또는 잠재적 자금이전(대출보증 등), 둘째, 정부세입 포기(세액공제 등), 셋째, 정부에 의한 SOC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구매, 넷째, 정부가 위와 같은 지원을 민간기관을 통해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런 관행이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은 혜택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제14조에서 보조금 유형별 혜택과 보조금액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지분출자가 국내민간 투자자의 통상적 투자관행과 불일치하는 경우, 둘째, 정부대출이 기업의 상업적 차입과 차이가 있을 경우, 셋째, 정부의 대출보증이 정부보증이 없을 경우의 상업적 차입과 차이가 있을 경우, 넷째, 정부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또는 재화구매가 적절한 수준 이하의 보상을 받거나 구매가 적절한 수준이상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혜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정성은 보조금이 특정 기업,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게 지원되는 경우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금지보조금은 무조건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은 보조금의 종류를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수입물품 대신 국산물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내산업 피해의 입증 없이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은 금지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말한다. 상계가능보조금은 타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 즉, 산업피해, 관세양허의 무효화 또는 침해, 타회원국의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 등을 초래하므로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이 없어 상계조치를 취할 수 없는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이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더라도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었으나, 잠정적용 규정(WTO 보조금협정 제31조)의 적용기간이 199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모두 상계관세부과의 대상이 되었다.

〈표 9-6〉 보조금의 종류 및 의무사항

구분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내용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의무	원칙적 사용금지 - 유예기간내 철폐*	사용가능	사용가능
규제	- WTO DSB 제소 및 대응조치 - 피해를 입은 국가는 상계관세 부과 가능	상대방 국가에 실질적 피해를 줄 경우 - DSB 제소 및 대응조치 - 상계관세부과 가능	상계관세부과 불가능
WTO 통보	WTO협정 발효후 3월이내 통보	매년 6월 정기통보	

* 유예기간내 철폐

- 수출보조금 : 3년(개발도상국 8년, 최빈개도국 적용예외)
- 수입대체보조금: 3년(개발도상국 5년, 최빈개도국 8년)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은 개발도상국과 시장경제로의 전환국에 대하여 금지보조금 철폐 기간에 대한 우대제도를 두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보조금의 철폐 기간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8년, 수입대체보조금의 철폐기간은 5년으로 연장 하였으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과정 (transformation into a market economy)에 있는 회원국은 금지보조금 지급계획을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7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규정하였다.

3. 세이프가드 제도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산업으로 하여금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긴급대응조치를 말한다. 공정 무역관행에 의한 정당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 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한 특징이 있다.

WTO 체제 하에서 회원국의 세이프가드조치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은 GATT 제19조와 UR 협상 결과에 따라 1994년 제정된 WTO 세이프가드협정이다. GATT 제19조는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GATT협정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협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의미에서 면책조항 또는 도피 조항이라고도 일컫는다. 이 도피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종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선별적 적용 가능성 여부, 세이프가드조치와 유사한 회색지대 철폐, 심각한 피해의 판정기준, 조사절차의 투명성 등에 관하여 UR 협상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의 세이프가드 협정이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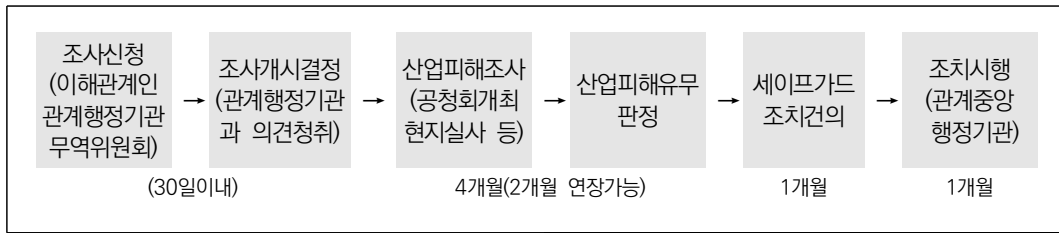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GATT/WTO 협정 외에도 불공정무역조사법 제3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와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24조(세이프가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 관세법 제65조 내지 제68조와 동법 시행령 제87조 내지 제90조(긴급관세)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둘째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셋째는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이다.

먼저, 첫번째 요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 사실이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란 관세양허 이후 발생한 상황으로서, 양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측하였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을 말한다.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수입증가는 수입수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 뿐 아니라,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포함한다. 즉, 수입 수량이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할지라도 국내생산이 그 이상으로 감소폭을 보일 경우, 상대적 수입증가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두번째 요건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하였거나, 이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여기서 “심각한 피해”는 국내산업에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며, “심각한 피해 우려”는 그러한 피해의 발생이 명백히 급박한 상황을 말한다. 국내산업 피해의 유무에 대한 판정은 이러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위하여 조사당국은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관련 요인들, 특히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손실, 고용, 재고 및 시장점유율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한편, 피해의 우려 여부에 대한 검토에서는 그러한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수입증가가 피해발생의 원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입증가 추세와 피해지표의 악화 추세간의 상호연관성이 존재하거나, 수입품 가격에 의해 국산품 판매가격이 영향을 받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증가 이외의 다른 요인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러한 피해를 수입증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한다.



〈그림 9-1〉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198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세이프가드는 총 34건이 제소되었고, 이 중 22건(64.7%)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었다. 1994년 이전에 25건이 제소되었고, 1995년 WTO 출범 이후 9건이 제소되었다.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19건(55.8%)으로 가장 많고, 기계, 화학제품 순이다.

〈표 9-7〉 연도별 세이프가드 현황

(단위: 건)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접수	25	1	3	-	1	1	-	1	1
신청철회	7	-	-	-	-	-	-	-	-
조사불개시	1	-	-	-	-	-	-	-	1
긍정판정	16	1	1	1	-	1	1	1	-
부정판정	-	1	1		-	-	-	-	-

구분	'03~'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접수	-	1	-	-	-	-	-	-	-	34
신청철회	-	1	-	-	-	-	-	-	-	8
조사불개시	-	-	-	-	-	-	-	-	-	2
긍정판정	-	-	-	-	-	-	-	-	-	22
부정판정	-	-	-	-	-	-	-	-	-	2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쟁 원리와 거래 질서를 침해하여 경쟁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행위를 의미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및 제조·판매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한 물품의 수출입행위 등이 포함된다.

불공정무역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수출입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도덕한 행위 그 자체로서 일종의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내의 관련산업에 손실을 초래하고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교역상대방에 대해 피해를 유발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손상 시키고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등 대외교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공정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동법 제4조 내지 제14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11조의3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1987년부터 2020년까지 불공정 무역행위는 총 384건의 조사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38건(35.9%)에 대해 수입·제조 금지 등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유형별로는 지재권 침해조사가 241건으로 가장 많고, 원산지 표시위반 76건, 수출입 질서저해 65건 순이다.

〈표 9-8〉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신청현황

(단위: 건)

구분	'87~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지재권 침해	107	-	-	3	3	2	4	5	4	6	4	3	3
원산지 위반	41	-	1	3	3	6	4	-	1	-	-	1	2
허위·과장표시	-	-	-	-	-	-	-	-	-	-	-	-	1
수출입 질서저해	41	2	8	4	3	5	1	-	-	-	1	-	-
계	189	2	9	10	9	13	9	5	5	6	5	4	6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지재권 침해	6	10	5	8	7	7	9	12	8	9	13	3	241
원산지 위반	3	2	3	1	-	3	-	-	1	1	-	-	76
허위·과장표시	-	-	-	-	1	-	-	-	-	-	-	-	2
수출입 질서저해	-	-	-	-	-	-	-	-	-	-	-	-	65
계	9	12	8	9	8	10	9	12	9	10	13	3	384

〈표 9-9〉 지재권 유형별 신청현황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74	4	121	17
저작권	영업비밀	계	
17	8	241	

〈표 9-10〉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결과

제재	무혐의	관련기관 이첩	조사종결	조사중	계
138	105	40	97	4	384

1. 무역위원회 양자협력

무역규모 증대에 따른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는 주요교역국과 협력채널을 통해 연례적으로 양자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무역구제기관과 공동으로 무역구제 협력회의 등을 개최하고, 개도국 대상으로 조사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무역구제제도를 선진화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협력회의에서는 양국 무역구제제도 정책동향, 조치에 관한 정보 교환과 함께 상호 조사기법과 관행을 교류함으로써 양국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뿐만 아니라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피해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1) 중국

가장 먼저 협력채널을 마련한 중국과는 1998년 11월 한·중 양국정상의 ‘공동성명’ 후속조치로 종전의 중국 경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과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증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1999년 8월에 체결하면서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 매년 정례협력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총 20회의 협력회의가 이뤄졌으며,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로 인해 무역구제 이행위원회가 구성되어 2016년부터 FTA 이행위원회가 병행하여 5차례 개최되어 왔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FTA 이행위원회의 수석대표는 국장급으로 한국측은 무역조사실장, 중국측은 무역구제조사국장이 참석한다.

(2) EU

EU와는 2002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의 EU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방문을 계기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 EU집행위 무역구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EU 무역구제협력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이듬해인 2003년부터 매년 협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EU와의 협력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7차례 개최되었다. 이후 2011년 7월 한·EU FTA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2012년부터 이전의 협력회의를 FTA 협정에 따른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회의로 대체하여 개최하고 있다. 2012년 11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회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해당 작업반 회의는 총 6차례 개최되었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EU와의 협력채널을 통해 선진국의 무역구제제도를 습득하는 한편 전 세계적 최신 무역구제 동향을 파악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3) 베트남

베트남과의 협력회의는 2009년 10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간 MOU체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역구제 분야 협력회의를 개최한 데서 시작되었다. 2010년 4월 베트남에서 1차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11년 9월 2차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한국에서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한·베 공동위원회, 베트남경쟁청 공무원 대상 무역구제 교육연수 등의 계기를 통해 양국 간의 협력을 지속해왔다. 2009년 체결한 MOU가 기간 만료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2016년 7월 한국 무역위원회와 베트남 경쟁청 간의 새로운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 12월 양국 간 FTA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에 따른 무역구제 분야 이행위원회를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협력채널을 통해 양 국가 간 무역구제제도 운영에 대한 양자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베트남 한국기업에 대한 제3국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양 국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인도

2017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간 체결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 MOU의 이행을 위하여 정례적인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수석대표는 국장급으로 한국측은 무역조사실장, 인도측은 무역구제총국장이 참석한다. 그 외에, 2018년 9월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에서 인도측은 조사기법의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희망하며 세미나 개최를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2019년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對한국 수입규제 2위인 인도와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그를 통해 보다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사당국간 협력을 지속·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미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는 2013년 무역위원회 위원장 방미를 계기로 양국 기관간 실무자급 기술협의회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한국 무역위원회 조사관들이 미국 ITC·DOC를 직접 방문하여 무역구제 정책·조사기법·관행 관련 정보교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 11월 처음 개최하여 20년까지 6차례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개최수요가 있을 경우에 개최하며, 통상실 주관으로 개최하고 한국 무역위원회는 실무자급이 참석하여 조사실무 관련 정보를 보조한다.

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한국 무역위원회는 선진 외국의 무역구제제도를 연구하여 우리 무역구제제도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매년 무역구제 선진국의 조사기관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왔다. 이는 2001년부터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세계 무역구제 동향과 최근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세계 무역구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이 포럼은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각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조사관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WTO로부터 엠블럼 사용 등의 지원을 받아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나아가 2015년에는 설립 20주년을 맞은 WTO와 공동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동 행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특히, 무역위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개최된 2017년도 서울국제포럼에는 총 14개국에서 해외무역구제기관 대표 15명과 10여명의 조사관들이 참여하였다. 해당 포럼에서는 ‘법·규범에 따른 무역구제조사 절차 : 이행 및 도전’, ‘2017~2020 무역구제 전망 : 우선순위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참석자간 논의를 진행하였다.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주요 참석 기관은 WTO, 미국 상무부(DOC)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EU 통상총국, 중국 상무부,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인도 상공부,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등으로 무역구제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기관들이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WTO에서도 매년 포럼에 참석하여 해외 각국의 무역구제 기관장들과 세계 무역구제 동향 및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세계의 무역구제 기관뿐만 아니라 무역구제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원)생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논의와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표 9-11〉 역대 포럼주제

년도	주제
'03년	무역구제의 동향과 전망
'04년	무역구제, 각국의 경험과 향후 방향의 모색
'05년	일몰재심
'06년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
'07년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 ①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② 무역구제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 현황 ③ 향후 무역구제제도의 방향
'09년	세계 금융 위기와 무역구제 ① 세계금융 위기와 무역구제 ② 반덤핑 동향 ③ 상계관세 대응
'10년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향하여 ① 미국, EU, 중국,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② 캐나다, 인도, 베트남의 무역구제제도 ③ 무역구제제도의 미래
'11년	최근 무역구제 이슈와 전망 ①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 ② 재심관련 이슈들
'12년	무역구제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① 세이프가드제도의 현황 및 재설계 ② 무역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13년	세계 무역구제의 발전과 전망 ① FTA 시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 전망 ② 상계관세 제도 운영동향과 향후방향
'14년	WTO와 FTA 무역구제제도의 조화와 미래 ① 거대 경제권 FTA와 무역구제 제도 ② 각 국의 무역구제 제도 운용 경험
'15년	WTO 20주년, 무역구제체제의 성과와 도전 ① WTO 무역구제시스템의 평가와 발전과제 ② 각 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영 경험 ③ 세이프가드 조치
'16년	①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 ② 반덤핑 리뷰
'17년	① 법·규범에 따른 무역구제조사 절차 : 이행 및 도전 ② 2017~2020 무역구제 전망 : 우선순위와 도전과제
'18년	① 주제(세션1) :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 ② 부주제(세션2) : 무역구제제도의 조사절차 및 관행개선
'19년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공정·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영

제 10 장

일본 수출규제 대응

동북아통상과 사무관 임수지
무역안보정책과 주무관 정유리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김효중

1.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표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은 대한민국으로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 발표내용으로는 첫째,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백색국가)에 포함된 대한민국의 수출관리상 분류를 재검토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3개의 특정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하여 포괄수출허가제에서 개별수출허가제로 변경한다는 것이었다. 3개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는 7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8월 2일 각의 결정 후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 불화수소는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식각(Etching) 및 세정(Cleaning)에 사용되며, 포토레지스트는 웨이퍼 위에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감광제에 해당, 불화폴리이미드는 폴더블 등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투명필름형태의 소재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실시한 것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사유를 주장하였다. 첫째, 일본 정부는 그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간 정책대화를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확인하였으나, 약 3년간 이러한 정책대화가 개최되지 않아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것이었다. 둘째,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통제제도가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 및 조직이 취약하다는 점을 규제강화 조치의 사유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세 가지 조치사유는 다음의 이유로 사실과 거리가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보를 교류해왔으며, 정책대화는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에도 여의치 않아 2019년 3월 이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양국 간 양해가 된 사항이었다. 둘째, 한국은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부처와 전문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수출통제를 관리하고 있어, 일본과의 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 정부는 공식 논평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조치의 부당성을 강력히 지적하는 한편,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의 원상회복을 촉구하였다.

2. 국내 대응체계 강화 및 국제공조(관계부처 합동 포함)

(1) 국내 대응체계 구축

① 관계부처 협의체 활성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가 가동되었다. 2019년 8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 계획'을 발표하였고, 8월 5일 100대 핵심 품목의 조기공급 안정화,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8월 28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혁신대책'을 수립하였다.

〈표 10-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응 계획 주요 내용

일시	주요 내용
'19.8.2	•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 발표
'19.8.5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19.8.28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혁신대책' 수립

② 산업통상자원부 내 對日 통상현안 대응단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내 각 실·국·간 유기적인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대외 기관들과 현황을 점검하면서 일본의 수출 통제에 따른 품목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2)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 지원

①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 지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영향, 정부 지원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20개 주요업종, 8개 지역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2019.7.29.~8.9)하였고,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가동(2019.7.22.~)하여 합동 현장애로 지원단을 구성, 기업 애로상담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표 10-2〉 일본 수출규제 업종별 설명회 주요 설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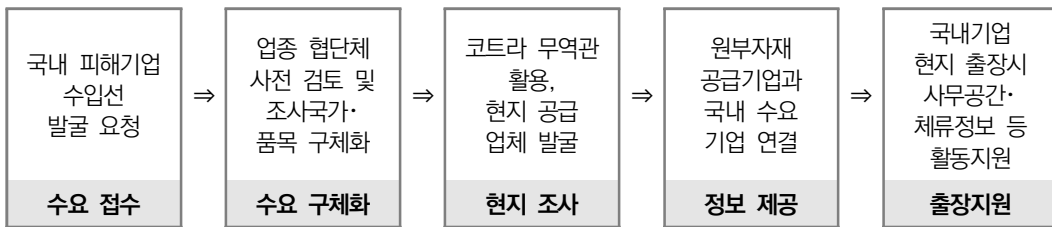
분 야	주요 내용
日 수출규제 제도 설명 및 준비사항 안내	• 日 수출규제 주요내용 및 조치에 따른 변동사항 • 한일 양국 캐치올·CP제도 등 수출통제 제도 비교 • 기업 사전준비 및 유의사항 • 日 CP기업 활용방안 및 지원내용 안내 • 전용 상담창구 구축 및 정보제공 안내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지원내용 안내	• 대상품목 선정 및 분류, 수입·사업업체 조사 • 해당품목·업체 동향 집중 모니터링 및 조기 물량확보 안내 • 업체 애로사항 신속지원, 피해최소화→원스톱 지원 (대체 공급선 확보, 국내 생산기반 조기 확충, R&D 지원) • 피해업체 경영 지원 : 금융·자금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 애로 사항 및 규제 개선 처리

② 단기 공급 안정화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 통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였으며,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서도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 면제를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한무역투자진흥기구(KOTRA)를 통해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 지정된 거점 무역관은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하였다.

〈표 10-3〉 단계별 신규 수입처 발굴 지원



(3) 산업경쟁력 강화·체질개선을 위한 조치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백서 제1권(산업편) 제3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참조

(4) 일본 양자 실무 회의

2019년 7월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이후 첫 양국 간의 실무 회의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측은 수출규제 강화조치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국은 일본측이 제시한 사유가 적절하지 않고 설명 또한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수출규제 철회를 주장하였다.

(5) 국제공조 확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요 국가와의 양자 면담 및 WTO 수출통제회의 등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조치로 인해 수출통제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6) WTO 제소

2019년 9월 11일 우리는 일본의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수출규제에 대하여 양자협의 요청서를 WTO에 송부하였다.

2019년 9월 20일 일본정부는 우리측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10월 11일 제1차 WTO 양자협의, 11월 19일 제2차 WTO 양자협의를 통해 입장을 상호 확인하였다.

(7)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2019년 11월 22일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일간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 정부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분쟁해결절차 또한 잠정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28일 서울에서 과장급 준비회의,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계획을 확정하였다.

①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19년 12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개최되었다. 정책 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로서, 우리측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측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현안해 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한일 양국 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하였다.

양국은 정책대화를 통해 수출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으며,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양국 수출관리제도와 그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사항을 업데이트 하는 것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의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가까운 시일 내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20년 2월 21일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간의 국장급 준비회의를 서울에서 갖고, 3월 10일 서울에서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양측은 3월 8일 제8차 정책대화를 영상회의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②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2020년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3월 11일 오전 1시50분까지 개최되었다. 8차 정책대화에도 우리측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일측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정책대화에서 양측은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및 민감기술 이전 관리 제도의 개선

및 이행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최근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 무역안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제도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의 수출 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각국의 책임과 재량을 바탕으로 양국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은 3개 품목과 백색국가,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당국이 논의해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한국의 해결노력과 일측에 대한 입장 촉구

이러한 일본과의 대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정부는 조속한 현안해결을 위해 일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사유로 제시했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양국 정부가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였고,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2020년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하였고, 6월 19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또한,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하여 2020년 5월 6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더욱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면서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된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우리 정부는 2020년 5월 12일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당시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2일 정부는 2019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하였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2019-2020 산업통상자원백서

- 통상편 -

- 발행일 2021년 8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 www.motie.go.kr |
- 제 작 파랑기획 044-865-9111